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개선 방안(Ⅱ)

2008. 12.

심 규 범·허 민 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차 례>

요 약	i
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2. 연구 범위	2
3. 연구 방법	2
4. 보고서 구성	3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설정	5
1. 선행 연구 검토 및 추가 연구 방향 파악	5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임금 실태 조사의 문제점 개요	5
(2) 일본의 건설현장 임금조사 직종	6
(3) 개선 방안 요약 및 향후 과제 제시	7
(4) 2008년 선행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의 주요 방향 제시	8
2. 본 연구의 과제 및 분석 틀 설정	9
(1) 연구 과제 설정	9
(2) 분석 틀 설정	10
제3장 실태 분석	13
1.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간 직종 비교	13
(1)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13
(2)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는 직종	20
2.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2008. 5) 원자료 분석	23
(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개요	23
(2) 직종의 구분 및 통합 검토	27
(3) 특성별 임금 격차	29
3. 2008년 면담조사 주요 내용 : 직종 및 임금 격차 중심	41
(1) 전문건설공사 현장	41
(2) 전기공사 현장	41

(3) 정보통신공사	42
(4) 원자력공사	42
(5) 문화재공사 현장 : 석공사	43
4. 2008년 설문조사 분석	43
(1) 조사 개요	43
(2) 현장 임금의 반영 정도	45
(3)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49
(4) 삭제 검토 직종	53
(5) 신설 검토 직종	56
(6) 조정 검토 직종	63

제4장 개선 방안 65

1.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65
(1) 삭제 직종 검토	65
(2) 신설 직종 검토	69
2. 특성별 임금 격차 반영	73
(1) 숙련도	73
(2) 지역	76
(3) 공사 종류	78
(4) 공사 규모	79
(5) 발주자	79
3. 개선 방안 요약 및 단계적 접근 방안	79
(1) 각 직종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정의 조정	79
(2) 직종 삭제·신설·조정 결과 요약	84
(3)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방법 : 보정 지수 적용	86
(4) 단계별 접근 방안	86
(5) 기타 개선 방안	91
4.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 조정 검토	92
(1) 2007년 기준 조사기관별 공사 건수	92
(2)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조정 검토(안) : '원도급' 공사 기준	93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95

- 1. 결론 95
- 2. 정책적 시사점 96
-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98

참고문헌 100

Abstract 101

부록 103

<표 차례>

<표 2-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요약	6
<표 2-2> 일본의 건설현장 임금조사 직종	7
<표 2-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요약	8
<표 2-4> 2008년 연구의 방향 : 현장을 기준으로 한 조사 직종 및 임금 조정	11
<표 2-5> 직종의 삭제·신설·조정으로 구분 : 분석 틀로 활용	11
<표 3-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5대 품셈의 직종 비교(가나다 순 배열)	14
<표 3-2>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는 주요 직종의 처리 방법 예시	21
<표 3-3> 총괄표 : 임금 기준 내림차순	23
<표 3-4> 총괄표 : 인원수 기준 내림차순	25
<표 3-5> 공종별 또는 숙련 수준별 임금 격차가 큰 직종	28
<표 3-6> 임금 수준 및 직무 정의가 유사한 직종	29
<표 3-7> 지역별 임금 및 총인원 수	30
<표 3-8> 공종별 임금 및 총인원 수	32
<표 3-9> 공사금액별 임금 및 총인원 수	33
<표 3-10> 발주자별 임금 및 총인원 수	35
<표 3-11> 형틀목공의 임금 및 총인원 수	36
<표 3-12> 보통인부의 임금 및 총인원 수	38
<표 3-13> 특성별 임금 격차 요약	40
<표 3-14> 설문조사 응답 현장의 일반 사항	44
<표 3-15>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 지불임금(8시간 미적용)과 격차가 큰 직종	50
<표 3-16>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 지불임금(8시간 적용)과 격차가 큰 직종	52
<표 3-17>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	54
<표 3-18>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 : 공사 종류별, 총 공사 금액별	54
<표 3-19>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55
<표 3-20>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	56
<표 3-21> 신설해야 할 직종	57
<표 3-22>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1)	58
<표 3-23>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2)	59
<표 3-24>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60

<표 3-25> 공사 종류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61
<표 3-26>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63
<표 3-27> 직종 정의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직종	64
<표 4-1>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 중 유사 직종 간 통합 검토	66
<표 4-2> 설문조사 중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검토	67
<표 4-3> 설문조사 중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에 대한 검토	69
<표 4-4> 설문조사 중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검토(1)	70
<표 4-5> 설문조사 중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검토(2)	72
<표 4-6> 설문조사 중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검토	75
<표 4-7> 숙련도 보정 지수 적용 방법 예시	76
<표 4-8> 지역별 보정 지수 산정 및 적용 예시	77
<표 4-9> 설문조사 중 공사 종류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검토	78
<표 4-10> 설문조사 중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에 대한 검토	80
<표 4-11> 직종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정의 조정 요약	80
<표 4-12> 직종 삭제·신설조정 결과 요약	85
<표 4-13> 시중 노임단가 발표 단위 공사종류별 직종 수 변동 내역	86
<표 4-14> 숙련도별 임금 조사 방법 예시	88
<표 4-15> 품셈 적용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직종 활용 방법 예시 : 품셈 조정 불필요 ..	89
<표 4-16> 품셈에서 신설되어야 활용이 가능한 직종	91
<표 4-17>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조사기관의 공사금액 규모별 공사 건수	92
<표 4-18> 조사기관의 공사금액 규모별 공사 건수 및 구성비 : ‘원도급’ 공사 대상	93
<표 4-19>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의 공사종류별 평균 구성비 산정	94
<표 4-20> 조사기관별 설문조사표 배포 현황 및 조정(안)	94

<그림 차례>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4
<그림 2-2> 건설현장의 공사비와 예정가격 공사비 간 괴리의 원인	9
<그림 3-1> 지역별 임금 격차	31
<그림 3-2> 공사금액별 임금	34
<그림 3-3>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46
<그림 3-4>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47
<그림 3-5>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48

요 약

제1장 서론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을 위한 2차 연구로서 직종 및 임금 격차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즉,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품셈의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제 지불 임금과 조사 및 발표되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함.

○ 연구 범위

- 연구 대상 :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과 임금
- 연구 내용 : 실제 투입되는 직종의 파악, 현장의 직종과 조사 직종의 차이 조정, 현장의 임금과 조사 임금의 차이 조정 등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설정

○ 선행 연구의 개선 방안 요약 및 향후 과제 제시

- 표집,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조사 실시 및 정보 입력, 분석·공표·활용 등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제시되었음.
- 한편, 향후에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서 조사 직종의 단순화, 직종 내 숙련 수준의 반영 검토, 동일 직종의 공종별 구분 검토, 공사 원가에 실제 임금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분석 틀 설정

- 직종 차이 :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그리고 현장 간의 당해 직종 유무에 따

라 직종이 신설되거나 삭제됨. 기존의 여러 직종이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 활용될 경우에는 조사 직종을 재분류하여 기존 직종은 삭제하고 신규 직종은 신설하게 됨.

- 임금 차이 : 주로 숙련도별, 지역별, 공종별 차이에 따라 격차를 분석하고 그 정도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정 지수를 도입하거나 직종을 신설 또는 삭제하게 됨. 숙련도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기존 직종 중 숙련 수준을 표시하는 직종은 삭제하고 대신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당해 직종의 임금을 활용함.

제3장 실태 분석

○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간 직종 비교

-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 건축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목조각공, 배관공(수도), 보안공 등 26개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2008. 5) 원자료 분석

- 직종의 구분 및 통합 검토 : 도장공 등 15개 직종
- 유사 직종 간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직종 : 기계설치공 및 기계공 등
- 특성별 임금 격차 : 전체 직종, 형틀목공, 보통인부 모두에서 공종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남. 전체 직종의 경우 ‘공종별 > 지역별 > 규모별 > 발주자별’ 순임. 지역별 임금의 경우 대전이 높고 울산이 낮은 경향을 띠고, 규모별 임금은 100억원 미만 현장이 높고 100억원 이상 현장이 낮은 경향을 띰.

○ 2008년 면담 조사 주요 내용 : 직종 및 임금 격차 중심

- 전문건설공사 현장 : 현재는 모두 형틀목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스템 해체공과 시스템 해체 틀 정리공이 구분되어야 함. 시스템 동발이공도 별도의 직종이 명시되어야 함. 한편, 미장공과 바닥미장공의 분리가 필요함.

- 전기공사 현장 : 케이블공은 전압으로 구별하는 것보다 송전 케이블과 배전 케이블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 현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함.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작업 시간 8시간 기준이 아닌 단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단가 면에서 손해를 봄.
- 원자력공사 : 원자력 부분의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등으로 세분되어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효과적임.
- 문화재공사 현장 : 한식석공과 한식석공조공을 구분하여 추가해야 함. 석공의 최고 숙련도를 지닌 '도석수' 직종도 추가해야 함.

○ 2008년 설문 조사 분석

- 현장 임금의 반영 정도 :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해 '발표 횡수는 적정하나, 현장 임금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음. '현장 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 횡수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23.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현장 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 횡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은 6.6%임.
-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음.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12.8%를 차지해 유사한 비중을 보임.
- 실제 지급 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34.3%로 가장 많음.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과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18.0%로 동일하게 나타남.
-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68개 직종이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 지불임금 간에 격차가 크다고 응답하였음.

제4장 개선 방안

○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 삭제 직종 검토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 견출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보안공, 상급원자력기술자,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용접공(철도),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측부, 판넬조립공, 플랜트특수용접공 등 삭제

·직종 통합 : 광통신설치사, 기계설치공, 준설선기관장, 줄눈공, 치장벽돌공, 포설공, 특수비계공, H/W설치사, CPU 시험사 등 9개의 직종 삭제

·활용 미흡 :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원자력제관공 등 3개 직종 삭제

·직종 재분류 : 저압케이블공, 고압케이블공, 특고압케이블공 삭제

- 직종 신설

·직무 신설 : 바닥미장공, 시스템비계공, 콘크리트컷팅공 등 신설

·명칭 신설 : 원자력중기운전원

·직무 세분 :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용접공(상수도), 용접공(특수), 철골공(경량) 등 5개 직종 신설

·직종 재분류 : 배전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등 신설

- 결과 : 29개의 직종이 감소되어 현행 145개에서 116개로 조사 직종이 축소됨. 45개의 직종이 삭제되고, 16개의 직종은 신설되며, 26개의 직종은 조정이 필요함.

○ 특성별 임금 격차 반영

- 숙련도 보정 지수 도입 : 각 직종별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숙련도간 임금 격차를 표준화한 지수를 도입함.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직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작업 반장이나 조공 또는 각 직종의 숙련 수준을 의미하는 명칭을 포함한 직종은 삭제

해야 함. :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조장, 고급선원, 도편수, 상급원자력 기술자, 선부,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기사, 중급원자력기술자, 작업반장, 전기공사기사, 조력공, 조립인부,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사,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등 20 개 직종 삭제

- 지역별 보정 지수 도입 : 각 시기마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 임금을 100으로 하는 17개 지역의 보정 지수를 산정하여 시중 노임단가와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함. 다만,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유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별 보정 지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방법 : 보정 지수 적용
 - 현행 방식 :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
 - 개선 방안 :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기준단가 × (1 ± 숙련도별 보정 지수/100 ± 지역별 보정 지수/100)

○ 단계별 접근 방안

- 1단계 : 품셈의 변경 없이 조사 방법의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 조사 단계 : 직종을 숙련도별로 세분(상급, 중급, 하급 등)하여 조사 실시
 - 보정 지수 산정 단계 : 숙련도별 보정 지수와 지역별 보정 지수 산정
 - 발표 단계 : 직종별 기준 임금(중급 기준)과 함께 보정 지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 발표
 - 활용 단계 : 품셈 직종에 적용하는 활용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계상
- 2단계 : 품셈의 변경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사항
 - 임금 실태 조사에서 신설된 직종이 품셈에서도 신설되어야만 활용 가능

○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 조정 검토

- 현행 30억원 원도급 공사 건수의 구성비와 유사한 배포 부수 비율을 5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 건수와 유사하게 배포 부수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 또한 전체 설문 조사 부수를 1,700부에서 2,000부로 늘려 비율을 산정함. 현행 방식에 비해 중소 규모 현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정책적 시사점

- 수주 생산의 특성을 지니는 건설산업의 경우 발주 금액의 기준이 되는 ‘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움.
- 임금 실태 조사 직종 및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
- 현장에서 고의로 임금을 낮추어 적거나 또는 저가 낙찰로 인해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 실태 조사에 낮은 임금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결국 발주 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임금이 임금 실태 조사에 반영되도록 개선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무비의 하락을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임.
- 노무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임. 품셈의 직종 신설 및 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품셈에서도 숙련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음. 전산 조사 방법을 강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직종별 또는 숙련 수준별로 전체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

도하지 못했음. 적어도 매 5년마다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직종 및 임금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함.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건설생산은 ‘판매 후 생산’이라는 수주생산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매자인 발주자-특히, 공공발주자-는 미리 당해 건설생산물의 가격을 예상하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생산자인 건설업체 역시 생산 요소의 투입 결과인 실제 공사비를 알기 전에 입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통상 구매자는 낮은 가격을 지불하려 하고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이것은 비용에 대한 구매자와 생산자 간의 ‘정보비대칭’(情報非對稱) 문제를 야기한다. 양자 간의 생각이 크게 다를 경우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실패’(市場失敗)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 비용에 대한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양자 모두가 수궁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건설생산물에 대한 정보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서서 건설생산물을 만드는 데 소요되는 생산요소의 ‘양’과 ‘가격’을 규정하고 있다. 여러 생산요소 중 노동력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정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도 중 하나가 바로 ‘폼셈’과 ‘시중 노임단가’이다. 건설공사비 중 노무비는 ‘노무량 × 단가’에 의해 결정된다. 노무량은 노동력의 종류와 양을 의미하고 노동력의 종류가 직종인데 시공에 소요되는 직종별 적정 노무량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폼셈’이다. 단가는 노동력에 대한 가격인 임금을 의미하는데 적정 수준을 알려주는 것이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이하 임금 실태 조사라 약칭함)이다. 대한건설협회는 1960년대 중반 이래 ‘시중노임’을 조사하여 왔으며, 본 조사에 대해 1990년 11월에는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후 1995년에 재정경제원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의 개정(’95.4.16)을 통해 시중노임을 공사원가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2001년과 2002년에 건설현장의 임금이 급등하면서 건설업계로부터 발표된 임금이 현장의 실제임금에 비해 크게 낮거나 임금조사 발표 시기가 너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통계청으로부터는 조사의 대표성을 제고하라는 요청이 제기되었다.¹⁾ 그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는 시중노임에 대하여 ‘객관성’과 ‘현실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청으로 2003년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차 연구를 수행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주로 조사방법론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조사방법의 개선 이외에도 현재 발표되는 ‘임금 실태 조사’에 포함된 직종 및 임금 수준이 건설현장의 직종 및 임금 수준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²⁾ 만일 조사 결과와 현장의 실제 간에 괴리가 극심할 경우 사업주는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공사 수행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을 위한 2차 연구로서 이번에는 직종 및 임금 격차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품셈의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제 지불임금과 조사 및 발표되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연구 대상은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과 임금이 연구의 주된 대상이다. 이것들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행 품셈의 직종과 임금 실태 조사에 포함된 직종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 분석 대상으로서 설문조사에 나타난 현장의 직종 이외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08)(145개 직종), 건설공사 표준품셈('08)(161개 직종), 정보통신 표준품셈('08)(39개 직종), 문화재 표준품셈('08)(31개 직종), 전기공사표준품셈('08)(73개 직종), 원자력(정비공사 반영)(23개 직종) 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연구 내용은 실제 투입되는 직종의 파악, 현장의 직종과 조사 직종의 차이 조정, 현장의 임금과 조사 임금의 차이 조정 등이다.

3 연구 방법

크게 문헌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자문회의 운영이다. 문헌조사로서 본 연구와 직결

1) 심규범·김지혜(200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2) ‘품셈’과 현장의 실제 투입 노무량과 일부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본 연구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것을 개선하는 작업은 별도의 연구를 필요로 한다.

된 심규범·김지혜(2003)의 선행 연구에 포함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연구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면접조사와 설문조사를 병행한다. 실태조사 내용은 현장 정보(공종, 공사 금액 규모 등), 임금 실태 조사의 적정성(조사 횟수 및 시기, 직종 수 및 임금 수준의 적정성, 적정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 등), 직종 정보(실제 투입되는 모든 직종, 직종별 투입 인원 등), 임금 정보(숙련도별 임금 및 투입 인원 등), 기타(임금 실태 조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 등이다. 면접조사에서는 공종별로 임금 실태 조사 직종이 포함된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투입 직종과 지불임금의 실태를 파악한다. 면접조사를 통해 직종의 활용 여부와 숙련도별 임금 격차 등에 대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설문지 작성에도 활용하고자 한다. 조사 대상은 임금 실태 조사를 작성하는 현장의 실무자이다. 설문조사는 임금 실태 조사의 응답자에 포함되는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지의 배포와 회수는 임금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협조기관³⁾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 설문조사 응답자 역시 임금 실태 조사를 작성하는 현장의 실무자이다.

자문회의는 통계청 담당자, 각 조사협조기관의 담당자, 현장의 기능장 등으로 구성된다. 이 회의는 본 연구의 문제 제기와 문제점 파악, 그리고 개선 방안의 제시 등 모든 연구 내용에 대해 조사의 현장성 및 현실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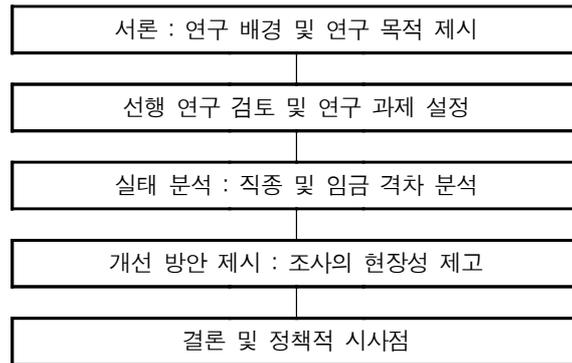
4. 보고서 구성

<그림 1-1>에서 보듯이 보고서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문제 의식과 목적을 제시한다.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및 연구 과제 설정에서는 2003년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본 연구에서 수행할 과제를 구체화한다. 제3장 실태 분석에서는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간 직종 비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2008. 5) 원자료 분석,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4장 개선 방안에서는 직종의 삭제·신설·조정과 특성별 임금 격차의 반영을 통해 임금 실태 조사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

3) 대한건설협회가 정부로부터 임금 실태 조사의 위탁을 받은 기관이고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지적공사, 한전KPS(주), (주)포스텍 등이 조사협조기관이다. 한국문화재기능인협회도 간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에서는 본 연구 결과 중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서 글을 맺는다.

〈그림 1-1〉 보고서의 구성



먼저 2003년에 수행되었던 선행 연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본 연구에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좀 더 구체화하고자 한다.

1. 선행 연구⁴⁾ 검토 및 추가 연구 방향 파악

(1) 선행 연구에 나타난 임금 실태 조사의 문제점 개요

2003년 연구의 목적은 현장감 있고 대표성 있는 직종별 임금을 산출함으로써 임금 실태 조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건설현장의 실제 노무비가 공사원가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려는 것이었다.

2003년 연구에서 제시된 당시 임금 실태 조사의 주요 문제점을 <표 2-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집과 관련하여 지역과 규모를 고려하고는 있으나 표집방법의 일관된 기준이 미흡하므로 대표성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둘째, 조사표 구성 및 항목과 관련해 임금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그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편차가 크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즉, 임금대장을 기준으로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으나 임금대장 자체의 신빙성이 낮으며 임금에 식대의 포함 여부 또는 초과근로 수당 반영의 비일관성 등이 개입되어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작업시간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장의 직종과 조사표의 직종 간에 차이가 존재하기도 한다. 셋째, 조사 실시 및 정보입력과 관련해서는 조사과정에서 표본이 임의로 대체될 수 있어 대표성이 낮아지는 요인이 된다. 또한 작성자에 대한 교육이나 답례품이 없어 조사과정의 신뢰도가 낮다. 그리고 조사표 선별과정에서 불량한 조사표를 폐기함으로써 임의대체로 인한 대표성 저하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조사표 정보를 수작업으로 입력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넷째, 분석, 공표, 활용과 관련해서는 1년에 2회의 조사와 발표 횟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임금이 급격히 변동하

4) 심규범·김지혜(200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참조.

는 비정상적인 시기에는 노무비 반영의 적시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현장에서는 하루에 거의 10시간씩 일하고 있으나 공사원가에 반영되는 임금은 하루 8시간으로 환산된 임금이므로 노무비가 과소 계상되는 문제점이 야기되었다.

〈표 2-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요약

조사방법 및 항목		현황	문제점
표 집	표집방법	지역과 규모를 고려	일관된 표집방법 부재
	표본의 적정성	지역별 분포는 적정	공중, 직중, 규모 미고려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일반사항	기업, 공사, 관리사항 작성	관리사항 작성 번거로움
	직종별 임금	·총인원, 총금액 파악 필요 ·임금에 식대 포함/제외 ·초과근로수당, 약천 후시 임금 산정방법 상이	·실제지불임금 파악 어려움 ·총금액에 식대 포함 모호 ·임금산정 방법의 차이로 일관성 결여
	작업 및 휴식시간	작업시작과 종료시점 상이	발표임금에 격차 유발
	직종	145개 직종에 대해 조사	현장과 조사표 직종간 차이
	월급제 기능공	반장급등 월급제 적용	월급제이지만 일당제로 기록
	기타사항	간식비, 교통비 등 작성	교통비 지급 사례 없음.
	조사실시 및 정보입력	조사절차	협회, 시도회, 본사, 현장 등
조사표 작성	일반업체가 협력업체에 문의	답례품 없음.	
조사표 선별	조사표 중 양호한 것만 선택	무계획적인 대체의 문제발생	
정보입력	수작업으로 입력	시간 과다소요로 공표 지연	
분석, 공표, 활용	분석	비정상 정보 제거, 가중평균	·과소 직종의 임금을 그대로 집계할 경우 정보 오염 ·직종별 가중치가 없음.
	공표	1년에 2회, 8월과 1월 공표	임금 상승 시점과 괴리
	활용	8시간 노무량과 임금 적용	노무비 과소 계상

자료 : 심규범·김지혜(2008),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49 참조.

(2) 일본의 건설현장 임금조사 직종

2003년 연구에는 일본의 '공공사업 노무비조사' 사례가 소개되어 있다. 동 조사는 연 1회 조사 및 발표된다. 조사되는 주요 사항은 근로일수, 근로시간수, 연간근로일수, 임금(기본일급, 기본급, 성과급, 임시급여), 법정복지공제액(고용보험,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등이다. <표 2-2>에서 보듯이 조사대상의 한정 및 숙련도의 구분과 관련해 일본에

서는 조사대상을 50개 주요 직종의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다. 대신 50개 직종의 작업내용을 상세히 규정하고 필요에 따라 동일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작업반장, 기능공, 단순작업원 등 숙련도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

<표 2-2> 일본의 건설현장 임금조사 직종

조 사 대 상 직 종 (50개 직종)											
작업반장과 일반기능 노동자를 구분한 직종						반장과 일반기능 노동자를 구분하지 않은 직종					
작업반장		일반기능 노동자				작업원		작업반장기능노동자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번호	직종명
17	잠수반장	01	특수작업원	15	운전수(일반)	02	보통작업원	12	도장공	40	타일공
21	터널반장	04	조경공	16	잠수공	03	경작업원	23	교량도장공	41	샤시공
24	교량반장	05	법면공	18	착암공	20	터널작업원	28	잠수사	42	지붕잇기공
25	토목일반반장	06	도비공	19	터널특수공			29	잠수연락원	43	내장공
26	고급선원	07	석공	22	교량특수공			30	잠수송기원	44	유리공
		08	벽돌공	27	보통선원			34	목 공	45	교통유도공
		09	전공	31	산림사방공			35	미장공	46	건축설비공
		10	철근공	32	궤도공			36	배관공	47	덕트공
		11	철골공	33	형틀공			37	마감공	48	보온공
		13	용접공					38	방수공	49	건축블록공
		14	운전수(특수)					39	판금공	50	실비기계공

자료 : 심규범·김지혜(200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59 참조.

(3) 개선 방안 요약 및 향후 과제 제시

<표 2-3>에는 2003년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요약되어 있다. 즉, 표집,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조사 실시 및 정보 입력, 분석·공표·활용 등에 관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향후에 풀어야 할 핵심과제로서 조사 직종의 단순화, 직종 내 숙련수준의 반영 검토, 동일 직종의 공종별 구분 검토, 공무원가에 실제 임금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표 2-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요약

조사방법 및 항목		개선방안	비고
표 집	표집방법	·건설현장을 기준으로 모집단 파악 ·지역, 공종, 규모에 따라 표집	건설공사대장 또는 시공 실적 활용
	표본의 적정성	표본설계 후 대체 억제 및 대체 원칙 준수	유사현장으로 대체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일반사항	관리사항 중 작성자만 서명	간소화
	직종별 임금	·직종별 평균임금만 조사 ·임금범위에서 식대 등 제외 ·정상임금 기준으로 조사(평균 10시간의 일당) ·장비기사의 임금과 임대료 구분 조사	임금범위 통일 및 단순화
	작업 및 휴식시간	·조회시간을 시작시점으로, 정리시간을 종료 시점으로 정의 ·소정근로시간 및 휴일제도에 따른 근로형태 구분	·작업내용을 폭넓게 해석 ·주 40시간제 도입 관련
	직종	·공종별 구분 검토 ·건설현장 직종을 중심으로 조사표 재편 ·직종내 숙련수준 구분 검토	·현장 중심의 직종 재편 ·품셈의 조정 필요
	월급제 기능공	지급양태와 별도조사 필요성 검토	
	기타사항	·교통비 항목 삭제 ·전체적인 임금동향 대신 직종별 과부족 조사 검토	
	조사실시 및 정보입력	조사절차	건설현장을 선정하고 시·도회에서 직접 배포, 회수
조사표 작성	·조사원에 대한 교육 보완 ·작성 담당자에 대한 답례품 지급	·인적·물적 지원 확대 ·응답노력에 대한 보상	
조사표 선별	조사표 선별과정의 임의 폐기 억제		
정보입력	전산화된 조사표 작성 및 입력 방법 도입	전산화 비용 투자	
분석, 공표, 활용	분석	·직종별 가중치 산정 필요 ·간식시간을 작업시간에서 제외하는 방식 재 검토	·건설현장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
	공표	·직종별 시간급과 평균 작업시간을 공표 ·공종별 임금상승률 발표 ·1년 2회 공표 유지하되 조사와 공표 격차 최소화	·활용의 편의성 고려 ·실제 노무비 반영
	활용	시간급을 기준으로 실제 작업시간과 할증률을 적용하여 실제노무비를 산정	실제 노무비 반영

자료 : 심규범·김지혜(200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8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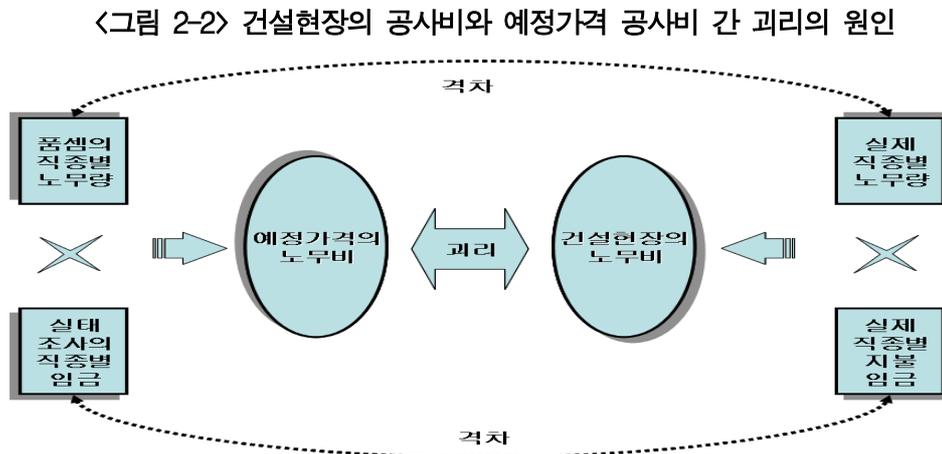
(4) 2003년 선행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의 주요 방향 제시

2003년 연구에서는 주로 조사방법과 관련된 분야(표집, 조사표 구성 및 항목, 조사 실시 및 정보 입력, 분석·공표·활용 등)에 집중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3년의

연구를 통해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08년 본 연구에서는 임금 실태 조사의 직종 및 임금과 현장의 직종 및 임금 간의 괴리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2 본 연구의 과제 및 분석 틀 설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금 실태 조사의 취지와 관련 당사자의 관심 사항에 비추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에서 2003년의 선행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2008년 본 연구의 과제로 설정한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예정가격의 노무비와 건설현장의 실제 노무비 간 격차가 존재하는데 그 원인 중 임금 실태 조사의 직종 및 임금과 현장에서 실제로 투입되는 직종 및 임금 간의 격차에 주목하고자 한다.



(1) 연구 과제 설정

2008년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 실태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이를 활용하는 5대 품셈 직종 간의 불일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직종의 비교 대상은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08)(145개 직종), 건설공사 표준품셈('08)(161개 직종), 정보통신 표준품셈('08)(39개 직종), 문화재 표준품셈('08)(31개 직종),

전기공사 표준품셈('08)(73개 직종), 원자력(정비공사 반영)(23개 직종) 등이다.

둘째,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품셈의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과거에 조사에서 누락되었던 직종에 대한 처리 방안도 강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직종의 삭제, 신규 직종의 추가, 여러 직종의 통합, 단일 직종의 분리, 희귀 직종의 처리, 준용할 직종의 설정, 각 직종에 대한 재정의 등이 진행될 것이다.

셋째, 현장에서의 지불임금과 조사 및 발표되는 임금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될 것이다. 격차를 야기하는 요인으로서 숙련도, 지역, 공종, 공사 규모, 발주자 등의 특성별로 분석이 수행될 것이다.

넷째, 그 외에도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주로 중규모 및 대규모 현장에 치중되었던 설문지 배포 구성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면접조사 또는 설문조사에서 제시된 기타 개선 요구 사항도 정리하고자 한다.

(2) 분석 틀 설정

위에서 언급한 본 연구의 추진 방향을 요약하면 <표 2-4>와 같다. 대별하면 직종 차이와 임금 차이로 구분할 수 있다. 직종 차이는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그리고 현장 간의 당해 직종 유무에 따라 직종이 신설되거나 삭제된다. 기존의 여러 직종이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분류되어 활용될 경우에는 조사 직종을 재분류하여 기존 직종은 삭제하고 신규 직종은 신설하게 된다. 한편, 임금 차이는 주로 숙련도별, 지역별, 공종별 차이에 따라 격차를 분석하고 그 정도와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정 지수를 도입하거나 직종을 신설 또는 삭제하게 된다. 숙련도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기존 직종 중 숙련 수준을 표시하는 직종은 삭제하고 대신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당해 직종의 임금을 활용하도록 한다.

<표 2-4> 2008년 연구의 방향 : 현장을 기준으로 한 조사 직종 및 임금 조정

구분	임금 실태 조사	품 섯	현 장	검토 사유	직종 처리
직종 차이	해당 직종 없음	해당 직종 없음	있음	명칭 신설	직종 신설
		해당 직종 있음		직무 신설	
	해당 직종 있음	해당 직종 없음	없음	품섯 직종 부재	직종 삭제
		해당 직종 있음	거의 활용되지 않음	활용 미흡	
여러 직종으로 존재	여러 직종으로 존재	여러 직종으로 존재	다른 방식의	직종 재분류	기존 직종 삭제 신규 직종 신설
			단일 직종에서 처리		
단일 직종으로 존재	여러 직종으로 존재 단일 직종으로 존재	여러 직종으로 분리	직무 세분		직종 신설
임금 차이	숙련도별 차이 없음	숙련도별 차이 없음	숙련도별 차이 없음	-	-
		숙련도별 차이 존재			
	숙련도별 차이 존재	숙련도별 차이 없음	숙련도별 차이 존재	숙련지수 도입	숙련 수준 표시 직종 삭제
		숙련도별 차이 존재			
지역별 차이 없음	지역별 차이 없음	지역별 차이 존재	지역지수 도입	-	
공종 구분 없음	공종 구분 없음	공종별 차이 존재	공종별 구분	직종 신설	
	공종 구분 존재				

<표 2-5>는 <표 2-4>에서 제시된 직종 처리 방향을 삭제, 신설, 조정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의미를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것을 본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하고자 한다.

<표 2-5> 직종의 삭제·신설·조정으로 구분 : 분석 틀로 활용

구분	사유	의미
삭제	품섯직종 부재	품섯에 해당 직종이 존재하지 않아 활용되지 않는 조사 직종 삭제
	활용 미흡	품섯 직종에 존재하나 실제로 거의 활용이 없는 조사 직종 삭제
	직종 통합	기존의 다른 직종에 통합되면서 조사 직종 삭제
	직종 재분류	기존 직종을 재분류하면서 조사 직종 삭제
	숙련지수 도입	숙련지수 도입으로 직종 내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어 조사 직종 삭제
신설	직무 신설	조사 직종 선정 시에는 없었으나 이후 신설된 직무의 조사 직종 신설
	명칭 신설	조사 직종에는 없으나 현장에는 있는 직무에 대해 조사 직종 신설
	직무 세분	기존 직무가 세분되면서 조사 직종 신설
	직종 재분류	기존 직종을 재분류하면서 조사 직종 신설
	공종별 구분	직무를 공종별로 구분하면서 조사 직종 신설
조정	명칭 변경	기존 직종에 대해 기술 변화 또는 직무 세분으로 조사 직종 명칭 변경
	정의 변경	기존 직종에 대해 기술 변화 또는 직무 세분으로 조사 직종 정의 변경

본 장에서는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간 직종 비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 분석,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분석 등을 종합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1.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 간 직종 비교

먼저 임금 실태 조사와 건설공사표준품셈, 정보통신표준품셈, 문화재표준품셈, 전기공사표준품셈, 원자력 등 5대 품셈 간의 직종을 비교해 보자.

(1)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표 3-1>은 임금 실태 조사와 5대 품셈의 직종을 비교하고 있다.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의 경우에는 그 임금을 조사하여 발표하더라도 이를 적용할 품셈의 직종이 없어 활용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해당하는 직종은 건축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목조각공, 배관공(수도), 보안공, 상급원자력기술자, 석조각공,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측부,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산업기사, 용접공(철도), 원자력계장공, 원자력기술자, 원자력케이블전공, 조립인부, 조적공, 중급원자력기술자, 특급원자력비과괴시험공, 판넬조립공, 플랜트특수용접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 한식와공조공 등 26개이다.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어 다른 직종이 준용하는 직종으로 활용되거나 그 외에 다른 활용 사례가 없다면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와 5대 품셈의 직종 비교(가나다 순 배열)

연 번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08) (145개)	건설공사 표준품셈('08) (161개)	정보통신 표준품셈('0 8) (39개)	문화재 표준품셈('08) (31개)	전기공사 표준품셈('08) (73개)	원자력(정비 공사 반영) (23개)
					1급측량사	
					2급측량사	
				가공석공 기와공		
1	갱부	갱부				
		건설기계운전				
		건설기계 운전공				
2	건설기계 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건설기계 운전기사
3	건설기계운전조 수	건설기계운전 조수				
		건설기계조수				
4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종 원				
5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건축목공	
6	건축공					
		검사공				
		검사및교정				
		검사시험				
		검조부				
		계령공				
7	계장공	계장공	계장공		계장공	
		고급기능사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	
8	고급선원	고급선원				
		고소대차 운전원				
9	고급원자력 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 비파괴시험공
10	고압케이블전공				고압케이블전공	
					관련기능사	
11	광케이블설치사		광케이블설 치사		광케이블설치사	
12	광통신설치사		광통신 설치사		광통신설치사	
		공작기계공				
		굴삭기 운전원				
13	궤도공	궤도공				

		그라인더공				
14	기계공	기계공			기계공	
		기계기사				
		기계기술공				
		기계산업기사				
15	기계설치공	기계설치공	기계설치공		기계설치공	
		기계연마공				
		기계운전공				
		기계운전사				
		기계운전원				
		기계정비공				
		기관차 운전원 및 조수				
		기사(콘솔설치)			기사	
		기술사				
		기와공				
		기와제작공				
		기타공(절단, 용접)				
16	내선전공	내선전공			내선전공	내선전공
17	내장공	내장공	내장공		내장공	
		단조공				
18	노즐공					
19	덕트공	덕트공				
20	도배공	도배공		도배공		
21	도장공	도장공	도장공		도장공	도장공
22	도편수			도편수		
23	동발공(터널)					
24	드잡이공			드잡이공		
		로우더 운전원				
		루핑공				
		리벳공				
		리벳박기공				
		마킹공				
		모래분사공				
		목공		목공	목공	
25	목도	목도	목도			
		목도공		목도공	목도공	
26	목조각공					
27	무선안테나공		무선안테나 공		무선안테나공	
			물품포장공			
28	미장공	미장공	미장공	미장공	미장공	
29	방수공	방수공	방수공		방수공	
30	배관공	배관공			배관공	

31	배관공(수도)					
32	배전전공	배전전공	배전전공		배전전공	
33	배전활선전공				배전활선전공	
34	벌목부	벌목부				
35	벽돌(블럭) 제작공	벽돌제작공				
		블록제작공				
36	변전전공				변전전공	
37	보링공 (지질조사)	보링공	보링공 (지질조사)		보링공	
38	보안공					
39	보온공	보온공				보온공
40	보일러공	보일러공				
41	보통선원	보통선원				
42	보통인부	보통인부	보통인부	보통인부	보통인부	보통인부
		인부		인부		
				보호공		
				분무공		
		블록공				
43	비계공	비계공	비계공	비계공	비계공	비계공
				비빔공		
		비파괴시험공				
		사진식자공				
		사진제판공				
		산소절단공				
44	상급원자력 기술자					
45	샷시공	샷시공				
46	석공	석공	석공	석공	석공	
				쌓기석공		
47	석조각공					
48	선부	선박 및 인부				
		설치공				
49	송전전공		송전전공		송전전공	
50	송전활선전공				송전활선전공	
		숫크리트머신 운전원				
		슬레이트공				
		슬레이트맞함 석공				
		시공측량기사				
51	시공측량사					
52	시공측량사조수					
53	시험관련기능사					
54	시험관련기사					시험관련기사

55	시험관련산업기 사					
		시험및조정				
		시험사1급				
		양생공				
56	연마공	연마공				연마공
				온돌공		
				와공		
		읍셋인쇄공				
57	용접공(일반)	용접공	용접공(일반)			용접공
58	용접공(철도)					
59	운전사(기계)					운전사(기계)
60	운전사(운반차)	운전사				
		원치운전조				
61	원자력계장공					
62	원자력기계 설치공					원자력기계 설치공
63	원자력기술자					
64	원자력덕트공					원자력덕트공
65	원자력배관공					원자력배관공
66	원자력보온공					원자력보온공
67	원자력용접공					원자력용접공
68	원자력제관공					원자력제관공
69	원자력케이블 전공					
70	원자력특별인부					원자력 특별인부
71	원자력품질관리 사					원자력 품질관리사
72	원자력플랜트전 공					원자력 플랜트전공
73	위생공	위생공				
74	유리공	유리공				
		인부				
75	작업반장	작업반장				작업반장
76	잠수부	잠수부				
			자료입력원			
						저압케이블공
77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전공	저압케이블 전공		저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 전공
		전공			전공	
		전기공				
78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 사		전기공사기사	
79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돌공(벽돌공)	
				조각목수	
				조공	
80	절단공	절단공			
		점보드릴 운전원			
		정보처리기사			
		정비사			
		제관공			
81	제도사	제도공			
82	제철축로공	제철축로공			
83	조경공	조경공			
84	조력공				조력공
85	조립인부				
86	조적공				
		조종사			
87	준설선 기관사	준설선 기관사			
88	준설선 기관장	준설선 기관장			
89	준설선 선장	준설선 선장			
90	준설선 운전사	준설선 운전사			
91	준설선 전기사	준설선 전기사			
92	줄눈공	줄눈공		줄눈공	줄눈공
		중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중기운전기사
93	중급원자력 기술자				
94	지붕잇기공	지붕잇기공			
95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사			
		지적기능산업 기사			
96	지적기사	지적기사			
97	지적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98	착암공	착암공			착암공
99	창호목공	창호목공			
100	철골공	철골공			
101	철공	철공	철공		철공
102	철근공	철근공			
103	철도신호공				철도신호공
104	철판공	철판공			철판공
		초급기능사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측량)
		측량기사			

		측량사				
		측량조수				
		측량및정보지형 공간정보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기사	
		측량및정보지형 공간정보산업기사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산업기사	
105	측부					
106	치장벽돌공	치장벽돌공				
		컨베이어크레 일러 운전				
					케이블공	
					케이블전공	
107	코킹공	코킹공				
108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콘크리트공	
		크레인운전조				
109	타일공	타일공				
				탁본공		
110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 기능사			
111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 기사		통신관련기사	
112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관련 산업기사		통신관련 산업기사	
113	통신내선공		통신내선공			
114	통신설비공		통신설비공		통신설비공	
115	통신외선공		통신외선공		통신외선공	
116	통신케이블공		통신 케이블공		통신케이블공	
117	특고압케이블 전공				특고압케이블 전공	
118	특급원자력 비파괴시험공					
		특급기술자				
119	특별인부	특별인부	특별인부		특별인부	특별인부
				특수인부		
120	특수비계공	특수비계공			특수비계공	
		특수운전공				
121	특수화공			특수화공		
122	화공			화공		
		판금공				
123	패널조립공					
124	포설공	포설공				
125	포장공	포장공				
126	플랜트기계	플랜트기계	플랜트기계		플랜트기계	플랜트기계

	설치공	설치공	설치공		설치공	설치공
127	플랜트배관공	플랜트배관공				
128	플랜트용접공	플랜트용접공				플랜트용접공
129	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플랜트전공
130	플랜트제관공	플랜트제관공				
131	플랜트특수용접공					
132	한식목공			한식목공		
133	한식목공조공					
				한식목수		
134	한식미장공			한식미장공		
				한식조각공		
				한식조공		
135	한식와공					
136	한식와공조공					
137	할석공	할석공				
138	함석공	함석공				
		항법사				
		현도공				
139	현도사	현도사				
140	형틀목공	형틀목공			형틀목공	
		화약공			화약공	
141	화약취급공	화약취급공				
					활선전공	
142	CPU 시험사		CPU 시험사			
					H/W기사	
143	H/W 설치사		H/W 설치사		H/W설치사	
144	H/W 시험사		H/W 시험사		H/W 시험사	
					S/W기사	
145	S/W 시험사		S/W 시험사		S/W시험사	
		T.B.M 운전원				

(2)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는 직종

<표 3-2>은 앞서와는 반대로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는 주요 직종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직종 중 목조각공, 석조각공,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산업기사,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등 7개는 품셈의 유사직종으로 준용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은 품셈에 해당 직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표 3-2〉 품셈에는 있으나 임금 실태 조사에는 없는 주요 직종의 처리 방법 예시

건설공사 표준품셈('08) (46개)	정보통신 표준품셈 ('08)(1개)	문화재 표준품셈 ('08)(12개)	전기공사 표준품셈('08) (11개)	비 고
		가공석공		46. 석공 준용
		기와공		135. 한식와공 준용
건설기계운전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건설기계운전공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건설기계조수				3. 건설기계운전조수 준용
건설기계조종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검사공				
검사 및 교정				53. 시험관련기능사, 54. 시험관련기 사, 55. 시험관련산업기사 등 준용
검사시험				
검조부				42. 보통인부 준용
계령공				21. 도장공 준용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전기)
고소대차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또는 3. 건설기계운전조수 준용
			관련기능사	110. 통신관련기능사 준용
굴삭기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그라인더공				56. 연마공 준용
기계정비공				14. 기계공 준용
기관차 운전원 및 조수				직종별로 적용
기사(콘솔설치)			기사	78. 전기공사기사 준용
기와공				94. 지붕잇기공 준용
기타공(절단, 용접)				57. 용접공, 80. 절단공 준용
로우더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루핑공				29. 방수공 준용
리벳공				100. 철골공 준용
리벳박기공				100. 철골공 준용
모래분사공				21. 도장공 준용
목공		목공	목공	132. 한식목공 준용(문화재), 140. 형틀목공 준용(전기)
목도공		목도공	목도공	25. 목도 준용
	물품포장 공			제조업임금 실태 조사 적용
블록제작공				35. 벽돌(블록)제작공 준용
인부		인부		42. 보통인부 준용
블록공				86. 조적공 준용
		비빔공		136. 한식와공조공 준용
비파괴시험공				9.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및 11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준용
산소절단공				80. 절단공 준용

		쌓기석공		46. 석공 준용
선박 및 인부				8. 고급선원 및 41. 보통선원 준용
췁크리트머신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슬레이트공				94. 지붕잇기공 준용
슬레이트및합석공				슬레이트는 94. 지붕잇기공, 합석공은 138. 합석공 준용
시험사1급				54. 시험관련기사 준용
양생공				42. 보통인부 준용
		온돌공		134. 한식미장공 준용
		와공		135. 한식와공 준용
	자료입력 원			제조업임금 실태 조사 적용, 2007년 삭제
			저압케이블공	77. 저압케이블전공 준용
전공			전공	각 전기공사의 전공(내선전공, 배전전 공, 송전전공) 준용
전기공				78. 전기공사기사 또는 79. 전기공사산업기사 준용
			전기산업기사	79. 전기공사산업기사 준용
		전돌공 (벽돌공)		46. 석공 준용
		조각목수		26. 목조각공 준용
		조공		133. 한식목공조공 또는 136. 한식와공조공 준용
점보드릴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중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전기)
중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전기)
			중기운전기사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초급기술자			초급기술자(측량)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전기)
			측량및지형 공간정보기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
			측량및지형 공간정보산업기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적용
			케이블공	각 전압 케이블전공(저압, 고압, 특고 압)
			케이블전공	각 전압 케이블전공(저압, 고압, 특고 압)
크레인운전조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탁본공		문화재조사 및 발굴인력으로서 기능 인력의 성격이 아님.
		특수인부		119. 특별인부 준용
		한식목수		132. 한식목공 준용
		한식조각공		26. 목조각공 또는 47. 석조각공 준용
		한식조공		133. 한식목공조공 또는 136. 한식와공조공 준용

현도공				139. 현도사 준용, 현도사도 삭제 검토
화약공			화약공	141. 화약취급공 준용
			활선전공	각 전기공사 활선전공
			H/W기사	143. H/W설치사 준용
			S/W기사	145. S/W시험사 준용
T.B.M 운전원				2. 건설기계운전기사 준용

주 : 원자력 분야에는 해당하는 직종이 없음.

2.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2008. 5) 원자료 분석

(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결과 개요

임금 실태 조사는 1700여개의 현장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2008년 5월 조사의 경우에는 약 63만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정보가 포괄되어 있다. <표 3-3>은 임금을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다. 145개 직종의 일일임금 평균은 92,644원이고, 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송전활선전공(298,696원), 송전전공(239,189원), 배전활선전공(207,772원) 등이고, 가장 낮은 직종은 측부(41,891원)이다. 한편, <표 3-4>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인원수가 가장 많은 직종은 형틀목공(129,711인)으로 전체의 20.6%를 차지한다.

<표 3-3> 총괄표 : 임금 기준 내림차순

직종	임금 (원)	총인원 (인)	구성비 (%)	직종	임금 (원)	총인원 (인)	구성비 (%)	직종	임금 (원)	총인원(인)	구성비 (%)
송전활선전공	298,696	128	0.0	플랜트기계설치공	106,490	180	0.0	벌목부	87,477	77	0.0
송전전공	239,189	438	0.1	통신관련산업기사	106,405	156	0.0	준설선기관사	87,382	100	0.0
배전활선전공	207,772	647	0.1	건설기계운전기사	105,850	3,411	0.5	기계공	87,158	1,355	0.2
제철축로공	165,861	640	0.1	콘크리트공	104,975	11,704	1.9	절단공	86,467	765	0.1
잠수부	163,127	608	0.1	석공	104,892	13,252	2.1	화약취급공	86,419	444	0.1
특고압케이블전공	162,392	354	0.1	전기공사기사	104,250	720	0.1	궤도공	86,117	1,715	0.3
배전전공	160,204	2,384	0.4	철골공	104,117	8,469	1.3	벽돌(블럭)제작공	86,094	416	0.1
광케이블설치사	159,878	712	0.1	타일공	103,742	10,530	1.7	배관공	85,906	36,757	5.8

한식외공	158,357	72	0.0	할석공	103,234	1,804	0.3	포설공	85,868	660	0.1
광통신설 치사	158,022	565	0.1	배관공(수도)	102,282	4,221	0.7	준설전기관 장	85,489	24	0.0
플랜트특 수용접공	147,368	3	0.0	코킹공	101,732	233	0.0	닥트공	85,398	6,674	1.1
준설선운 전사	146,802	61	0.0	철근공	101,354	61,133	9.7	특별인부	83,309	10,908	1.7
S/W시험사	145,308	210	0.0	플랜트제 관공	100,000	320	0.1	조경공	83,305	6,495	1.0
통신외선공	145,300	2,550	0.4	용접공(일반)	98,910	5,381	0.9	운전사(운 반차)	83,018	164	0.0
통신케이 블공	144,663	3,490	0.6	건축목공	98,140	12,885	2.0	위생공	81,990	3,780	0.6
H/W시험사	140,319	208	0.0	내선전공	97,745	30,198	4.8	보온공	81,658	4,153	0.7
고압케이 블전공	138,115	248	0.0	통신내선공	97,710	6,238	1.0	보링공	81,177	606	0.1
CPU시험사	133,625	184	0.0	전기공사 산업기사	97,212	315	0.1	함석공	81,151	106	0.0
플랜트용 접공	133,216	1,115	0.2	형틀목공	96,834	129,711	20.6	방수공	80,697	11,869	1.9
플랜트배 관공	133,169	792	0.1	철공	96,397	5,452	0.9	동발공(터 널)	80,168	434	0.1
석조각공	133,053	80	0.0	드잡이공	96,220	25	0.0	착암공	79,425	1,001	0.2
철도신호공	127,022	412	0.1	포장공	95,770	1,471	0.2	지적기능사	79,067	26	0.0
H/W설치사	125,809	462	0.1	통신관련 기능사	95,421	157	0.0	연마공	78,709	290	0.0
변전전공	125,403	690	0.1	줄눈공	95,303	216	0.0	운전사(기 계)	78,512	212	0.0
한식목공	125,086	547	0.1	판넬조립공	94,938	4,108	0.7	건설기계조 장	78,049	800	0.1
준설선선장 도편수	123,419	20	0.0	내장공	94,863	17,020	2.7	노즐공	77,876	647	0.1
준설선전 기사	122,829	248	0.0	치장벽돌공	94,268	1,359	0.2	작업반장	76,937	6,085	1.0
특수비계공	121,440	27	0.0	철판공	94,094	980	0.2	갱부	76,582	402	0.1
저압케이 블전공	120,795	1,067	0.2	미장공	93,985	23,026	3.7	시공측량사	76,106	128	0.0
통신관련 기사	120,094	2,408	0.4	지붕잇기공	93,277	2,486	0.4	조력공	75,685	3,891	0.6
계장공	113,876	183	0.0	용접공(철도)	93,200	1,440	0.2	조림인부	71,000	75	0.0
목조각공	113,507	412	0.1	보일러공	92,743	56	0.0	보통선원	70,847	76	0.0
비계공	113,333	15	0.0	건축공	92,549	9,523	1.5	시험관련산 업기사	69,887	140	0.0
고급선원	112,819	7,478	1.2	조적공	92,298	17,161	2.7	선부	67,368	3	0.0
지적기사	111,377	123	0.0	샷시공	91,219	6,272	1.0	건설기계운 전조수	66,531	108	0.0
	111,304	1	0.0	창호목공	90,655	3,814	0.6	보통인부	64,755	78,338	12.4

지적산업 기사	111,304	1	0.0	기계설치공	90,525	322	0.1	보안공	62,439	42	0.0
무선안테 나공	111,224	354	0.1	도장공	90,352	14,430	2.3	시험관련기 사	58,819	88	0.0
한식외공 조공	110,628	80	0.0	한식목공 조공	89,000	100	0.0	시공측량사 조수	56,177	220	0.0
한식미장공	108,524	88	0.0	유리공	88,334	2,583	0.4	제도사	51,515	24	0.0
통신설비공	108,292	2,134	0.3	목도	87,973	112	0.0	측부	41,891	254	0.0
플랜트전공	108,121	436	0.1	도배공	87,544	3,600	0.6	계	92,644	629,597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산출방법 : 8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text{현장별 총인원수}} \times 8$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환산하기 때문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2007. 9.

<표 3-4> 총괄표 : 인원수 기준 내림차순

직종	총인원 (인)	구성 비 (%)	임금 (원)	직종	총인원 (인)	구성 비 (%)	임금 (원)	직종	총인원 (인)	구성 비 (%)	임금 (원)
형틀목공	129,711	20.6	96,834	포장공	1,471	0.2	95,770	줄눈공	216	0.0	95,303
보통인부	78,338	12.4	64,755	용접공(철도)	1,440	0.2	93,200	운전사 (기계)	212	0.0	78,512
철근공	61,133	9.7	101,354	치장벽돌공	1,359	0.2	94,268	S/W시험사	210	0.0	145,308
배관공	36,757	5.8	85,906	기계공	1,355	0.2	87,158	H/W시험사	208	0.0	140,319
내선전공	30,198	4.8	97,745	플랜트 용접공	1,115	0.2	133,216	CPU시험사	184	0.0	133,625
미장공	23,026	3.7	93,985	특수비계공	1,067	0.2	120,795	통신관련 기사	183	0.0	113,876
조적공	17,161	2.7	92,298	착암공	1,001	0.2	79,425	플랜트기계 설치공	180	0.0	106,490
내장공	17,020	2.7	94,863	철판공	980	0.2	94,094	운전사 (운반차)	164	0.0	83,018
도장공	14,430	2.3	90,352	건설기계 조장	800	0.1	78,049	통신관련 기능사	157	0.0	95,421
석공	13,252	2.1	104,892	플랜트 배관공	792	0.1	133,169	통신관련 산업기사	156	0.0	106,405
건축목공	12,885	2.0	98,140	절단공	765	0.1	86,467	시험관련 산업기사	140	0.0	69,887
방수공	11,869	1.9	80,697	전기공사 기사	720	0.1	104,250	송전활 선전공	128	0.0	298,696
콘크리트공	11,704	1.9	104,975	광케이블설치사	712	0.1	159,878	시공측량사	128	0.0	76,106

특별인부	10,908	1.7	83,309	변전전공	690	0.1	125,403	고급선원	123	0.0	111,377
타일공	10,530	1.7	103,742	포설공	660	0.1	85,868	목도	112	0.0	87,973
견출공	9,523	1.5	92,549	노즐공	647	0.1	77,876	건설기계 운전조수	108	0.0	66,531
철골공	8,469	1.3	104,117	배전활선전공	647	0.1	207,772	함석공	106	0.0	81,151
비계공	7,478	1.2	112,819	제철축로공	640	0.1	165,861	준설선 기관사	100	0.0	87,382
닥트공	6,674	1.1	85,398	잠수부	608	0.1	163,127	한식목 공조공	100	0.0	89,000
조경공	6,495	1.0	83,305	보링공	606	0.1	81,177	시험관련 기사	88	0.0	58,819
샷시공	6,272	1.0	91,219	광통신 설치사	565	0.1	158,022	한식미장공	88	0.0	108,524
통신 내선공	6,238	1.0	97,710	한식목공	547	0.1	125,086	석조각공	80	0.0	133,053
작업반장	6,085	1.0	76,937	H/W설치사	462	0.1	125,809	한식외공조공	80	0.0	110,628
철공	5,452	0.9	96,397	화약취급공	444	0.1	86,419	벌목부	77	0.0	87,477
용접공(일반)	5,381	0.9	98,910	송전전공	438	0.1	239,189	보통선원	76	0.0	70,847
배관공(수도)	4,221	0.7	102,282	플랜트전공	436	0.1	108,121	조림인부	75	0.0	71,000
보온공	4,153	0.7	81,658	동발공(터널)	434	0.1	80,168	한식외공	72	0.0	158,357
판넬 조립공	4,108	0.7	94,938	벽돌(블럭) 제작공	416	0.1	86,094	준설선 운전사	61	0.0	146,802
조력공	3,891	0.6	75,685	계장공	412	0.1	113,507	보일러공	56	0.0	92,743
창호목공	3,814	0.6	90,655	철도신호공	412	0.1	127,022	보안공	42	0.0	62,439
위생공	3,780	0.6	81,990	갱부	402	0.1	76,582	준설선전 기사	27	0.0	121,440
도배공	3,600	0.6	87,544	무선 안테나공	354	0.1	111,224	지적기능사	26	0.0	79,067
통신 케이블공	3,490	0.6	144,663	특고압 케이블전공	354	0.1	162,392	드잡이공	25	0.0	96,220
건설기계 운전기사	3,411	0.5	105,850	기계설치공	322	0.1	90,525	제도사	24	0.0	51,515
유리공	2,583	0.4	88,334	플랜트 제관공	320	0.1	100,000	준설선 기관장	24	0.0	85,489
통신 외선공	2,550	0.4	145,300	전기공사산 업기사	315	0.1	97,212	준설선선장	20	0.0	123,419
지붕 잇기공	2,486	0.4	93,277	연마공	290	0.0	78,709	목조각공	15	0.0	113,333
저압케이 블전공	2,408	0.4	120,094	측부	254	0.0	41,891	선부	3	0.0	67,368
배전전공	2,384	0.4	160,204	고압 케이블전공	248	0.0	138,115	플랜트특수 용접공	3	0.0	147,368
통신설비공	2,134	0.3	108,292	도편수	248	0.0	122,829	지적기사	1	0.0	111,304

할석공	1,804	0.3	103,234	코킹공	233	0.0	101,732	지적산업 기사	1	0.0	111,304
궤도공	1,715	0.3	86,117	시공측량사 조수	220	0.0	56,177	계	629,597	100.0	92,644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text{산출방법 : 8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 / (\text{순수작업시간} - 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환산하기 때문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2007. 9.

(2) 직종의 구분 및 통합 검토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직종의 구분 또는 통합이 필요한 직종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임금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나타난 임금의 수준과 직무 내용의 유사성 그리고 해당 직종의 인원수 등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사종류별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직종

<표 3-5>에서 보듯이 15개 직종의 경우 공종에 따라 임금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공사종류별로 직종의 분류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각 공종별로 구분할 경우 인원수가 너무 작아지고 전체 조사 직종수가 너무 많아지는 문제점도 아울러 존재한다. 따라서 직무 세분 또는 공종별 구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3-5〉 공종별 또는 숙련수준별 임금 격차가 큰 직종

기존 직종			공종별로 구분될 경우		
명칭	8시간 임금(원)	인원(인)	공종	8시간 임금(원)	인원(인)
115. 드잡이공	96,220	25	기타 건축	62,439	10
			문화재 및 유적건물	130,000	15
29. 도장공	90,352	14,430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62,609	6
			항만	126,316	10
24. 보일러공	92,743	56	기타 건축	62,439	7
			주거겸용 및 연립주택	139,130	5
13. 비계공	112,819	7,478	치산, 치수 및 사방하천	53,333	72
			택지조성	136,991	37
9. 샷시공	91,219	6,272	극장, 영화관 위락시설	69,213	121
			교회, 사찰 종교건물	121,379	6
11. 석공	104,892	13,252	농·수산 및 관개수로	57,851	122
			항만	168,421	6
53. 시공측량사 조수	56,177	220	항만	35,894	40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75,789	36
98. 용접공(일반)	98,910	5,381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71,382	30
			사무실, 상업용건물	128,580	169
71. 작업반장	76,937	6,085	경기장, 운동장공원시설	56,571	52
			조경	146,692	104
15. 조적공	92,298	17,161	도로, 교량 및 도로터널	75,652	481
			위험물저장소	120,000	52
32. 지붕잇기공	93,277	2,486	주거겸용 및 연립주택	64,429	53
			창고 및 차고	120,000	8
5. 철골공	104,117	8,469	농·수산 및 관개수로	84,211	41
			상하수도	145,000	3
23. 콘트리크공	104,975	11,704	문화재 및 유적건물	67,368	13
			아파트	123,752	5,417
20. 타일공	103,742	10,530	교회, 사찰 종교건물	64,000	9
			상하수도	150,000	2
67. 통신설비공	108,292	2,134	공항	73,187	110
			공장	132,643	50

2) 유사 직종 간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직종

〈표 3-6〉에는 임금 실태 조사 분석 결과에 나타난 유사 직종 간 통합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직종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각 직무를 무리하게 통합할 경우 이질적인 요소가 혼합되어 부작용이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직종의 통합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면

답조사 및 설문조사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표 3-6〉 임금 수준 및 직무 정의가 유사한 직종

직종	임금 (원)	인원 (인)	정의
89. 기계설치공	90,525	322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90. 기계공	87,157	1,355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37. 보안공	62,439	42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 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5. 보통인부	64,755	78,338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82. 보통선원	70,847	76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3. 선부	67,368	3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6. 준설선거관사	87,382	100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5. 준설선거관장	85,489	24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102. 지적기사	111,304	1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111,304	1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6. 철공	96,397	5,452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101,354	61,133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조적공	92,298	17,161	벽돌 및 ब्ल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94,268	1,359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3) 특성별 임금 격차

임금 실태 조사에 기재된 지역, 공종, 공사규모, 발주자 등의 특성에 따라 임금 격차가 어느 정도로 야기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장 일반적으로 투입되는 직종인 형틀목공과 보통인부 두 개의 직종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지역별 임금 격차

〈표 3-7〉와 〈그림 3-1〉에서 보듯이 평균 임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99,969원), 제주(96,488원), 서울(95,003원) 순인데 반해, 낮은 지역은 울산(84,714원), 경북(85,208원), 강원(86,901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대전 108.5, 제주 104.8, 서울 103.1 등이고, 울산 92.0, 경북 92.5, 강원 94.4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6.5포

인트이다. 인원 구성비가 높은 지역은 경기(22.8%), 서울(16.1%), 광주(7.2%) 순인데 비해, 낮은 지역은 제주(1.4%), 대전(1.9%), 전북(2.5%) 등의 순이다. 인원수 구성비를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에 나타난 기성액 구성비와 비교해 보면 광주와 충남의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3-7〉 지역별 임금 및 총인원 수

(단위 : 원, 개, 인, %)

직종	임금(원)	임금 지수	최고임금 직종 수(A)	최저임금 직종 수(B)	최고-최저 (A-B)	총인원 (인)	인원 구성비(%)	건설기성액 구성비(%)
강원	86,901	94.4	0	10	-10	20,193	3.3	4.5
경기	94,776	102.9	13	8	5	139,686	22.8	22.7
경남	91,173	99.0	4	5	-1	32,963	5.4	7.0
경북	85,208	92.5	6	6	0	31,905	5.2	6.6
광주	89,696	97.4	6	22	-16	43,912	7.2	2.4
대구	94,665	102.8	7	3	4	29,502	4.8	3.4
대전	99,969	108.5	9	5	4	11,894	1.9	2.4
부산	91,790	99.7	7	5	2	37,611	6.2	5.7
서울	95,003	103.1	13	7	6	98,742	16.1	16.0
울산	84,714	92.0	4	16	-12	24,902	4.1	2.9
인천	92,312	100.2	1	7	-6	35,703	5.8	5.1
전남	92,759	100.7	7	5	2	28,582	4.7	5.5
전북	89,300	97.0	8	4	4	15,195	2.5	3.9
제주	96,488	104.8	13	5	8	8,854	1.4	1.1
충남	90,444	98.2	7	2	5	27,165	4.4	7.0
충북	93,958	102.0	7	3	4	24,645	4.0	3.8
계	92,102	100.0	112	113	-1	611,453	100.0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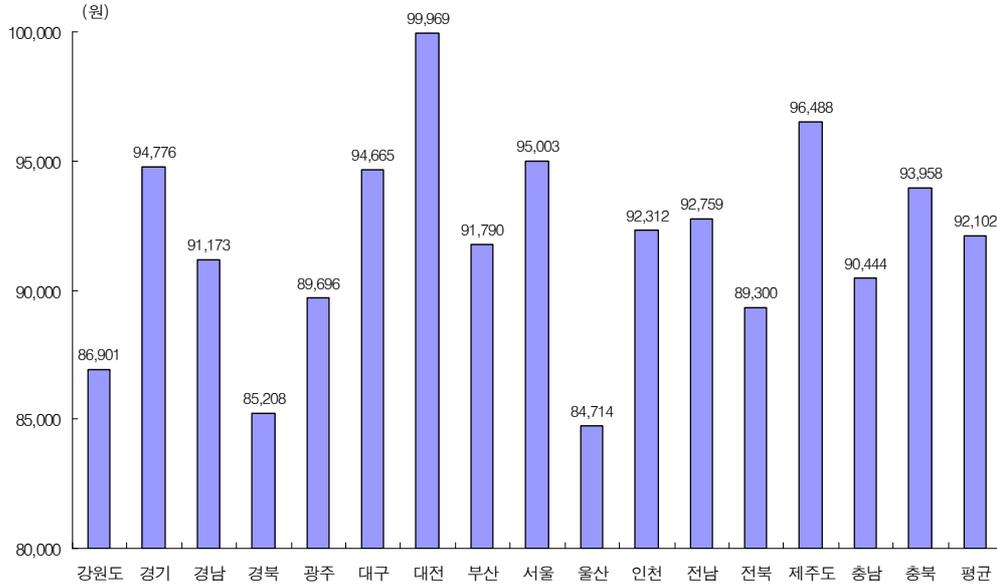
$$\text{산출방법} : 8\text{시간기준 } 1\text{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 / (\text{순수작업시간} - 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출함.

3. 건설기성액 구성비는 통계청의 건설업통계조사에 나타난 2006년 수치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2006.

〈그림 3-1〉 지역별 임금 격차



2) 공사 종류별 임금 격차

<표 3-8>에서 보듯이 평균 임금이 높은 공종은 정보통신공사(123,944원), 은행(120,375원), 기계기구설치(115,916원) 순인데 반해, 낮은 공종은 농·수산물산지수로(76,428원), 철도·철도터널·지하철(79,323원), 농지정리(81,615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정보통신공사 133.8, 은행 129.9, 기계기구설치 125.1 등이고, 농·수산물산지수로 82.5, 철도·철도터널·지하철 85.6, 농지정리 88.1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51.3포인트이다. 인원 구성비가 높은 공종은 아파트(38.4%), 전문건설공사(8.5%), 도로·교량및도로터널(8.1%) 순인데 비해, 낮은 지역은 준설(0.0%), 농지정리(0.0%), 위험물저장소(0.1%) 등의 순이다.

〈표 3-8〉 공종별 임금 및 총인원수

(단위 : 원, 개, 인, %)

공종별 분류	임금(원)	임금 지수	최고임금 직종 수(A)	최저임금 직종 수(B)	최고-최 저(A-B)	총 인 원 (인)	인원 구성비(%)
경기장, 운동장공원시설	85,203	92.0	0	0	0	3,815	0.6
공장	99,505	107.4	3	0	3	17,718	2.8
공항	83,773	90.4	0	1	-1	922	0.1
관공서건물	89,251	96.3	3	5	-2	16,002	2.5
교회, 사찰 등 종교건물	85,089	91.8	1	2	-1	3,769	0.6
극장, 영화관 등 위락시설	83,731	90.4	1	1	0	2,353	0.4
기계기구설치	115,916	125.1	2	0	2	3,252	0.5
기타건축	89,175	96.3	11	17	-6	32,912	5.2
기타설비공사	93,798	101.2	3	7	-4	6,586	1.0
기타토목시설	92,260	99.6	3	0	3	6,063	1.0
농·수산 및 관개수로	76,428	82.5	0	2	-2	2,556	0.4
농지정리	81,615	88.1	0	1	-1	278	0.0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91,642	98.9	1	1	0	4,833	0.8
댐	84,126	90.8	0	0	0	951	0.2
도로, 교량 및 도로터널	85,333	92.1	3	3	0	50,684	8.1
문화재 및 유적건물	94,140	101.6	1	6	-5	4,030	0.6
발전소시설	101,236	109.3	2	4	-2	2,982	0.5
병원	86,892	93.8	0	6	-6	16,493	2.6
사무실, 상업용건물 백화점 및 시장	97,045	104.7	8	2	6	29,027	4.6
상하수도	96,115	103.7	6	2	4	9,261	1.5
아파트	88,351	95.4	6	9	-3	241,468	38.4
위험물저장소	101,680	109.8	2	0	2	437	0.1
은행	120,375	129.9	3	0	3	901	0.1
전기공사	115,786	125.0	7	1	6	18,397	2.9
전문건설공사	90,571	97.8	4	2	2	53,455	8.5
정보통신공사	123,944	133.8	4	2	2	14,237	2.3
조경	94,214	101.7	3	0	3	4,086	0.6
주거겸용 및 연립주택	92,812	100.2	4	3	1	5,042	0.8
준설	60,952	65.8	0	1	-1	10	0.0
창고 및 차고	93,950	101.4	4	0	4	2,581	0.4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79,323	85.6	2	9	-7	21,372	3.4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82,841	89.4	2	3	-1	5,512	0.9
택지조성	81,217	87.7	3	4	-1	5,124	0.8
포장	87,976	95.0	0	0	0	2,056	0.3
학교	92,166	99.5	4	5	-1	32,269	5.1
항만	96,639	104.3	4	2	2	4,368	0.7
호텔, 숙박시설 (목욕탕부설포함)	91,846	99.1	1	0	1	3,783	0.6
계	92,645	100.0	101	101	0	629,581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text{산출방법} : 8\text{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text{순수작업시간}-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출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3) 공사금액 규모별 임금 격차

<표 3-9>와 <그림 3-2>에서 보듯이 평균 임금이 높은 공사금액 규모는 5억~10억원 미만(97,775원), 5억원 미만(95,117원) 순인데 반해, 낮은 규모는 1,000억원 이상(85,552원), 100억원~300억원 미만(87,968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5억~10억원 미만 105.5, 5억원 미만 102.7 등이고, 1,000억원 이상 92.3, 100억~300억원 미만 95.0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3.2포인트이다. 인원 구성비가 높은 규모는 300억~500억원 미만(17.5%), 1,000억원 이상(17.4%) 순인데 비해, 낮은 규모는 5억~10억원 미만(4.5%), 100억~300억원 미만(8.4%) 등의 순이다.

<표 3-9> 공사금액별 임금 및 총인원 수

(단위 : 원, 개, 인, %)

직종	임금(원)	임금 지수	최고임금 직종 수(A)	최저임금 직종 수(B)	최고-최저 (A-B)	총인원 (인)	인원수 구성비(%)
5억원 미만	95,117	102.7	15	7	8	50,504	8.0
5억~10억원 미만	97,775	105.5	20	17	3	28,255	4.5
10억~50억원 미만	91,508	98.8	16	8	8	78,470	12.5
50억~100억원 미만	91,241	98.5	14	15	-1	105,976	16.8
100억~300억원 미만	87,968	95.0	3	22	-19	52,823	8.4
300억~500억원 미만	93,679	101.1	18	10	8	110,449	17.5
500억~1,000억원 미만	91,286	98.5	16	10	6	93,614	14.9
1,000억원 이상	85,552	92.3	6	20	-14	109,506	17.4
계	92,644	100.0	108	109	-1	629,59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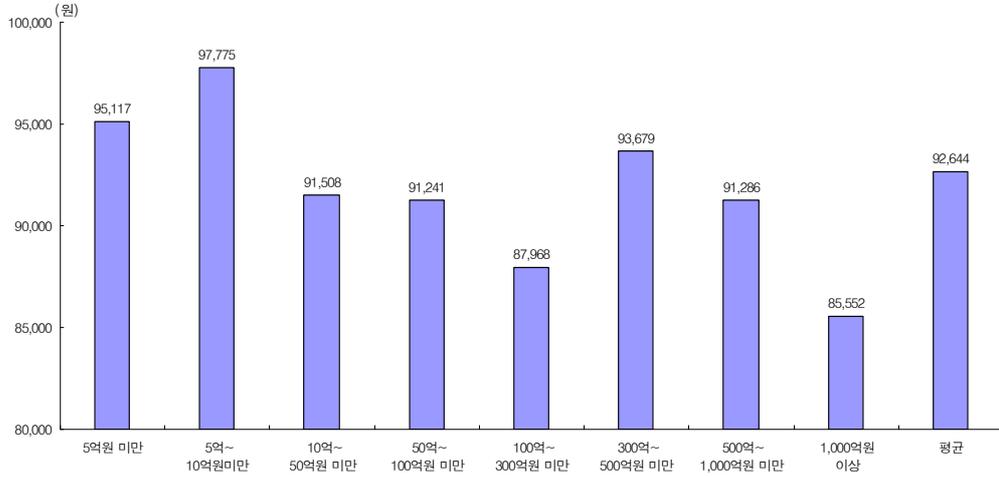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text{산출방법} : 8\text{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text{순수작업시간}-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

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술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그림 3-2〉 공사금액별 임금



4) 발주자별 임금 격차

<표 3-10>에서 보듯이 평균 임금이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기타(101,172원), 공공단체(100,100원) 순인데 반해, 낮은 공사의 발주자는 정부(85,552원), 지방자치단체(89,677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기타 109.2, 공공단체 108.0 등이고, 정부 96.7, 지방자치단체 96.8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2.5포인트이다. 인원 구성비가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민간(43.8%), 정부(23.7%) 순인데 비해, 낮은 공사의 발주자는 공공단체(2.6%), 기타(4.0%) 등의 순이다.

〈표 3-10〉 발주자별 임금 및 총인원 수

직종	임금(원)	임금지수	최고임금 직종 수(A)	최저임금 직종 수(B)	최고-최저 (A-B)	총인원 (인)	인원 구성비 (%)
공공단체	100,100	108.0	13	4	9	16,127	2.6
국영기업체	95,584	103.2	18	22	-4	84,140	13.4
기타	101,172	109.2	22	8	14	24,966	4.0
민간	94,095	101.6	14	19	-5	275,494	43.8
정부	89,580	96.7	17	37	-20	149,332	23.7
지방자치단체	89,677	96.8	20	12	8	79,538	12.6
계	92,644	100.0	104	102	2	629,597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text{산출방법} : 8\text{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액} / (\text{순수작업시간} - 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출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5) 가장 일반적인 직종의 특성별 임금 격차 : 형틀목공, 보통인부

특성별 임금 격차의 경향성을 보기 위해 모든 지역, 공종, 규모에 공통적으로 투입되는 대표적인 직종인 형틀목공과 보통인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직종이기는 하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준설 등의 공종에서는 형틀목공이 쓰이지 않고, 준설 공종에서는 보통인부도 쓰이지 않는다.

<표 3-11>에서 보듯이 형틀목공의 경우 평균 임금이 높은 지역은 대전(102,891원), 제주(100,254원), 경남(100,108원) 순인데 반해, 낮은 지역은 울산(89,111원), 경북(92,469원), 전북(92,853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대전은 106.7, 울산은 92.5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4.2포인트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전직종의 평균 임금 추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공사 종류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공종은 기계기구설치(123,077원), 위험물저장소(120,000원), 발전소시설(107,613원) 등의 순인데 반해, 낮은 공종은 기타설비공사(86,507원), 경기장·운동장·공원시설(86,530원), 교회·사찰 종교건물(86,670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기계기구설치는 127.1, 기타설비공사는 89.3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

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37.8포인트이다. 공종별 격차는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달리 나타난다.

공사금액 규모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규모는 50억~100억원 미만(101,578원), 10억~50억원 미만(99,937원) 순인데 반해, 낮은 규모는 100억~300억원 미만(90,746원), 1,000억원 이상(94,878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50억~100억원 미만은 104.9, 100억~300억원 미만은 93.7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1.2포인트이다. 규모별 격차 역시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달리 나타난다.

발주자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공공단체(100,141원), 기타(96,074원) 순인데 반해, 낮은 공사의 발주자는 국영기업체(92,472원), 지방자치단체(96,074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기타는 105.6, 국영기업체는 95.5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10.1포인트이다. 발주자별 격차는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유사하다.

〈표 3-11〉 형틀목공의 임금 및 총인원 수

공종별	임금	임금 지수	총인원	구성 비	공사금액별	임금	임금 지수	총인원	구성 비
경기장, 운동장공원시설	86,530	89.4	985	0.8	5억원 미만	96,380	99.5	6,453	5.0
공장	100,201	103.5	797	0.6	5억~10억원 미만	98,285	101.5	2,583	2.0
공항	101,053	104.4	117	0.1	10억~50억원 미만	99,937	103.2	18,551	14.3
관광서건물	96,491	99.6	3,450	2.7	50억~100억원 미만	101,578	104.9	24,871	19.2
교회, 사찰 종교건물	86,670	89.5	1,061	0.8	100억~300억원 미만	90,746	93.7	10,850	8.4
극장, 영화관 위락시설	94,055	97.1	999	0.8	300억~500억원 미만	95,880	99.0	18,215	14.0
기계기구설치	123,077	127.1	4	0.0	500억~1,000억원 미만	96,095	99.2	26,239	20.2
기타건축	99,457	102.7	6,208	4.8	1,000억원 이상	94,878	98.0	21,950	16.9
기타설비공사	86,507	89.3	143	0.1	계	96,834	100.0	129,711	100.0
기타토목시설	100,103	103.4	868	0.7	지역별	임금	임금 지수	총인원	구성비
농·수산 및 관개수로	93,686	96.7	840	0.6	강원	94,515	98.1	4,287	3.4
농지정리	100,571	103.9	10	0.0	경기	97,563	101.2	34,680	27.3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93,953	97.0	1,102	0.8	경남	100,108	103.9	9,082	7.1

댐	102,298	105.6	88	0.1	경북	92,469	95.9	5,387	4.2
도로, 교량 및 도로터널	93,439	96.5	14,684	11.3	광주	97,096	100.7	15,665	12.3
문화재 및 유적건물	88,682	91.6	713	0.5	대구	98,491	102.2	4,864	3.8
발전소시설	107,613	111.1	352	0.3	대전	102,891	106.7	525	0.4
병원	95,729	98.9	1,461	1.1	부산	97,994	101.7	6,083	4.8
사무실, 상업용건물	99,184	102.4	7,696	5.9	서울	96,911	100.5	17,839	14.0
상하수도	100,170	103.4	1,006	0.8	울산	89,111	92.5	4,126	3.2
아파트	98,503	101.7	49,502	38.2	인천	99,479	103.2	4,857	3.8
위험물저장소	120,000	123.9	2	0.0	전남	95,227	98.8	4,488	3.5
은행	94,281	97.4	370	0.3	전북	92,853	96.3	2,235	1.8
전기공사	-	-	-	0.0	제주	100,254	104.0	1,702	1.3
전문건설공사	96,135	99.3	17,459	13.5	충남	97,287	100.9	7,453	5.9
정보통신공사	-	-	-	0.0	충북	95,023	98.6	3,955	3.1
조경	98,576	101.8	150	0.1	계	96,388	100.0	127,227	100.0
주거겸용 및 연립주택	103,674	107.1	1,376	1.1	발주자별	임금	임금지수	총인원	구성비
준설	-	-	-	0.0	공공단체	100,141	103.4	1,802	1.4
창고 및 차고	100,392	103.7	126	0.1	국영기업체	92,472	95.5	21,683	16.7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87,672	90.5	6,144	4.7	기타	102,276	105.6	1,653	1.3
치산,치수 및 시방하천	95,980	99.1	1,358	1.0	민간	98,845	102.1	56,961	43.9
택지조성	94,274	97.4	1,667	1.3	정부	96,276	99.4	33,417	25.8
포장	93,421	96.5	128	0.1	지방자치단체	96,074	99.2	14,194	10.9
학교	100,205	103.5	7,391	5.7	계	96,834	100.0	129,711	100.0
항만	101,347	104.7	948	0.7					
숙박시설(목욕탕부설포함)	88,141	91.0	508	0.4					
계	96,834	100.0	129,711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산출방법 : 8시간기준 1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 / (\text{순수작업시간} - 8) \times 1.5 + 8}{\text{현장별 총인원수}} \times 8$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출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표 3-12>는 보통인부의 특성별 임금 격차이다. 지역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지역은 경기(75,565원), 충북(69,397원), 대전(65,666원) 순인데 반해, 낮은 지역은 울산(57,951

원), 부산(59,036원), 전북(59,278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경기도는 117.0, 울산은 89.7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27.3포인트이다. 지역별 격차는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유사하다.

공사 종류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공종은 은행(174,358원), 상하수도(78,239원), 정보통신공사(75,840원) 등의 순인데 반해, 낮은 공종은 철도·철도터널·지하철(54,926원), 택지조성(54,996원), 포장(56,418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은행은 269.3, 상하수도는 120.8, 철도·철도터널·지하철 84.8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은행 공종은 비정상적인 수치임. 2위와 최저간 차이는 36.0포인트이다. 공종별 격차 역시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유사하다.

공사금액 규모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규모는 5억~10억원 미만(73,046원), 5억원 미만(68,609원) 순인데 반해, 낮은 규모는 100억~300억원 미만(55,124원), 1,000억원 이상(55,547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5억~10억원 미만은 112.8, 100억~300억원 미만은 85.1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27.7포인트이다. 규모별 격차 역시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유사하다.

발주자별로 평균 임금이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공공단체(78,596원), 지방자치단체(67,053원) 순인데 반해, 낮은 공사의 발주자는 기타(60,015원), 국영기업체(61,215원) 순이다. 평균을 100.0으로 할 때 공공단체는 121.4, 기타는 92.7 등으로 지수화할 수 있다. 최고와 최저간 차이는 28.7포인트이다. 발주자별 격차는 전직종 평균의 경향과 다르게 나타난다.

〈표 3-12〉 보통인부의 임금 및 총인원 수

공종별	임금	임금 지수	총인 원	구성 비	공사금액별	임금	임금 지수	총인원	구성 비
경기장, 운동장공원시설	62,393	96.4	1,269	1.6	5억원 미만	68,609	106.0	12,217	15.6
공장	63,871	98.6	1,554	2.0	5억~10억원 미만	73,046	112.8	5,795	7.4
공항	58,947	91.0	393	0.5	10억~50억원 미만	62,295	96.2	12,226	15.6
관공서건물	60,968	94.2	2,772	3.5	50억~100억원 미만	56,047	86.6	8,584	11.0
교회, 사찰 종교건물	62,816	97.0	838	1.1	100억~300억원 미만	55,124	85.1	3,992	5.1
극장, 영화관 위락시설	57,255	88.4	363	0.5	300억~500억원 미만	65,111	100.5	17,935	22.9

기계기구설치	58,609	90.5	92	0.1	500억 ~ 1,000억원 미만	56,516	87.3	9,920	12.7
기타건축	64,320	99.3	4,348	5.6	1,000억원 이상	55,547	85.8	7,671	9.8
기타설비공사	70,145	108.3	712	0.9	계	64,755	100.0	78,338	100.0
기타토목시설	89,651	138.4	2,281	2.9	지역별	임금	임금지수	총인원	구성비
농·수산 및 관개수로	56,696	87.6	797	1.0	강원	59,979	92.9	2,366	3.2
농지정리	61,113	94.4	187	0.2	경기	75,565	117.0	11,291	15.2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59,418	91.8	1,260	1.6	경남	64,353	99.6	4,923	6.6
댐	59,147	91.3	661	0.8	경북	60,778	94.1	10,134	13.6
도로, 교량 및 도로터널	60,648	93.7	12,745	16.3	광주	61,445	95.1	2,570	3.4
문화재 및 유적건물	64,447	99.5	1,552	2.0	대구	60,169	93.2	3,287	4.4
발전소시설	67,255	103.9	330	0.4	대전	65,666	101.7	1,408	1.9
병원	64,645	99.8	1,909	2.4	부산	59,036	91.4	5,493	7.4
사무실, 상업용건물	61,698	95.3	1,916	2.4	서울	65,490	101.4	7,373	9.9
상하수도	78,239	120.8	3,076	3.9	울산	57,951	89.7	2,741	3.7
아파트	58,148	89.8	14,620	18.7	인천	64,120	99.3	4,628	6.2
위험물저장소	75,074	115.9	259	0.3	전남	62,785	97.2	5,073	6.8
은행	174,358	269.3	119	0.2	전북	59,278	91.8	3,861	5.2
전기공사	67,776	104.7	3,650	4.7	제주	62,733	97.1	1,707	2.3
전문건설공사	65,422	101.0	4,762	6.1	충남	62,113	96.2	3,945	5.3
정보통신공사	75,840	117.1	1,607	2.1	충북	69,397	107.4	3,713	5.0
조경	62,807	97.0	1,162	1.5	계	64,591	100.0	74,510	100.0
주거겸용 및 연립주택	60,064	92.8	737	0.9	발주자별	임금	임금지수	총인원	구성비
준설	-	-	-	0.0	공공단체	78,596	121.4	3,167	4.0
창고 및 차고	59,816	92.4	147	0.2	국영기업체	61,215	94.5	10,933	14.0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54,926	84.8	2,627	3.4	기타	60,015	92.7	1,926	2.5
치산, 치수 및 사방하천	60,823	93.9	1,664	2.1	민간	63,534	98.1	23,836	30.4
택지조성	54,996	84.9	1,267	1.6	정부	61,654	95.2	17,357	22.2
포장	56,418	87.1	236	0.3	지방자치단체	67,053	103.5	21,120	27.0
학교	62,188	96.0	5,052	6.4	계	64,755	100.0	78,338	100.0
항만	67,066	103.6	738	0.9					
숙박시설(목욕탕부설포함)	57,027	88.1	639	0.8					
계	64,755	100.0	78,338	100.0					

주 : 1.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 근로자 1인당 환산액의 평균임.

$$\text{산출방법} : 8\text{시간기준}1\text{인당 환산액} = \frac{[\text{현장별 총임금금액} / (\text{순수작업시간} - 8) \times 1.5 + 8] \times 8}{\text{현장별 총인원수}}$$

2. 표에서 활용한 임금은 시중 노임단가의 발표임금과 다소 차이가 있음. 발표임금은 (직종별 8시간 기준 환산액 총합 ÷ 직종별 총인원수 총합)으로 산출함.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출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6) 요약

<표 3-13>은 특성별 임금 격차를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전체 직종, 형틀목공, 보통인부 모두에서 공종별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전체 직종의 경우 ‘공종별 > 지역별 > 규모별 > 발주자별’ 순이고, 형틀목공의 경우 ‘공종별 > 지역별 > 규모별 > 발주자별’ 순이며, 보통인부의 경우 ‘공종별 > 발주자별 > 규모별 > 지역별’ 순이다. 보통인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집단을 세분할수록 격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편, 공통적으로 경향성을 띠는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임금의 경우 대전이 높고 울산이 낮은 경향을 띠고, 규모별 임금은 100억원 미만 현장이 높고 100억원 이상 현장이 낮은 경향을 띤다.

〈표 3-13〉 특성별 임금 격차 요약

구분	전체 직종				형틀목공			보통인부		
지역별	최고	대전	99,969원	108.5	대전	102,891원	106.7	경기	75,565원	117.0
	최저	울산	84,714원	92.0	울산	89,111원	92.5	울산	57,951원	89.7
	격차			16.5p			14.2p			27.3p
공종별	최고	정보통신공사	123,944원	133.8	기계기구설치	123,077원	127.1	상하수도	78,239원	120.8
	최저	농수산및관지수로	76,428원	82.5	기타설비공사	86,507원	89.3	철도철도터널지하철	54,926원	84.8
	격차			51.3p			37.8p			36.0p
규모별	최고	5억원 ~ 10억원 미만	97,775원	105.5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1,578원	104.9	5억원 ~ 10억원 미만	73,046원	112.8
	최저	1,000억원 이상	85,552원	92.3	100억원 ~ 300억원 미만	90,746원	93.7	100억원 ~ 300억원 미만	55,124원	85.1
	격차			13.2p			11.2p			27.7p
발주자별	최고	기타	101,172원	109.2	기타	96,074원	105.6	공공단체	78,596원	121.4
	최저	정부	85,552원	96.7	국영기업체	92,472원	95.5	기타	60,015원	92.7
	격차			12.5p			10.1p			28.7p

3. 2008년 면담조사 주요 내용 : 직종 및 임금 격차 중심

7개 현장을 방문하여 면담조사를 실시한 내용 중 직종 및 임금 격차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1) 전문건설공사현장

현재는 모두 형틀목공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시스템 해체공과 시스템 해체 틀 정리공이 구분되어야 한다. 시스템 해체공과 정리공은 함께 작업하지만 작업이 틀리기 때문에 임금의 차이가 난다. 시스템 정리공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나면 그 해체 틀을 정리하는 인력으로 일반공보다 약 1만~2만원 정도 임금이 높다. 하지만 형틀목공에 비해서는 단가가 1만~2만원 정도 낮다. 따라서 별도의 직종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 동발이공도 별도의 직종이 명시되어야 한다. 4.2m이상에서는 시스템 동발이공이 필요한데 일반 형틀목공과 임금 차이가 나야한다. 현재는 형틀목공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책정하고 있지만 시스템동발이공의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 '시스템조립공' 또는 '시스템비계공'이라는 명칭으로 신설해야 한다.

한편, 미장공과 바닥미장공의 분리가 필요하다. 바닥미장공은 대규모 현장에서 필요하며 야간작업이 많고 일당도 미장공과 크게 차이난다. 미장공이 10만원인 데 비해, 바닥미장공은 22만원 수준이다.

(2) 전기공사현장

무정전전공은 활선전공과 구별해야 한다. 임금 격차가 많이 난다. 무정전전공은 35만원 수준이며, 활선전공은 26만~27만원 수준이다. 활선전공은 위험에 비해 낮은 임금이라 할 수 있다.

케이블공은 전압에 따라 저압, 고압, 특고압으로 구별된다. 600V 미만은 저압, 600~7,000V는 고압, 7,000V이상은 특고압이라 한다. 케이블공은 전압으로 구별하는 것 보다 송전케이블과 배전케이블로 구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고압은 송전전공의 특수교육을 받은 인력만 다룰 수 있는 작업이다. 실제로는 송전전공의 임금은 40~50만원 수준

이지만 노임단가는 약 24만원이므로 너무 낮다. 저압케이블공의 일은 내선전공이 하고 있다. 저압케이블공의 임금은 11만원 정도인데 내선전공의 단가를 적용하는 만큼 공사비가 낮아진다.

전기조공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보통인부는 청소 및 정리를 하는 사람이고, 조공은 자재와 기능을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람이다. 실제로 전기조공에 해당하는 인력이 있으므로 이들의 임금이 조사에 반영되어야 한다.

임금수준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파트 공사의 임금이 섞이기 때문이다. 아파트 공사와 분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내선전공이 전체 전기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사는 단가가 너무 낮아서 하기 어렵다. 한편, 임금을 신고할 때 면세점 때문에 낮게 책정하여 신고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임금보다 서류상의 임금수준을 낮게 기록한 것이 조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3) 정보통신공사

시중 노임단가의 14개 직종(138~140번, 66~70번, 105~110번)과 현장에서 활용하는 직종은 거의 일치하므로 조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정보통신 직종만의 특별인부와 보통인부를 추가했으면 한다. 일반공사의 보통인부와 특별인부의 임금이 적용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전주 신는 차량을 운전하는 직종(운전공)을 추가했으면 한다.

한편, 정보통신 현장 고유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임금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작업시간 8시간 기준이 아닌 단시간 내에 작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단가 면에서 손해를 본다. 또한 야간작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야간수당으로 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반공사의 단가를 적용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 주간과 야간의 평균임금을 책정해 단가에 반영하는 방안 또는 현재의 야간 할증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한다. 임금실태 조사의 “노임적용요령”에 정보통신의 특성을 언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듯하다.

(4) 원자력공사

원자력 직종의 인력은 약 1,500명 정도인데 이들 중 50%는 1차 계통, 나머지 50%는

2차 계통이며 임금차이는 없다. 하지만 1차 계통만 원자력 직종에 명시되어 있고 2차 계통은 명시되지 않아 2차 계통의 직종은 일반공사 직종으로 단가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공사 직종의 단가는 실제 지불하는 임금에 비해 30%나 낮은 수준이라 문제가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숙련수준별로 임금이 세분화 되어야 한다.

한편, 수화력 직종에도 총 1,700명의 근로자가 있는데 수화력 분야는 임금 실태 조사에 별도로 직종이 존재하지 않아 임금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수화력 직종의 근로자들도 임금 실태 조사에 충분한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보며 수화력 직종에 대한 임금도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 실제 임금과 40%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또한 내부에 크레인을 설치하여 2~3명씩 운전하는 작업이 있는데, 일반공사 현장에는 운전관련 직종이 있지만 원자력에는 없다. 일반공사 현장의 단가를 적용하기에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13만~14만원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중기운전'이라는 명칭으로 직종을 추가해야 한다.

반대로 원자력부분의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등의 직종은 세분되어 있는데 이를 세분화하지 말고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이 효과적이다.

(5) 문화재공사현장 : 석공사

목공분야는 세밀하게 구별되어 있지만, 석공분야는 석조각공 단 한개만 명시되어 있다. 이 조차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또한 석공 조공은 분리되어야 한다. 조공은 자격증이 없고 낮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일반 석공과 분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식석공과 한식석공조공을 구분하여 추가해야 한다. 석공의 최고 숙련도를 지닌 '도석수' 직종도 추가해야 한다.

4. 2008년 설문조사 분석

(1) 조사 개요

<표 3-14>에 설문조사 응답 현장의 일반적인 특성이 요약되어 있다. 건설업 등록 종류는 전기공사업(20.8%), 토목건축공사업(9.9%), 산업·환경설비공사업(7.9%) 등의 순

이다.5) 총공사금액 규모는 10억~50억원 미만(35.0%), 5억원 미만(17.5%), 100원~300억원 미만(16.0%) 등의 순으로 고루 분포하고 있다. 발주자별로는 민간(29.8%), 지방자치단체(25.6%), 국영기업체(25.0%) 등의 순이다. 공사종류별로는 전기공사(21.6%), 전문건설공사(14.1%), 아파트(11.3%), 발전소시설(11.3%)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서울(15.5%), 경기(13.1%), 경남(7.9%), 강원(7.3%) 등의 순이다. 임금지급방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당제 월급제'가 73.3%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은 '대체로 순수월급제'가 18.0%를 차지하고 있다.

〈표 3-14〉 설문조사 응답 현장의 일반 사항

구 분		응답 수	구성 비	구 분		응답 수	구성 비
건설업 등록 종류	소 계	543	100.0	공사 종류	소 계	320	100.0
	실내건축공사업	4	0.7		공장	1	0.3
	토공사업	33	6.1		관공서건물	3	0.9
	미장·방수·조적공사업	16	2.9		교회, 사찰등 종교건물	2	0.6
	석공사업	3	0.6		기계기구설치	2	0.6
	도장공사업	6	1.1		기타건축	16	5.0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8	1.5		기타설비공사	5	1.6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9	1.7		기타토목시설	7	2.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	0.4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3	0.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47	8.7		농지정리	2	0.6
	기계설비공사업	13	2.4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3	0.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18	3.3		댐	1	0.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3	0.6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14	4.4
	포장공사업	6	1.1		문화재 및 유적건물	2	0.6
	수중공사업	2	0.4		발전소시설	36	11.3
	조경식재공사업	4	0.7		병원	1	0.3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4	0.7		사무실·상업용건물	6	1.9
	강구조물공사업	4	0.7		상하수도	16	5.0
	가스시설시공업	1	0.2		아파트	36	11.3
	시설물유지관리업	7	1.3		전기공사	69	21.6
토목공사업	29	5.3	전문건설공사	45	14.1		
건축공사업	31	5.7	정보통신공사	12	3.8		
토목건축공사업	54	9.9	조경	9	2.8		

5) 전기공사업의 응답자가 실제 모집단에 비해 현저히 많으나 본 설문조사는 직종의 통폐합 및 조정 그리고 임금 격차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는 응답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응답이 차지하는 구성비는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므로 대표성 문제는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43	7.9		창고 및 차고	1	0.3
	조경공사업	24	4.4		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4	1.3
	문화재수리업	7	1.3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5	1.6
	전기공사업	113	20.8		택지조성	2	0.6
	소방시설공사업	27	5		포장	3	0.9
	정보통신공사업	22	4.1		학교	11	3.4
	지적측량업	3	0.6		항만	2	0.6
	소 계	326	100.0		호텔·숙박시설	1	0.3
총 공사 금액	5억원 미만	57	17.5	현장 지역	소 계	328	100.0
	5억원 ~ 10억원 미만	34	10.4		서울	51	15.5
	10억원 ~ 50억원 미만	114	35.0		인천	20	6.1
	50억원 ~ 100억원 미만	37	11.3		경기	43	13.1
	100억원 ~ 300억원 미만	52	16.0		강원	24	7.3
	300억원 ~ 500억원 미만	8	2.5		충남	20	6.1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15	4.6		대전	8	2.4
	1,000억원 이상	9	2.8		충북	18	5.5
발주자	소 계	332	100.0	부산	12	3.7	
	정부	37	11.1	울산	14	4.3	
	지방자치단체	85	25.6	대구	12	3.7	
	국영기업체	83	25.0	경북	21	6.4	
	공공단체	17	5.1	경남	26	7.9	
	민간	99	29.8	전남	18	5.5	
	기타	11	3.3	광주	14	4.3	
	소 계	333	100.0	전북	13	4.0	
임금 지급 방식	대체로 순수월급제	60	18.0	제주	6	1.8	
	대체로 일당제 월급제	244	73.3	전국	8	2.4	
	대체로 성과급제	12	3.6				
	기타	17	5.1				

주 : 지역 중 전국이란 전국에 현장이 산재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2) 현장 임금의 반영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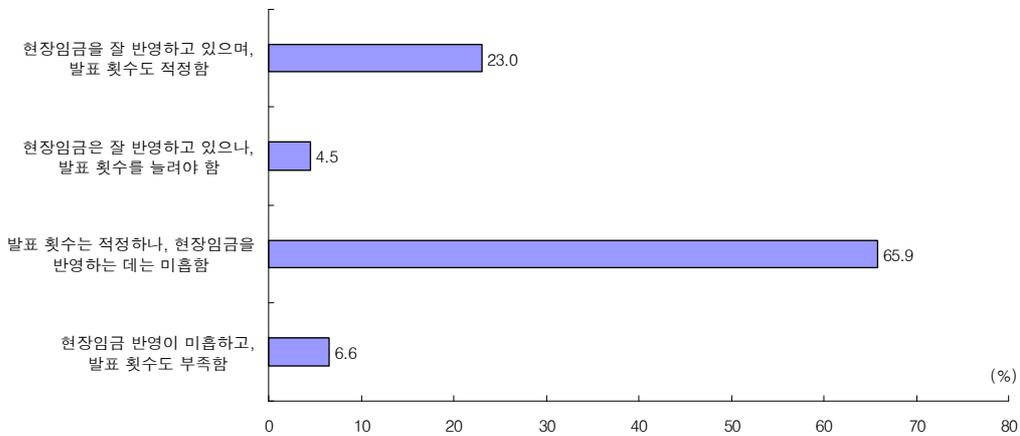
<그림 3-3>에서 보듯이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해 ‘발표횟수는 적정하나, 현장임금을 반영하는 데 미흡하다’는 응답이 65.9%로 가장 많다.⁶⁾ ‘현장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횟수도 적당하다’는 응답이 23.0%를 차지하는 데 비해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은 6.6%이다. <부표 1>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

6) 본 조사는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사의 영업 또는 입찰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는 포장, 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전문건설공사, 사무실·상업용건물,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등이다.

하지만 응답수에 비해 세분되어 유의도는 낮다. 규모별로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규모는 300억~5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등이다. 지역별로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구와 전남이다. 발주자별로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하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정부와 지자체이다.

〈그림 3-3〉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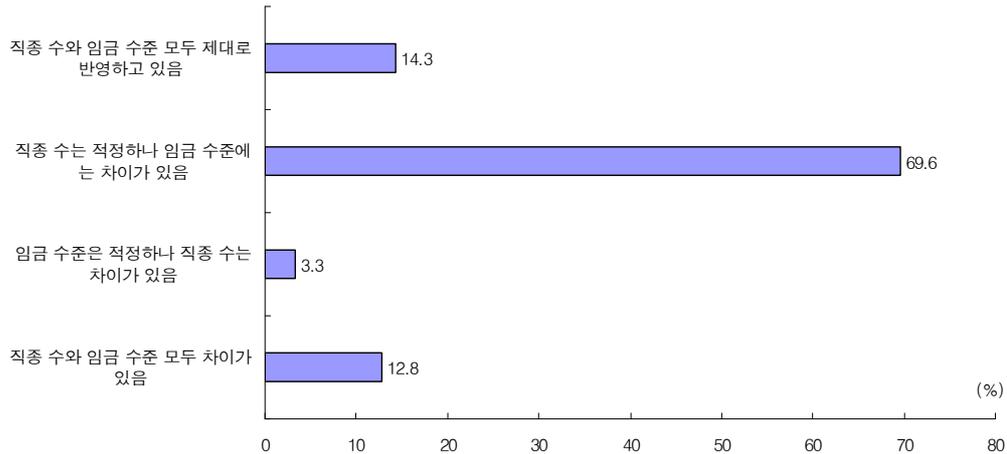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그림 3-4>에 의하면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에 대해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는 응답이 69.6%로 가장 많다.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이 14.3%를 차지하는 데 비해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12.8%를 차지해 유사한 비중을 보인다. <부표 2>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는 조경, 포장, 전문건설공사, 기타설비공사 등이다. 하지만 응답수에 비해 세분되어 유의도는 낮다. 규모별로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규모는 5억~10억원 미만이다. 지역별로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 전북, 광주, 경기 등이다. 발주자별로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공공단체와 정부이다.

〈그림 3-4〉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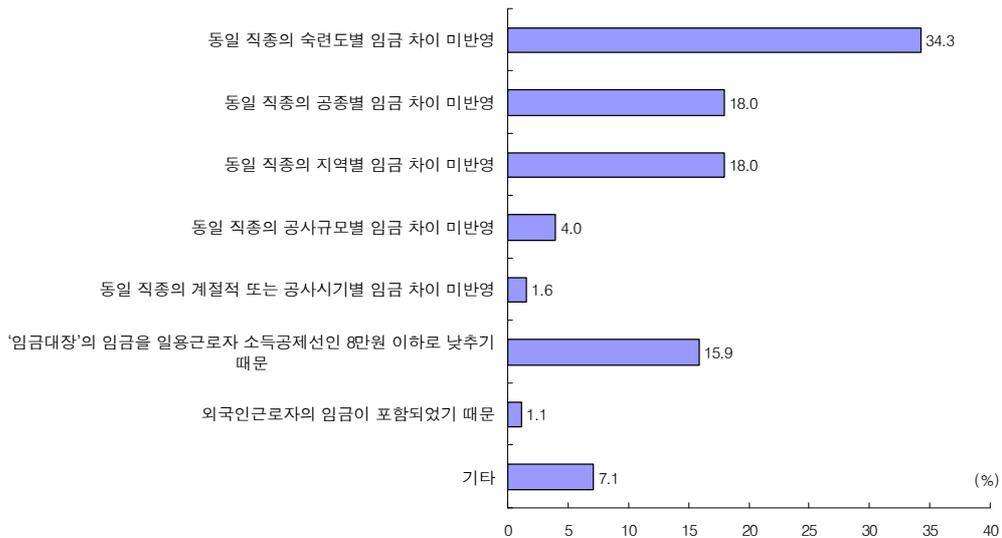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그림 3-5>에서 보듯이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34.3%로 가장 많다.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과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 18.0%로 동일하게 나타난다. '임금대장의 임금을 소득공제선인 8만원 이하로 낮추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5.9%나 차지한다. 그에 비해 '공사규모별 임금 차이 미반영' 또는 '계절적, 공사시기별 임금 차이 미반영'이라는 응답은 많지 않다. <부표 3>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는 병원,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포장 등이다.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는 공장과 발전소시설 등이다.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는 기계기구설치, 문화재 및 유적건물, 창고 및 차고, 택지조성 등이다. 하지만 응답수에 비해 세분되어 유의도는 낮다. 규모별로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규모는 300억원~500억원 미만과 1,000억원 이상 등이다.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규모는 300억원~500억원 미만이다.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규모는 300억원~500억원 미만과 1,000억원 이상 등이다. 지역별로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전국, 인천, 제주 등이다.⁷⁾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대구와 전남이다.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충북, 제주, 전국 등이다. 발주자별로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민간이다.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국영기업체이다.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의 발주자는 기타이다.

〈그림 3-5〉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7) 전국에 현장이 산재함을 의미함. 이하에서도 동일함.

(3)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표 3-15>는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지불임금(8시간 환산 미적용)과 격차가 큰 직종을 보여주고 있다. 68개 직종이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지불임금 간에 격차가 크다고 응답하였다. 기능공을 기준(=100.0)으로 숙련수준별로 지수화할 경우 시중 노임단가 평균은 85.9인데 비해, 팀장은 117.2 그리고 조공은 75.0이다. 즉, 시중 노임단가가 조공보다는 10.9p 높으나 기능공에 비해서는 14.1p, 팀장에 비해서는 31.3p 낮다. 그 중 58개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가 실제 지불하는 기능공의 임금에 못 미친다. 심지어 도장공, 벌목부, 시험관련기사, 잠수부, 절단공, 창호목공, 코킹공 등의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의 임금지수가 50 이하이다.

한편, <표 3-16>은 8시간으로 환산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현장의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조사에 나타난 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시중 노임단가와 차이가 줄어들게 된다. 기능공을 기준(=100.0)으로 숙련수준별로 지수화할 경우 시중 노임단가 평균은 90.3인데 비해, 팀장은 119.5 그리고 조공은 74.1이다. 즉, 시중 노임단가가 조공보다는 16.2p 높으나 기능공에 비해서는 9.7p, 팀장에 비해서는 29.2p 낮다.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더라도 43개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는 실제 지불하는 기능공의 임금에 못 미친다. 심지어 도장공, 벌목부, 시험관련기사, 잠수부, 절단공, 코킹공 등의 경우 시중 노임단가의 임금지수가 여전히 50 이하이다.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지불임금과 격차가 큰 직종에 대해 응답한 현장의 특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표 4>와 <부표 5>에 수록되어 있다. 공사종류별로는 발전소 시설, 아파트, 전기공사, 전문건설공사 등이고, 공사금액 규모별로는 10억~5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경북, 경남, 강원, 충북 등이고, 발주자별로는 국영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다.

〈표 3-15〉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지불임금(8시간 미적용)과 격차가 큰 직종

직 종	일일임금(만원)				임금지수				직 종	일일임금(만원)				임금지수			
	시중노임	팀장	기능	종공	시중노임	팀장	기능	종공		시중노임	팀장	기능	종공	시중노임	팀장	기능	종공
계	11	15	12.8	9.6	85.9	117.2	100.0	75.0	위생공	8.3	12	10.8	-	76.9	111.1	100.0	-
궤부	6.4	11	8	-	80.0	137.5	100.0	-	작업반장	8.5	14	13.5	8	63.0	103.7	100.0	59.3
건설기계운전기사	9	10	7	-	128.6	142.9	100.0	-	잠수부	13	32.5	25	15	52.0	130.0	100.0	60.0
건설공	9.4	14	11.5	9.5	81.7	121.7	100.0	82.6	전기공사기사	15.5	21.3	15.3	9.5	101.3	139.2	100.0	62.1
건축목공	10.2	14.1	11.8	9	86.4	119.5	100.0	76.3	전기공사산업기사	14.2	12	10	-	142.0	120.0	100.0	-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1	16.6	14.4	-	104.9	115.3	100.0	-	조경공	8.1	13.3	9.6	7.8	84.4	138.5	100.0	81.3
기계공	7.9	13	-	9	-	-	-	-	조적공	9.2	16.3	13.1	9.7	70.2	124.4	100.0	74.0
기계설치공	8.5	15	11	-	77.3	136.4	100.0	-	절단공	9	-	18	-	50.0	-	100.0	-
계장공	10.7	12	11	10	97.3	109.1	100.0	90.9	지붕잇기공	9.8	20	14	-	70.0	142.9	100.0	-
내선전공	9.1	12.4	10.7	8.9	85.0	115.9	100.0	83.2	창호목공	9.2	21	18	13	51.1	116.7	100.0	72.2
내장공	9.6	16.3	12.1	8.4	79.3	134.7	100.0	69.4	철골공	10.5	15	13.3	9.9	78.9	112.8	100.0	74.4
닥트공	8.7	11.7	9.8	8.3	88.8	119.4	100.0	84.7	철공	10.8	-	12	8	90.0	-	100.0	66.7
도배공	7.9	-	13	10	60.8	-	100.0	76.9	철근공	10.6	15	12.7	10.2	83.5	118.1	100.0	80.3
도장공	9.1	17	16.6	10.9	54.8	102.4	100.0	65.7	철도신호공	13	16	14	12.5	92.9	114.3	100.0	89.3
목조각공	11.8	20	12.5	-	94.4	160.0	100.0	-	코킹공	8.7	20	15	9	58.0	133.3	100.0	60.0
무선안테나공	11.3	15	13	10	86.9	115.4	100.0	76.9	콘크리트공	10	13.3	11.6	9.5	86.2	114.7	100.0	81.9
미장공	9.3	13.8	11.9	8.8	78.2	116.0	100.0	73.9	타일공	9.8	15	13	8.2	75.4	115.4	100.0	63.1
방수공	7.7	13.3	11	8.8	70.0	120.9	100.0	80.0	통신내선공	9.1	11.7	10	-	91.0	117.0	100.0	-

배관공	8.7	12	10	8.4	87.0	120.0	100.0	84.0	통신 외선공	13.1	15	12.5	9	104.8	120.0	100.0	72.0
배관공 (수도)	10.7	15.8	13.1	10.8	81.7	120.6	100.0	82.4	통신 케이블공	14.7	16	14	-	105.0	114.3	100.0	-
배전 전공	18.4	27	21.8	11	84.4	123.9	100.0	50.5	특별 인부	8.2	8	7.5	-	109.3	106.7	100.0	-
배전활 선전공	28.1	-	26.5	-	106.0	-	100.0	-	화공	10.9	20	13	7	83.8	153.8	100.0	53.8
변전 전공	12.9	20	13	9	99.2	153.8	100.0	69.2	포장공	9.6	14.5	9.5	-	101.1	152.6	100.0	-
보온공	8.5	11	10	9	85.0	110.0	100.0	90.0	플랜 트기 계설 치공	11.5	16.1	13.1	-	87.8	122.9	100.0	-
보통 인부	6.4	8.7	8.3	7.6	77.1	104.8	100.0	91.6	플랜 트배 관공	12.5	18	15	12	83.3	120.0	100.0	80.0
비계공	11.5	17.2	14.1	12.3	81.6	122.0	100.0	87.2	플랜 트용 접공	13.1	18	16.5	12	79.4	109.1	100.0	72.7
별목부	8.8	-	15	-	58.7	-	100.0	-	플랜 트전 공	10.2	15.3	12.7	-	80.3	120.5	100.0	-
샷시공	9	12.5	10.5	9	85.7	119.0	100.0	85.7	플랜 트제 관공	11.2	18	15	12	74.7	120.0	100.0	80.0
석공	9.7	20.3	14	10.3	69.3	145.0	100.0	73.6	한식 목공	12	21.5	16.5	12	72.7	130.3	100.0	72.7
용접공 (일반)	10.2	15.1	14.6	11.6	69.9	103.4	100.0	79.5	한식 미장 공	11.7	17	15	10	78.0	113.3	100.0	66.7
송전 전공	28.4	30	27.5	19	103.3	109.1	100.0	69.1	한식 외공	16.3	30	25	13.5	65.2	120.0	100.0	54.0
시험관 련기사	6.9	-	14.6	-	47.3	-	100.0	-	활석공	9.4	10.5	10.5	8	89.5	100.0	100.0	76.2
원자력 플랜트 전공	14	17.2	13.6	-	102.9	126.5	100.0	-	함석공	9.1	10	9.3	-	97.8	107.5	100.0	-
원자력 기계설 치공	14.3	17.5	13.9	-	102.9	125.9	100.0	-	형틀 목공	9.8	15.1	12	9.1	81.7	125.8	100.0	75.8
									화약 취급 공	8.9	18	10	-	89.0	180.0	100.0	-

주 : 팀장은 반장, 기량, 간부, 도목수 등의 통칭임. 기능공은 준기량, 직원 등의 통칭임. 실제 지불임금은 8시간 기준으로 환산되지 않은 것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표 3-16〉 시중 노임단가와 현장의 실제지불임금(8시간 적용)과 격차가 큰 직종

직 종	일일임금(만원)				임금지수				직 종	일일임금(만원)				임금지수			
	시중 노임	팁장	기능공	조공	시중 노임	팁장	기능공	조공		시중 노임	팁장	기능공	조공	시중 노임	팁장	기능공	조공
계	11	14.6	12.2	9.0	90.3	119.5	100.0	74.1	위생공	8.3	12.0	9.9	-	84.1	121.5	100.0	-
쟁부	6.4	9.3	6.7	-	95.0	137.5	100.0	-	작업 반장	8.5	14.0	11.4	8.0	74.8	123.1	100.0	70.4
건설기계 운전기사	9	8.4	5.9	-	152.7	142.9	100.0	-	잠수부	13	33.6	14.9	25.7	58.8	250.3	100.0	434.4
건축공	9.4	11.8	9.7	8.0	97.1	121.7	100.0	82.6	전기공사 기사	15.5	20.2	14.5	8.7	107.0	139.2	100.0	60.0
건축목공	10.2	11.9	9.9	7.5	102.6	119.5	100.0	75.1	전기공사 산업기사	14.2	12.0	10.0	-	142.0	120.0	100.0	-
고급원자력비파괴 시험공	15.1	16.6	14.4	-	104.9	115.3	100.0	-	조경공	8.1	11.6	8.3	6.8	97.0	138.5	100.0	81.3
기계공	7.9	10.9	-	7.6	-	-	-	-	조적공	9.2	15.4	12.2	8.6	75.5	126.6	100.0	70.4
기계설치공	8.5	15.0	11.0	-	77.3	136.4	100.0	0.0	절단공	9		18.0	-	50.0	0.0	100.0	-
계장공	10.7	12.0	-	10.0	-	-	-	-	지붕잇기공	9.8	20.0	14.0	-	70.0	142.9	100.0	-
내선전공	9.1	11.7	10.0	8.6	91.4	117.9	100.0	86.2	창호 목공	9.2	17.7	15.2	10.9	60.7	116.7	100.0	72.2
내장공	9.6	14.7	10.9	7.6	88.3	134.7	100.0	69.4	철골공	10.5	13.3	11.8	8.8	89.3	112.8	100.0	74.4
닥트공	8.7	9.9	8.3	7.0	105.4	119.4	100.0	84.7	철공	10.8		10.1	6.7	106.9	0.0	100.0	66.7
도배공	7.9		13.0	10.0	60.8	0.0	100.0	76.9	철근공	10.6	12.6	10.7	8.7	99.1	118.1	100.0	81.6
도장공	9.1	16.1	15.7	10.1	57.9	102.4	100.0	64.5	철도 신호공	13	16.0	14.0	12.5	92.9	114.3	100.0	89.3
목조각공	11.8	16.8	10.5	-	112.1	160.0	100.0	-	코킹공	8.7	20.0	15.0	9.0	58.0	133.3	100.0	60.0
무선안테나공	11.3	15.0	13.0	10.0	86.9	115.4	100.0	76.9	콘크리트 공	10	11.0	9.6	8.4	104.0	114.7	100.0	87.3
미장공	9.3	11.1	9.9	7.4	94.3	112.5	100.0	75.1	타일공	9.8	13.0	11.9	7.4	82.5	109.7	100.0	62.0
방수공	7.7	11.6	9.6	7.7	80.5	120.9	100.0	80.0	통신 내선공	9.1	11.7	10.0	-	91.0	117.0	100.0	-
배관공	8.7	9.9	8.3	7.0	104.9	120.0	100.0	84.0	통신 외선공	13.1	15.0	12.5	9.0	104.8	120.0	100.0	72.0
배관공(수도)	10.7	12.7	11.0	9.1	97.0	115.2	100.0	82.4	통신케이블공	14.7	16.0	14.0	-	105.0	114.3	100.0	-
배전전공	18.4	27.0	21.8	11.0	84.4	123.9	100.0	50.5	특별인부	8.2	6.7	6.3	-	129.8	106.7	100.0	-

배전활선 전공	28.1	-	26.5	-	106.0	-	100.0	-	화공	10.9	14.5	9.5	5.1	115.3	153.8	100.0	53.8
변전전공	12.9	16.8	10.9	7.6	117.8	153.8	100.0	69.2	포장공	9.6	13.3	8.7	-	110.5	152.6	100.0	-
보온공	8.5	-	8.4	-	100.9	-	100.0	-	플랜트기 계설치공	11.5	16.1	13.1	-	87.8	122.9	100.0	-
보통인부	6.4	8.2	7.9	6.7	81.4	104.8	100.0	85.5	플랜트 배관공	12.5	18.0	13.7	12.0	91.1	131.3	100.0	87.5
비계공	11.5	16.3	11.9	10.4	96.9	137.1	100.0	87.2	플랜트 용접공	13.1	18.0	15.1	12.0	86.8	119.3	100.0	79.5
벌목부	8.8	-	15.0	-	58.7	-	100.0	-	플랜트 전공	10.2	15.3	12.7	-	80.3	120.5	100.0	-
샷시공	9	10.5	8.8	7.6	101.8	119.0	100.0	85.7	플랜트제 관공	11.2	18.0	15.0	12.0	74.7	120.0	100.0	80.0
석공	9.7	17.9	12.0	9.3	81.0	149.8	100.0	77.3	한식목공	12	19.7	15.1	11.0	79.5	130.3	100.0	72.7
용접공 (일반)	10.2	13.1	12.5	9.8	81.7	105.1	100.0	78.2	한식 미장공	11.7	14.3	12.6	8.4	92.6	113.3	100.0	66.7
송전전공	28.4	30.0	27.5	19.0	103.3	109.1	100.0	69.1	한식와공	16.3	25.3	21.1	11.4	77.4	120.0	100.0	54.0
시험관련 기사	6.9	-	14.6	-	47.3	-	100.0	-	할석공	9.4	8.8	8.2	6.7	114.7	107.9	100.0	82.2
원자력플 랜트전공	14	17.2	13.6	-	102.9	126.5	100.0	-	함석공	9.1	8.4	7.8	-	116.2	107.5	100.0	-
원자력기 계설치공	14.3	17.5	13.9	-	102.9	125.9	100.0	-	형틀목공	9.8	12.5	9.9	7.4	98.5	125.8	100.0	74.7
									화약 취급공	8.9	15.2	8.4	-	105.7	180.0	100.0	-

주 : 팀장은 반장, 기량, 간부, 도목수 등의 통칭임. 기능공은 준기량, 직원 등의 통칭임. 실제 지불임금을 8시간 기준으로 환산한 것임. 잠수부는 6시간 기준이고 실제 근로시간 짧아 전체 평균임금에서는 제외하였음.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4) 삭제 검토 직종

1) 활용이 미흡한 직종

<표 3-17>와 <표 3-18>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에 대한 응답이다. 5개 직종에 대한 응답이 나왔으나 응답자가 적고 일부 현장에 국한되어 있어 이러한 결과만으로 조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른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고자 한다. 지적된 직종과 출처 공사는 드잡이공(철도·철도터널·지하철), 목도(아파트, 철도·철도터널·지하철), 연마공(도로·교량·도로터널), 작업반장(전문건설공사), 함석공(도로·교량·도로터널, 아파트) 등이다.

〈표 3-17〉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

구분	계	드잡이공	목도	연마공	작업반장	함석공
응답수	9	2	3	1	1	2
구성비(%)	100.0	22.2	33.3	11.1	11.1	22.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표 3-18〉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

구분	전체(%)	드잡이공	목도	연마공	작업반장	함석공
공사종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도로, 교량, 도로터널	22.2	-	-	100.0	-
	아파트	22.2	-	33.3	-	-
	전문건설공사	11.1	-	-	-	100.0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44.4	100.0	66.7	-	-
총공사금액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억원 미만	-	-	-	-	-
	100억원 ~ 300억원미만	33.3	-	-	100.0	-
	300억원 ~ 500억원미만	22.2	50.0	33.3	-	-
	500억원 ~ 1,000억원미만	11.1	0.0	33.3	-	-
	1,000억원 이상	33.3	50.0	33.3	-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2) 직종 통합이 필요한 직종

〈표 3-19〉에서 보듯이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에 대해 현행 40여개 직종을 20여개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특히, 배관공과 조적공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부표 6〉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발전소시설, 기타건축, 치산·치수·사방하천, 전문건설공사 등에서 의견의 제시가 많고, 공사규모별로는 주로 100억~300억원 미만, 10억~50억원 미만 등에서 많다.

〈표 3-19〉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현행 직종		통합될 경우의 직종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월급(만원)	명칭	일급/월급(만원)	41	100.0
건설기계운전기사	9.3	건설기계운전기사	9.3	3	7.3
건설기계운전조수	6.7				
건축목공	무응답	건축목공	무응답	1	2.4
창호목공	무응답				
닥트공	9.5	닥트공	9.5	1	2.4
함석공	9.0				
미장공	10.7	미장공	11.0	5	12.2
건축공	9.7				
배관공	10.0	배관공	10.0	1	2.4
배관공(수도)	10.0				
배관공	10.0	배관공	10.0	1	2.4
위생공	9.5				
보일러공	무응답	보일러공	무응답	1	2.4
보온공	무응답				
비계공	12.7	비계공	13.0	3	7.3
특수비계공	13.7				
샷시공	8.0	샷시공	8.0	1	2.4
창호목공	8.0				
시험관련기사	7.0	시험관련기사	8.0	1	2.4
시험관련산업기사	7.0				
원자력기술자	214.3	원자력기술자	334.5	10	24.4
중급원자력기술자	296.5				
상급원자력기술자	374.0				
조경공	12.0	조경공	12.0	1	2.4
조림인부	12.0				
조적공	12.0	조적공	12.0	1	2.4
치장벽돌공	12.0				
조적공	9.5	조적공	9.5	2	4.9
줄눈공	9.5				
철골공	11.0	철골공	11.0	2	4.9
철공	11.0				
포장공	9.7	포장공	10.0	3	7.3
포설공	9.3				
형틀목공	13.0	형틀목공	13.0	1	2.4
건축목공	13.0				
CPU시험사	12.0	CPU시험사	12.0	1	2.4
H/W설치사	12.0				
철근공	12.0	철근콘크리트공	12.0	1	2.4
콘크리트공	12.0				
건축공	10.0	면처리공	10.0	1	2.4
미장공	10.0				
할석공	10.0				

주 : 원자력 직종의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는 월급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3) 직종 재분류가 필요한 직종

<표 3-20>에 의하면 분류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직종에 대해 현행 8개 직종을 14개 직종으로 재분류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부표 7>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전기 공사에서, 공사규모별 주로 10~50억원 미만에서의 요구가 많다.

<표 3-20>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

현행 직종		다시 분류할 경우의 직종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내선전공	12.0	배관전공	12.0	1	11.1
		배선전공	11.0		
석공	9.0	토목석공	15.0	1	11.1
		한식석공	18.0		
		건축석공	12.0		
저압케이블전공	12.0	송전케이블공	18.8	4	44.4
고압케이블전공	14.0	배전케이블공	15.8		
특고압케이블전공	16.0				
저압케이블전공	12.0	송전케이블공	30.0	1	11.1
고압케이블전공	14.0	배전케이블공	14.0		
특고압케이블전공	16.0	배전전공(지중)	16.0		
지적기사	16.0	지적특급기술자	20.0	1	11.1
지적산업기사	14.0	지적고급기술자	16.0		
		지적중급기술자	14.0		
		지적초급기술자	12.0		
형틀목공	11.0	형틀설치공	무응답	1	11.1
		형틀해체공	무응답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5) 신설 검토 직종

1) 직무 신설이 필요한 직종

<표 3-21>에서 보듯이 26종의 직종에 대해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력자재운반공은 현행 직종 중 ‘목도’와 유사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스템설치공, 형틀해체공, 시스템비계공, 형틀폼조립공 등은 유사한 내용으로서 아파트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시스템비계를 설치 및 해체하는 직종’에 대한 신설 요구로 판단된다. <부표 8>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발전소 시설, 전기공사, 조경, 전문건설공사 등에서 요구가 많고, 공사규모별로는 주로 10억~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등에서 많다.

〈표 3-21〉 신설해야 할 직종

직종	응답 수	구성 비	직종	응답 수	구성 비	직종	응답 수	구성 비
도금공	1	0.9	시스템설치공	1	0.9	쇄석공	1	0.9
철거공	2	1.8	형틀해체공	1	0.9	도장공(철탑)	1	0.9
자연석공	1	0.9	시스템동발이공	2	1.8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26	23.4
한식석공	1	0.9	형틀폼조립공	1	0.9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26	23.4
기계기사	1	0.9	배전전공(지중)	6	5.4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26	23.4
기계산업기사	1	0.9	배전전공(외선/저압)	1	0.9	태양광설치공	1	0.9
용접공(상수도)	2	1.8	배전전공(외선/고압)	1	0.9	벽체경량철골공	1	0.9
인력자재운반공	1	0.9	무정전전공	2	1.8	바닥커팅미장공	1	0.9
토목공	1	0.9	철도전공	2	1.8	계	111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2) 직무 세분이 필요한 직종

<표 3-22>에서 보듯이 현행 17개 직종에 대해 세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 특히, 내장공, 도장공, 미장공, 석공, 용접공(일반) 등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부표 9>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전문건설공사, 아파트, 전기공사에서 요구가 많고, 공사규모별로는 주로 10억~5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등에서 요구가 많다.

〈표 3-22〉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1)

현행 직종		세분될 경우의 직종		응답수 41	구성비 100.0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내선전공	8.0	내선전공	8.0	1	24
		태양광설치공	12.0		
내장공	15.0	내장공	15.0	1	24
		경량천정공	12.0		
		벽체경량철골공	13.0		
내장공	15.0	내장공	15.0	1	24
		경량천정공	10.0		
내장공	10.0	내장공	10.0	1	24
		내장목문공	10.0		
도장공	11.0	도장공	11.6	1	24
		도장공(고소작업)/로프공	19.0		
도장공	10.0	도장공	10.0	3	7.3
		건물외벽미장공	15.0		
도장공	9.0	도장공	9.0	2	4.9
		도장공(철탑)	28.0		
미장공	무응답	미장공	무응답	1	24
		뿔칠공	무응답		
미장공	12.0	미장공	12.0	1	24
		건물외벽미장공	14.0		
		기계(바닥)미장공	14.0		
미장공	10.8	미장공	10.8	4	9.8
		기계(바닥)미장공	22.8		
미장공	10.0	미장공	10.0	1	24
		기계(바닥)미장공	25.0		
		기계기사	13.0		
미장공	11.0	미장공	11.0	1	24
		기계(바닥)미장공	23.0		
		수지미장공	13.0		
미장공	10.0	미장공	10.0	1	24
		바닥컷팅미장공	12.0		
미장공	10.0	미장공	10.0	1	24
		스프레이미장공	15.0		
배관공	8.0	우수배관공	9.0	1	24
		오수배관공	8.0		
배전전공	24.5	배전전공	24.5	2	4.9
		배전전공(지중)	22.5		
배전활선전공	28.0	배전활선전공	28.0	1	24
		무정전전공	30.0		
비계공	12.0	비계공	12.0	1	24
		시스템동발이공	15.0		
샷시공	8.0	샷시공	8.0	1	24

		한식창호목공	15.0		
		시스템창호목공	10.0		
석공	10.0	전석쌓기석공	13.0	1	2.4
		돌담쌓기석공	10.0		
		경계석공	8.0		
석공	무응답	석공	무응답	1	2.4
		경계석공	12.0		
용접공(일반)	12.0	용접공(일반)	12.0	1	2.4
		티그용접공	15.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표 3-23>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2)

현행 직종		세분될 경우의 직종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용접공(일반)	11.0	용접공(일반)	11.0	1	2.4
		아르곤용접공	25.0		
용접공(일반)	10.0	용접공(일반)	10.0	3	7.3
		용접공(상수도)	18.0		
절단공	18.0	절단공	18.0	2	4.9
		특수절단공	20.0		
		특수절단공(수중)	30.0		
철골공	15.0	철골설치공	15.0	1	2.4
		철골제작공	12.0		
철근공	10.0	철근조립공	14.0	1	2.4
		철근가공공	11.0		
		PC또는DECK철근공	18.0		
철도신호공	14.0	철도신호공	14.0	1	2.4
		철도전공	13.0		
화공	13.0	화공	13.0	1	2.4
		불화공	40.0		
형틀목공	11.5	형틀설치공	12.5	2	4.9
		형틀해체공	11.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3)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표 3-24>에 의하면 현행 15개 직종을 숙련도별로 구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 특히, 내선전공, 방수공, 미장공, 타일공, 형틀목공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반장, 기능공, 조공 등으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많다. <부표 10>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아파트, 전기공사, 전문건설공사 등에서 요구가 많고, 공사규모별로

는 주로 10억~5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등에서 요구가 많다.

〈표 3-24〉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현행 직종		숙련도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36	100.0
내선전공	11.8	내선전공 반장	13.6	7	19.4
		내선전공	11.4		
		내선전공 조공	9.4		
내선전공	11.0	내선전공	12.0	4	11.1
		내선전공 조공	9.0		
목조각공	15.0	목조각편수	20.0	1	2.8
		목조각공	15.0		
		목조각 조공	10.0		
방수공	11.0	방수공	11.0	1	2.8
		방수공 조공	8.0		
방수공	11.0	방수공 반장	15.0	1	2.8
		방수공	11.0		
배관공(수도)	14.0	배관공(수도) 반장	16.0	1	2.8
		배관공(수도)	14.0		
		배관공(수도) 조공	10.0		
변전전공	무응답	변전전공 1급	16.0	1	2.8
		변전전공 2급	12.0		
		변전전공 3급	9.0		
미장공	11.5	미장공	11.5	2	5.6
		미장공 조공	9.0		
미장공	13.0	미장공 편수(반장)	15.0	1	2.8
		미장공	13.0		
		미장공 조공	8.0		
전기공사기사	11.5	전기공사기사(간부)외 선	16.5	2	5.6
		전기공사기사(직원)내 선	13.0		
조적공	9.0	조적공	12.0	1	2.8
		조적공 조공	9.0		
지붕잇기공	15.0	지붕잇기공	15.0	2	5.6
		지붕잇기공 조공	10.0		
지적기능사	9.0	지적고급기능사	10.0	1	2.8
		지적중급기능사	8.0		
		지적초급기능사	6.0		
타일공	14.0	타일공 반장	15.0	2	5.6
		타일공	12.0		
		타일공 조공	9.5		

타일공	15.0	타일공	15.0	1	2.8
		타일공 조공	9.0		
철근공	10.0	철근공 반장	16.0	1	2.8
		철근공	14.0		
		철근공 조공	12.0		
화공	13.0	불화공	40.0	1	2.8
		특수화공	20.0		
		화공	13.0		
한식미장공	15.0	한식미장편수	17.0	1	2.8
		한식미장공	15.0		
		한식미장공 조공	10.0		
형틀목공	10.0	형틀목공 반장	15.3	3	8.3
		형틀목공	12.7		
		형틀목공 조공	10.0		
형틀목공	14.0	형틀목공	14.0	2	5.6
		형틀목공 조공	10.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4)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표 3-25>에서 보듯이 현행 12개 직종을 공사종류별로 구분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다. 특히, 내선전공, 배관공, 석공, 용접공(일반), 형틀목공에 대해서는 복수의 대안이 제시되어 있다. 대체로 아파트 공사를 별도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많다. <부표 11>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전기공사, 아파트 등에서 요구가 많고, 공사규모별로는 주로 10억~50억원 미만, 5억원 미만 등에서 요구가 많다.

<표 3-25> 공사종류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현행 직종		공종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만원)	공종	일급(만원)		
내선전공	10.6	아파트	9.0	14	35.0
		전기공사	12.6		
내선전공	9.0	아파트	9.0	2	5.0
		일반현장	12.3		
내선전공	12.0	아파트	9.0	1	2.5
		전기공사	14.0		
		일반현장	12.0		
도장공	18.0	아파트	18.0	1	2.5
		일반현장	20.0		

목조각공	무응답	문화재 및 유적건물	20.0	1	2.5
		일반현장	15.0		
배관공	10.0	기계기구설치	10.5	1	2.5
		일반현장	9.5		
배관공	9.0	아파트	8.8	2	5.0
		일반현장	10.3		
배관공	10.0	아파트	10.0	1	2.5
		사무실, 상업용건물	12.0		
배관공	무응답	아파트	9.0	1	2.5
		기타설비공사	11.0		
배전전공	25.0	전기공사	25.0	1	2.5
		일반현장	20.0		
보온공	12.0	기타설비공사	12.0	1	2.5
		잡철공사	11.0		
샷시공	무응답	아파트	15.0	1	2.5
		사무실, 상업용건물	18.0		
석공	9.0	문화재 및 유적건물	18.0	1	2.5
		일반현장	12.0		
석공	10.0	기타건축	8.0	1	2.5
		기타토목시설	13.0		
용접공(일반)	9.8	상하수도	17.5	2	5.0
		철도, 철도터널·지하철	8.6		
		일반현장	9.8		
용접공(일반)	13.0	기타설비공사	13.0	1	2.5
		잡철공사	15.0		
용접공(일반)	무응답	아파트	10.0	1	2.5
		기타설비공사	13.0		
		상하수도	15.0		
코킹공	무응답	아파트	15.0	1	2.5
		사무실, 상업용건물	18.0		
콘크리트공	10.0	기타건축	12.0	1	2.5
		기타토목시설	15.0		
형틀목공	12.3	아파트	12.0	3	7.5
		일반현장	13.7		
형틀목공	12.0	기타건축	15.0	1	2.5
		기타토목시설	12.0		
형틀목공	무응답	아파트	11.0	1	2.5
		기타토목시설	11.0		
		일반현장	13.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6) 조정 검토 직종

1) 명칭 변경이 필요한 직종

<표 3-26>에서 보듯이 9개 직종에 대한 명칭 변경 요구가 있다. <부표 12>에 의하면 공사종류별로는 주로 전기공사, 아파트 등에서 요구가 많고, 공사규모별로는 주로 10억~50억원 미만에서 요구가 많다.

<표 3-26>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현행 직종		달라져야 할 직종의 명칭		응답수	구성비(%)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건축공	10.0	미장공	12.0	1	7.7
배전전공	무응답	배전전공(가공)	무응답	1	7.7
배전활선전공	25.0	무정전전공	28.0	2	15.4
샷시공	8.0	유리공	10.0	1	7.7
시험관련기사	7.0	품질관리사	10.0	1	7.7
운전사(운반차)	7.0	화물운전사	8.0	1	7.7
제도사	8.5	카드사	15.0	4	30.8
철공	10.0	금속공/철골공	10.0	1	7.7
창호목공	9.0	창호공	12.0	1	7.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2) 정의 변경이 필요한 직종

<표 3-27>에는 현행 5개 직종에 정의의 내용을 보완하자는 요구와 16개의 신규 직종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정리되어 있다.

〈표 3-27〉 직종 정의의 변경 및 추가가 필요한 직종

	직종	공종	추가해야 할 직종 정의 내용	응답수	구성비
				31	100.0
현행 직종	미장공	상하수도	건축공의 정의를 포함	1	3.2
	석공	기타토목시설	석축공(돌쌓기)과 경계석공 추가 ·석축공 : 석축공사 시 돌 쌓는 작업자 ·경계석공 : 도로경계석 설치 작업자	1	3.2
		사무실, 상업용건물	경계석공 추가 : 토목공사에 경계석공을 명시	1	3.2
		도로, 교량	경계석공 추가 : 포장 작업 시 경계석 설치 작업자	1	3.2
		건설기계운전기사	전기공사	중기운전기사 추가 명시	1
	철골공	아파트	토목가시설 조립해체 포함	1	3.2
	콘크리트공	기타건축	콘크리트 타설공 추가(현행 정의에도 다지기 포함)	1	3.2
신규 직종	불화공	문화재, 유적건물	불화를 시공하는 사람	1	3.2
	보통인부(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현 직종 외 정보통신 분야 보통인부 정의 필요	4	12.9
	특별인부(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	현 직종 외 정보통신 분야 특별인부 정의 필요	4	12.9
	일일상용인부(용역)	조경	일일용역인부의 임금을 노임단가에 반영이 필요	1	3.2
	용접공(상수도)	상하수도	상수도공사의 상수도 강관을 용접하는 사람	4	12.9
	특수절단공(수중)	전문건설공사	철재 절단 30mm 이상 물속에서 절단하는 사람	1	3.2
	도장공(고소작업)	아파트	밧줄 등을 타고 높은 곳에서 도장 시공하는 사람	1	3.2
	철탐도장공	전기공사	송전설로 철탐의 바탕처리작업과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사용하여 항공장애표지도장, 철탐부식방지도장, 환경친화철탐도장 등을 시공하는 사람	1	3.2
			공사의 기초가 되는 땅파기를 하는 사람	1	3.2
	배전외선전공(고압)	전기공사	배전외선전공의 저압과 고압을 분류	1	3.2
	배전외선전공(저압)	전기공사	배전외선전공의 저압과 고압을 분류	1	3.2
	지중배전전공	전기공사	소정의 지중배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중배전케이블의 직선, 종단, 기기접속작업 등 지중배전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1	3.2
	무정전전공	전기공사	소정의 무정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배전활선전공으로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가공배전선로의 무정전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배전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으로 작업하는 사람	1	3.2
	철도전공	전기공사	전기철도의 신호보완설비를 설치하는 사람	1	3.2
	터널공	철도, 철도터널	추가 명시	1	3.2
철물공	아파트	철재를 이용하여 용접하거나 또는 기타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	1	3.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본 장에서는 임금 실태 조사와 품셈의 비교,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 분석, 면담조사 결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직종의 삭제·신설·조정과 특성별 임금 격차의 반영을 통해 임금 실태 조사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안한다. 그리고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한다.

개선 방안의 주요 분야는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특성별 임금 격차 반영, 각 직종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처리 방향 요약,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 조정 검토 등이다. 특성별 임금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숙련도 보정 지수와 지역 보정 지수의 도입을 검토한다.

1.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앞의 <표 2-5>에서 제시한 분석 틀에 따라 직종의 삭제, 신설, 조정의 순으로 개선 방안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삭제 직종 검토

직종 삭제의 사유로는 품셈 직종 부재, 활용 미흡, 직종 통합, 직종 재분류, 숙련지수 도입 등이 있다.

1)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임금 실태 조사에는 있으나 품셈에는 없는 직종 중 별도의 활용 사례 또는 용도가 없는 직종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토 대상은 건출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보안공, 상급원자력기술자,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용접공(철도), 원자력기술

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측부, 판넬조립공, 플랜트특수용접공 등이다. 면담조사 분석 결과 원자력계장공과 원자력케이ابل전공 등은 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신고리 1, 2호기 및 신월성 1, 2호기 등)에서 반드시 필요한 직종으로 해당 현장의 임금실태를 조사하여 지속적으로 반영 및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여타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른 용도가 없다면 임금 실태 조사 대상 직종에서 삭제한다.

2) 직종 통합

직종 통합이란 기존의 다른 직종에 통합되면서 흡수되는 조사 직종을 삭제한다는 의미이다. <표 4-1>은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 분석 결과 중 유사 직종에 대해 통합을 검토한 내용을 요약하여 보여주고 있다. 9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통합하고 5개 직종은 삭제한다. 검토 내용 중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등을 통합하는 내용은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와 중복된다.

<표 4-1> 임금 실태 조사 원자료 중 유사 직종 간 통합 검토

직종	임금(원)	인원(인)	검토 내용
129. 원자력기술자	103,883	-	통합 검토, 원자력기술자를 기준으로 숙련지수 적용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132,981	-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168,147	-	
89. 기계설치공	90,525	322	기계공으로 통합 검토, 정의 보완
90. 기계공	87,157	1,355	
86. 준설선기관사	87,382	100	준설설기관사로 통합 검토, 정의 보완
85. 준설선기관장	85,489	24	
15. 조적공	92,298	17,161	조적공으로 통합 검토, 정의 보완
16. 치장벽돌공	94,268	1,359	
99. 닥트공	85,398	6,674	직무 상이, 검토 유보
97. 함석공	81,151	106	
30. 내장공	94,863	17,020	직무 상이, 검토 유보
34. 패널조립공	94,938	4,108	

<표 4-2>은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제시된 직종 통합 요구에 대한 검토 내용이다. 8개 직종을 4개 직종으로 통합한다는 것이다.

그 이외에 전문가 의견으로서 광통신설치사를 광케이블설치사에 통합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직종 통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광통신설치사, 기계설치공, 준설선기관장, 줄눈공, 치장벽돌공, 포설공, 특수비계공, H/W설치사, CPU 시험사 등 9개의 직종을 삭제한다.

〈표 4-2〉 설문조사 중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검토

현행 직종		통합될 경우의 직종		검토 내용
명칭	일급/월급(만원)	명칭	일급/월급(만원)	
건설기계운전기사	9.3	건설기계운전조수	9.3	조수는 숙련도 보정 지수 적용
건설기계운전조수	6.7			
시험관련기사	7.0	시험관련기사 ⇒ 품질관리사	8.0	품질관리사로 명칭 변경, 보정 지수 적용
시험관련산업기사	7.0			
시험관련기능사	-			
원자력기술자	214.3	원자력기술자	334.5	중급원자력기술자 기준으로 보정 지수 적용 (면담조사와 중복)
중급원자력기술자	296.5			
상급원자력기술자	374.0			
조경공	12.0	조경공	12.0	조경공 기준으로 보정 지수 적용
조립인부	12.0			
조적공	12.0	조적공	12.0	통합 검토, 직종 정의 보완
치장벽돌공	12.0			
조적공	9.5	조적공	9.5	통합 검토, 직종 정의 보완
줄눈공	9.5			
포장공	9.7	포장공	10.0	통합 검토, 직종 정의 보완
포설공	9.3			
닥트공	9.5	닥트공	9.5	직무 상이, 통합 유보
함석공	9.0			
철근공	12.0	철근콘크리트공	12.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콘크리트공	12.0			
건축목공	무응답	건축목공	무응답	창호목공은 창호공으로 변경, 통합 유보
창호목공	무응답			
미장공	10.7	미장공	11.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건출공	9.7			
배관공	10.0	배관공	10.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배관공(수도)	10.0			
배관공	10.0	배관공	10.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위생공	9.5			
보일러공	무응답	보일러공	무응답	직무 상이, 통합 유보
보온공	무응답			
비계공	12.7	비계공	13.0	임금 차이 존재, 통합 유보
특수비계공	13.7			
샷시공	8.0	샷시공	8.0	창호목공은 창호공으로 변경,

창호목공	8.0			통합 유보
철골공	11.0	철골공	11.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철공	11.0			
형틀목공	13.0	형틀목공	13.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건축목공	13.0			
CPU시험사	12.0	CPU시험사	12.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H/W설치사	12.0			
건축공	10.0	면처리공	10.0	직무 상이, 통합 유보
미장공	10.0			
활석공	10.0			

주 : 원자력 직종의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는 월급임.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3) 활용이 미흡한 직종

활용 미흡에 의한 직종 삭제란 품셈 직종에 존재하나 실제로 거의 활용이 없는 조사 직종을 삭제한다는 의미이다.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원자력제관공 등 3개 직종의 경우 품셈에도 직종이 있으나 현장에서의 활용이 미흡하므로 삭제한다.

4) 직종 재분류로 인한 삭제

직종 재분류에 따른 삭제란 기존 직종을 재분류하면서 변경 이전의 조사 직종을 삭제한다는 의미이다. 면담조사와 <표 4-3>의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전압에 따라 구별되어 있는 케이블공(저압케이블공, 고압케이블공, 특고압케이블공)은 삭제하고 송전 케이블공과 배전케이블공을 신설한다.

〈표 4-3〉 설문조사 중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에 대한 검토

현행 직종		다시 분류할 경우의 직종		검토 결과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저압케이블전공	12.0	송전케이블공	18.8	재분류 검토 (면담조사와 중복)
고압케이블전공	14.0	배전케이블공	15.8	
특고압케이블전공	16.0			
지적기사	16.0	지적특급기술자	20.0	지적산업기사 수준을 '지적기술자'로 정의, 지적기사/기능사 임금에 보정 지수 적용 검토
지적산업기사	14.0	지적고급기술자	16.0	
		지적중급기술자	14.0	
		지적초급기술자	12.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2) 신설 직종 검토

직종 신설의 사유로는 직무 신설, 명칭 신설, 직무 세분, 직종 재분류, 공종별 구분 등이 있다.

1) 직무 신설

직무 신설에 의한 직종 신설이란 조사 직종 선정 시에는 없었으나 이후 신설된 직무에 대한 조사 직종을 신설한다는 의미이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시스템비계공'이 공법 변화로 도입된 시스템과 관련하여 시스템해체공 및 시스템해체틀정리공 등의 이름으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바닥미장공의 경우에도 대규모 현장에서 필요하며 야간작업이 많고 일당도 미장공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컷팅공 역시 기존의 직무와 차이가 있으므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새로운 직무의 출현으로 바닥미장공, 시스템비계공, 콘크리트컷팅공 등 3개의 직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2) 명칭 신설

명칭 신설에 따른 직종 신설이란 조사 직종에는 없으나 현장에는 있는 직무에 대해 조사 직종을 신설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의미에 부합하는 요구는 원자력중기운전원

직종의 신설에 대한 것이다.

3) 직무 세분

직무 세분에 따른 직종 신설이란 기존 직무가 세분되면서 조사 직종이 신설됨을 의미한다. <표 4-4>에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나타난 세분 요구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직무 세분으로 신설되는 직종의 명칭은 ‘직종명(직무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검토 결과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용접공(상수도), 용접공(특수), 철골공(경량) 등 5개 직종의 신설을 제안한다.

<표 4-4> 설문조사 중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검토(1)

현행 직종		세분될 경우의 직종		검토 내용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용접공(일반)	12.0	용접공(일반)	12.0	세분 검토	용접공(일반)		
		용접공(티그)	15.0		용접공(특수)		
용접공(일반)	11.0	용접공(일반)	11.0		용접공(상수도)		
		용접공(아르곤)	25.0				
용접공(일반)	10.0	용접공(일반)	10.0				
		용접공(상수도)	18.0				
화공	13.0	화공	13.0	검토 유보, 불화는 특수화공 분야			
		불화공	40.0				
절단공	18.0	절단공	18.0	검토 유보, 수중작업 제외, 수중작업의 경우 잠수부의 업무에 포함			
		특수절단공	20.0				
		특수절단공(수중)	30.0				
내선전공	8.0	내선전공	8.0	태양광설치는 내선전공이 담당, 검토 유보			
		태양광설치공	12.0				
내장공	15.0	내장공	15.0	경량철골공 신설 검토, 직종 신설에서 언급			
		경량천정공	12.0				
		벽체경량철골공	13.0				
내장공	15.0	내장공	15.0				
		경량천정공	10.0				
내장공	10.0	내장공	10.0				
		내장목문공	10.0				
도장공	11.0	도장공	11.6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세분 검토, 도장공(철탑)은 직종 신설에서도 언급			
		도장공(고소작업)/로프 공	19.0				
도장공	10.0	도장공	10.0				
		건물외벽미장공	15.0				
도장공	9.0	도장공	9.0				

		도장공(절탐)	28.0	
배전전공	24.5	배전전공(일반)	24.5	검토 유보, 숙련도 구분 검토
		배전전공(지중)	22.5	
석공	10.0	석공(전석쌓기)	13.0	검토 유보, 경계석 정의 추가, 조경 관련 업무 제외
		석공(돌담쌓기)	10.0	
		석공(경계석)	8.0	
배관공	8.0	우수배관공	9.0	직무 차이 모호, 검토 유보
		오수배관공	8.0	
배전활선전공	28.0	배전활선전공	28.0	무정전전공으로 변경 검토, 직종 신설에서 언급
		무정전전공	30.0	
비계공	12.0	비계공	12.0	시스템비계공 신설 검토, 직종 신설에서 언급
		시스템동발이공	15.0	
샷시공	8.0	샷시공	8.0	한식창호목공과 시스템창호목공을 묶어 '창호공'에 포함 검토
		한식창호목공	15.0	
		시스템창호목공	10.0	
철골공	15.0	철골설치공	15.0	유관 작업, 검토 유보
		철골제작공	12.0	
철근공	10.0	철근조립공	14.0	유관 작업, 검토 유보
		철근가공공	11.0	
		PC 또는 DECK철근공	18.0	
철도신호공	14.0	철도신호공	14.0	검토 유보
		철도전공	13.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표 4-5〉 설문조사 중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에 대한 검토(2)

현행 직종		세분될 경우의 직종		검토 내용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미장공	무응답	미장공	무응답	바닥미장공 신설 검토, 콘크리트컷팅공 신설 검토, 직종 신설에서 언급
		뽀칠공	무응답	
미장공	12.0	미장공	12.0	
		건물외벽미장공	14.0	
		기계(바닥)미장공	14.0	
미장공	10.8	미장공	10.8	
		기계(바닥)미장공	22.8	
미장공	10.0	미장공	10.0	
		기계(바닥)미장공	25.0	
		기계기사	13.0	
미장공	11.0	미장공	11.0	
		기계(바닥)미장공	23.0	
		수지미장공	13.0	
미장공	10.0	미장공	10.0	
		바닥컷팅미장공	12.0	
미장공	10.0	미장공	10.0	
		스프레이미장공	15.0	
형틀목공	11.5	형틀설치공	12.5	유관 작업, 검토 유보
		형틀해체공	11.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4) 직종 재분류에 따른 직종 신설

직종 재분류에 따른 직종 신설이란 기존 직종을 재분류하면서 변경된 이름으로 조사 직종을 신설한다는 의미이다. 앞의 직종 삭제 설명에서 보았듯이 배전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등 2개 직종의 신설을 제안한다.

2 특성별 임금 격차 반영

숙련도, 지역, 공사종류, 공사규모, 발주자 등의 특성에 따른 임금 격차의 반영 가능성을 검토하고 가능할 경우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숙련도

1) 숙련도 보정 지수의 도입 및 장단점

각 직종별로 숙련도가 반영된 임금을 노무비 산정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숙련도 보정 지수의 도입을 제안한다. 숙련도 보정 지수란 각 직종별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숙련도간 임금 격차를 표준화한 지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각 직종의 기능공 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현행 작업반장 또는 조공의 임금은 기능공 임금에 해당 숙련도의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임금 실태 조사 단계에서 각 직종의 숙련도별로 임금과 투입인원이 구분되어 조사되어야 한다. 즉, 각 직종별로 상급(작업반장, 기량, 기사 등), 중급(기능공, 준기량, 산업기사 등), 하급(조공, 조력공, 기능사 등)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시기마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기능공을 100으로 하는 지수를 산정하여 시중 노임단가와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시중 노임단가를 공표할 때에는 각 직종의 기준임금(기능공급)만을 제시한다. 팀장과 조공의 임금에 대해서는 함께 발표하는 숙련도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각 직종 내에서 특성에 맞도록 숙련도에 따른 반장급과 조공급의 임금이 반영될 수 있다. 거의 모든 직종에서 숙련도별로 임금을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모든 요구를 조사에 반영할 경우 직종수가 너무 많아져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직종수를 최소화하면서도 숙련도를 반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활용하는 공사규모 또는 공종의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간의 임금 격차도 반영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단점은 조사표에 모든 직종을 숙련도별로 구분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조사표가 너무 길어진다면 설문지를 공통 직종과 해당 직종으로 구분하여 공종별로 조사표를 분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숙련도 보정 지수 도입에 따른 직종 삭제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직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작업반장이나 조공 또는 각 직종의 숙련수준을 의미하는 명칭을 포함한 직종은 삭제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품셈에서는 조공 개념의 직종을 신설해 활용하도록 한다. 현행 조사 직종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조장, 고급선원, 도편수, 상급원자력기술자, 선부,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기사, 중급원자력기술자, 작업반장, 전기공사기사, 조력공, 조립인부,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사,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등 20개의 직종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

3) 보정 지수 활용시 숙련도별 직종 구분 요구의 충족 가능성

<표 4-6>에서 보듯이 기능공 수준을 기준으로 숙련도별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각 직종의 반장과 조공의 임금을 산정할 경우 편차는 있으나 현행 방법에 비해 실제 지불임금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다. 또한 면담조사에서도 제기된 한식석공, 한식석공조공, 도석수 등의 구분과 전기조공에 대한 신설 요구에도 부응할 수 있다.

〈표 4-6〉 설문조사 중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검토

현행 직종		숙련도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숙련도보정 지수 적용 임금 (8시간 미적용)	검토 내용
명칭	일급(만원) (시중노임)	명칭	일급(만원)		
내선전공	11.8 (8.8)	내선전공 반장	13.6	13.4	내선전공 기준, 반장과 조공은 보정 지수 적용 (117.2, 100.0, 75.0)
		내선전공	11.4	11.4	
		내선전공 조공	9.4	8.6	
목조각공	15.0 (11.3)	목조각편수	20.0	17.6	목조각공 기준
		목조각공	15.0	15.0	
		목조각 조공	10.0	11.3	
방수공	11.0 (7.6)	방수공 반장	15.0	12.9	방수공 기준
		방수공	11.0	11.0	
		방수공 조공	8.0	8.3	
배관공(수도)	14.0 (9.9)	배관공(수도) 반장	16.0	16.4	배관공(수도) 기준
		배관공(수도)	14.0	14.0	
		배관공(수도) 조공	10.0	10.5	
변전전공	무응답 (12.3)	변전전공 반장	16.0	14.1	변전전공 기준
		변전전공	12.0	12.0	
		변전전공 조공	9.0	9.0	
미장공	13.0 (9.0)	미장공 편수(반장)	15.0	15.2	미장공 기준
		미장공	13.0	13.0	
		미장공 조공	8.0	9.8	
조적공	9.0 (8.7)	조적공 반장	-	14.1	조적공 기준
		조적공	12.0	12.0	
		조적공 조공	9.0	9.0	
지붕잇기공	15.0 (9.2)	지붕잇기공 반장	-	17.6	지붕잇기공 기준
		지붕잇기공	15.0	15.0	
		지붕잇기공 조공	10.0	7.5	
타일공	14.0 (9.9)	타일공 반장	15.0	14.1	타일공 기준
		타일공	12.0	12.0	
		타일공 조공	9.5	9.0	
철근공	10.0 (10.1)	철근공 반장	16.0	16.4	철근공 기준
		철근공	14.0	14.0	
		철근공 조공	12.0	10.5	
한식미장공	15.0 (10.9)	한식미장편수	17.0	17.6	한식미장공 기준
		한식미장공	15.0	15.0	
		한식미장공 조공	10.0	11.3	
형틀목공	10.0 (9.7)	형틀목공 반장	15.3	14.9	형틀목공 기준
		형틀목공	12.7	12.7	
		형틀목공 조공	10.0	9.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4) 숙련도 보정 지수 적용 방법

<표 4-7>에서 보듯이 설문조사에는 각 숙련도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을 명시하여 임금을 조사하고 숙련도 보정 지수를 산출하여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규정한다. 예컨대, 작업반장과 조력공의 경우에는 각 직종 내부의 기능공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조사 직종을 줄이면서도 직종 간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표 4-7> 숙련도 보정 지수 적용 방법 예시

직종명(명칭 변경)	기준 직종(현행 직종)	상급숙련지수 적용 직종	하급숙련지수 적용 직종
건설기계운전수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조수
선원	보통선원	고급선원	선부
한식목공	한식목공	도편수	한식목공조공
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품질관리사	시험관련산업기사	시험관련기사	시험관련기능사
○○공	○○공	○○작업반장	○○조력공(조공)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
조경공	조경공	-	조림인부
지적기술자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사	지적기능사
정보통신기술자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기능사
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한식와공	한식와공	-	한식와공조공

주 : 정보통신기술자와 관련해 정보통신기술자(특급), 정보통신기술자(중고급), 정보통신기술자(초급)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때 기준 직종은 정보통신기술자(중고급)가 될 것임.

(2) 지역

1) 지역별 보정 지수 도입 및 장단점

지역별 임금 격차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 보정 지수를 도입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각 시기마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는 17개 지역의 보정 지수를 산정하여 시중 노임단가와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므로 해당 지역의 보정 지수를 곱하여 당해 지역 해당 직종의 임금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유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별 보정 지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장점은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인데 비해, 단점은 임금이 하락하는 지역에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2) 지역별 보정 지수 적용 예시

<표 4-8>에서 보듯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형틀목공의 임금에 지역별 보정 지수를 곱할 경우 실제로 조사된 각 지역의 임금수준에 좀 더 가까워진다. 시중노임의 전국 동일 임금과 원자료의 지역별 임금의 격차가 -6,201원에서 7,579원까지 벌어지던 것이 지역별 보정 지수를 적용할 경우 -4,385원에서 3,601원으로 축소된다.

<표 4-8> 지역별 보정 지수 산정 및 적용 예시

(단위 : 원, 개, 인, %)

직종	지역별 보정 지수 산정		형틀목공 임금에 대한 적용 예시			임금 격차	
	전지역의 전직종 평균임금 (원)	지역별 보정 지수 (A)	형틀목공 시중노임 (B)	보정 지수 적용임금 (A×B=C)	시중노임단가 조사원자료의 임금(D)	B-D	C-D
강원	86,901	94.4	96,690	91,275	94,515	2,175	-3,240
경기	94,776	102.9	96,690	99,494	97,563	-873	1,931
경남	91,173	99.0	96,690	95,723	100,108	-3,418	-4,385
경북	85,208	92.5	96,690	89,438	92,469	4,221	-3,031
광주	89,696	97.4	96,690	94,176	97,096	-406	-2,920
대구	94,665	102.8	96,690	99,397	98,491	-1,801	906
대전	99,969	108.5	96,690	104,909	102,891	-6,201	2,018
부산	91,790	99.7	96,690	96,400	97,994	-1,304	-1,594
서울	95,003	103.1	96,690	99,687	96,911	-221	2,776
울산	84,714	92.0	96,690	88,955	89,111	7,579	-156
인천	92,312	100.2	96,690	96,883	99,479	-2,789	-2,596
전남	92,759	100.7	96,690	97,367	95,227	1,463	2,140
전북	89,300	97.0	96,690	93,789	92,853	3,837	936
제주	96,488	104.8	96,690	101,331	100,254	-3,564	1,077
충남	90,444	98.2	96,690	94,950	97,287	-597	-2,337
충북	93,958	102.0	96,690	98,624	95,023	1,667	3,601
계	92,102	100.0	96,690	96,690	96,388	302	302

주 : 지역별 보정 지수는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분석 결과 도출된 것임.
 자료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2006.

(3) 공사종류

공사종류별 보정 지수의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공사종류에 따라 쓰이는 직종의 차이가 크므로 특정 공사종류에 투입되는 직종간의 차이가 다른 직종에도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일률적인 지수의 산정 및 적용이 불합리할 수 있다. 따라서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제기되는 공사종류에 따른 직종 분류 요구를 검토하여 이것이 타당할 경우 당해 직종에 공사종류를 병기하여 신설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명칭은 ‘직종명(공종명)’ 방식으로 작성한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목조각공(문화재),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한식석공 등 5개 직종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편,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공종에 따른 임금 격차의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4-9〉 설문조사 중 공사종류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에 대한 검토

현행 직종		공종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검토 내용	
명칭	일급(만원)	공종	일급(만원)		
목조각공	무응답	문화재 및 유적건물	20.0	구분 검토	목조각공(문화재)
		일반현장	15.0		목조각공(일반)
내선전공	12.0	아파트	9.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전기공사	14.0		
		일반현장	12.0		
배관공	9.0	아파트	8.8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일반현장	10.3		
배전전공	25.0	전기공사	25.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일반현장	20.0		
샷시공	무응답	아파트	15.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사무실, 상업용건물	18.0		
코킹공	무응답	아파트	15.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사무실, 상업용건물	18.0		
콘크리트공	10.0	기타건축	12.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기타토목시설	15.0		
형틀목공	12.3	아파트	12.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일반현장	13.7		
보온공	12.0	기타설비공사	12.0	검토 유보, 숙련도별 구분 검토	
		잡철공사	11.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4) 공사규모

공사규모에 따라 투입되는 직종이 상이하므로 일률적인 보정 지수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숙련도 보정 지수를 도입할 경우 공사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의 일부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5) 발주자

발주자별로는 격차가 크지 않고 체계적인 격차를 야기하는 특성이 뚜렷하지 않아 일률적인 보정 지수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개선 방안 요약 및 단계적 접근 방안

(1) 각 직종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정의 조정

여기서는 먼저 직종의 조정에 대해 언급하고 이를 포함한 전체 개선 방안을 담아 요약하고자 한다. 직종 조정이란 각 직종에 대한 삭제나 신설이 아닌 명칭 변경이나 정의 변경을 말한다. 명칭 변경에 의한 조정이란 기존 직종에 대해 기술 변화 또는 직무 세분 등으로 조사 직종의 명칭을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정의 변경에 의한 조정이란 기존 직종에 대해 기술 변화 또는 직무 세분 등으로 조사 직종의 정의를 변경한다는 의미이다. <표 4-10>은 명칭 변경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10〉 설문조사 중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에 대한 검토

현행 직종		달라져야 할 직종의 명칭		검토 내용
명칭	일급(만원)	명칭	일급(만원)	
시험관련기사	7.0	품질관리사	10.0	내용 구체화, 숙련 반영 가능, 변경 검토
배전활선전공	25.0	무정전전공	28.0	무정전전공으로 변경 검토
제도사	8.5	캐드사	15.0	기술변화 반영, 정의 변경 검토, 제도사 명칭 유지
철공	10.0	금속공/철골공	10.0	‘철골공(경량)’으로 변경 검토
창호목공	9.0	창호공	12.0	사용 재료 포괄적 정의, 변경 검토
건축공	10.0	미장공	12.0	건축공 삭제(품셈 직종 부재)
배전전공	무응답	배전전공(가공)	무응답	내용 모호, 검토 유보
샷시공	8.0	유리공	10.0	검토 유보
운전사(운반차)	7.0	화물운전사	8.0	검토 유보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표 4-11>은 개선 방안에서 언급된 직종의 삭제·신설·조정과 보정 지수 도입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직종의 현행 정의 중 ‘운전 중인’을 ‘가동 중인’으로 일괄 수정하고, ‘보수’를 ‘정비’로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한다.

〈표 4-11〉 직종에 대한 검토 내용 및 정의 조정 요약

직종명	검토	사유	처리 방향 및 직종 정의 변경	비고
건설기계운전기사 ⇒ 건설기계운전수	조정	명칭 변경	중기운전 포함	
건설기계운전조수	삭제	숙련지수 도입	건설기계운전수 × 하급숙련지수	-1
건설기계조장	삭제	숙련지수 도입	건설기계운전수 × 상급숙련지수	-1
건축공	삭제	품셈 직종 부재	미장공 준용	-1
고급선원	삭제	숙련지수 도입	선원 × 상급숙련지수	-1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원자력비파괴시험공	조정	명칭 변경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II 이상의 자격소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로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 기준에 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또는 구조물 용저 부위의 비파괴검사 및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고압케이블전공	삭제	직종 재분류	배전케이블전공으로 재분류	-1
광케이블설치사	조정	정의 변경	<광케이블설치사 정의 포함>광섬유케이블 및 광전송장치의 시공(설치, 접속, 시험, 측정, 교정 등)과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광통신설치사	삭제	직종 통합	광케이블설치사에 통합	-1

기계공	조정	정의 변경	<기계설치공 정의 포함>일반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기계설치공	삭제	직종 통합	기계공에 통합	+1
노즐공	삭제	품셈 직종 부재	콘크리트공 준용	-1
도장공 ⇒ 도장공(일반)	조정	명칭 변경	<직무 내용 축소>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 등에 칠하는 사람(고소외벽 및 철탑 제외)	
도장공(고소외벽)	신설	직무 세분	밧줄 등을 타고 높은 곳에서 도장 시공하는 사람	+1
도장공(철탑)	신설	직무 세분	송전선로 철탑의 바탕처리작업과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사용하여 항공장애표지도장, 철탑부식방지도장, 환경친화철탑도장 등을 시공하는 사람	+1
도편수	삭제	숙련지수 도입	한식목공 × 상급숙련지수	-1
동발공(터널)	삭제	품셈 직종 부재	특별인부 준용(임금 수준 유사)	-1
목도 ⇒ 인력운반공	조정	명칭 변경		
목조각공 ⇒ 목조각공(일반)	조정	명칭 변경	<직무 내용 축소>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 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문화재급 제외)	
목조각공(문화재)	신설	공종별 구분	상동(문화재급에 한정)	+1
바닥미장공	신설	직무 신설	타설된 콘크리트를 제물에 마무리하거나 콘크리트 등의 바탕 위에 타설된 시멘트 모르터를 기계 또는 쇠퇴손을 사용하여 바닥면을 매끄럽게 마무리하는 사람	+1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신설	공종별 구분	가동 중인 발전소의 계통 및 기계설비 정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비에 대한 이상 상태의 진단, 분석을 통해 예측 예방정비를 수행하거나 주기적인 예방정비 업무 및 고장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람	+1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신설	공종별 구분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자격소지자로 가동 중인 발전소에서 제반 규정에 따라 각종 기기, 배관 또는 구조물 용저 부위의 비파괴 검사 및 시험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람	+1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신설	공종별 구분	가동 중인 발전소의 계통 및 전기설비 정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설비에 대한 이상 상태의 진단, 분석을 통해 예측 예방정비를 수행하거나 주기적인 예방정비 업무 및 고장설비에 대한 정비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사람	+1
벽돌(블럭)제작공	삭제	활용 미흡	조적공 준용(임금 수준 유사)	-1
배전케이블공	신설	직종 재분류	저압 및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직류 7,000V 이하, 교류)	+1
배전활선전공 ⇒ 무정전전공	조정	명칭 변경	소정의 무정전전공 교육과정을 이수한 숙련된 배전활선전공으로 고압이상의 전압이 인가된 가공배전선로의 무정전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사용하여 배전활선작업과 임시송전공법으로 작업하는 사람	
보안공	삭제	품셈 직종 부재	보통인부 준용	-1
보통선원 ⇒ 선원	조정	명칭 변경	선원 직종의 기준	
비계공	조정	정의 변경	<특수비계공 포함>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 종사하는 사람	
상급원자력기술자	삭제	숙련지수 도입	원자력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1
석공	조정	정의 변경	<경계석 시공 포함>각종 석재를 사용 목적에 알맞게 가공하고 표면을 마무리하여 설치(경계석 시공 포함)하는 사람(조경 목적 제외)	
선부	삭제	숙련지수 도입	선원 × 하급숙련지수	-1
송전케이블공	신설	직종 재분류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1
시공측량사	삭제	품셈 직종 부재		-1
시공측량사조수	삭제	품셈 직종 부재		-1
시스템비계공	신설	직무 신설	콘크리트 타설용 거푸집의 지지 또는 상부에 설치된 구조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시스템비계를 조립, 설치 및 해체하는 사람	+1
시험관련기능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품질관리사 × 하급숙련지수	-1
시험관련기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품질관리사 × 상급숙련지수	-1
시험관련산업기사 ⇒ 품질관리사	조정	명칭 변경		
용접공(상수도)	신설	직무 세분	상수도 공사의 상수도 강관을 용접하는 사람	+1
용접공(일반)	조정	정의 변경	<직무 내용 축소>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알곤 및 티그용접 제외)	
용접공(특수)	신설	직무 세분	상동(알곤 및 티그용접에 한정)	+1
용접공(철도)	삭제	품셈 직종 부재		-1
원자력기술자	조정	정의 변경	건설 또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하여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설비 시공 및 정비 업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사람	
원자력배관공	조정	정의 변경	<원자력제관공 정의 포함>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 시 발전소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제관 및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원자력제관공	삭제	활용 미흡		-1
원자력중기운전원	신설	명칭 신설	건설 또는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서 해당 중기에 대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안전성 또는 신뢰성 관련 중요한 부품을 취급하는 사람	+1
작업반장	삭제	숙련지수 도입	각 직종 임금(기능공 기준)에 보정 지수 적용	-1
잠수부	조정	정의 변경	수중에서 용접, 절단 및 기타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저압케이블전공	삭제	직종 재분류		-1
전기공사기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전기공사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1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기술자	조정	명칭 변경		
절단공	조정	정의 변경	<직무 내용 축소>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수중작업 제외)	
제도사	조정	정의 변경	현장에서 수작업, 캐드프로그램, 샵드로잉 등으로 도면을 수정하거나 상세도면 및 입체도면을 그리는 사람	
조력공	삭제	숙련지수 도입	해당 직종 임금(기능공 기준)에 숙련지수 적용	-1
조립인부	삭제	숙련지수 도입	조경공 × 하급숙련지수	-1
조적공	조정	정의 변경	<치장벽돌공 정의 포함>시멘트벽돌, 치장벽돌, 콘크리트 블록 및 ALC 블록 등 개체의 재료를 교착제를 사용하여 쌓기를 하고 줄눈처리하는 사람	
준설선기관사	조정	정의 변경	<준설선기관장 정의 포함>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기관장 포함)	
준설선기관장	삭제	직종 통합	준설선기관사에 통합	-1
줄눈공	삭제	직종 통합	조적공에 통합	-1
중급원자력기술자	삭제	숙련지수 도입	원자력기술자 임금 활용	-1
지적기능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지적기술자 × 하급숙련지수	-1
지적기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지적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1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술자	조정	명칭 변경		
창호목공 ⇒ 창호공	조정	명칭 변경	<정의 중 목재 표현 삭제>건물에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사람	
철골공 ⇒ 철골공(중량)	조정	명칭 변경	<토목가시설 조립·해체 포함>H빔 BOX빔 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토목가시설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	
철골공(경량)	신설	직무 세분	외부 및 내부의 천정이나 벽체 등에 마무리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량철재를 사용하여 골구를 설치하는 사람	+1
측부	삭제	품셈 직종 부재		-1
치장벽돌공	삭제	직종 통합	조적공에 통합	-1
콘크리트컷팅공	신설	직무 신설	콘크리트의 경화, 건조 등 신축작용에 의한 균열을 유도하기 위하여 넓은 콘크리트 바닥에 일정 구간을 정하여 컷팅하는 사람	+1
통신관련기능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통신관련기술자 × 하급숙련지수	-1
통신관련기사	삭제	숙련지수 도입	통신관련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1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기술자	조정	명칭 변경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기술자 중 고급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정보통신설비의 시험·측정·조정 등에 종사하는 사람(광단말 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특고압케이블전공	삭제	직종 재분류		-1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삭제	숙련지수 도입	원자력비파괴시험공 × 상급숙련지수	-1

특수비계공	삭제	직무 통합	비계공에 통합	-1
판넬조립공	삭제	품셈 직종 부재	내장공 준용(임금 수준 유사)	-1
포설공	삭제	직종 통합	포장공에 통합	-1
포장공	조정	정의 변경	<포설공 포함>도로포장 등 공사에서 골재를 포설하거나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플랜트특수용접공	삭제	품셈 직종 부재		-1
한식목공조공	삭제	숙련지수 도입	한식목공 × 하급숙련지수	-1
한식석공	신설	공종별 구분		+1
한식외공조공	삭제	숙련지수 도입	한식외공 × 하급숙련지수	-1
현도사	삭제	활용 미흡		-1
H/W설치사	삭제	직종 통합	H/W시험사에 통합	-1
H/W시험사	조정	정의 변경	<H/W설치사 정의 포함>전자교환기등 컴퓨터 시스템과 기지국의 하드웨어 설치 및 적정설치 검사, 시험, 분석,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S/W시험사	조정	정의 변경	<CPU설치사 정의 포함>전자교환기 및 기지국 등 컴퓨터시스템(CPU 주변장치 포함)으로 운영되는 장비의 소프트웨어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CPU시험사	삭제	직종 통합	S/W시험사에 통합	-1

(2) 직종 삭제·신설·조정 결과 요약

1) 직종의 삭제·신설·조정 내역별 요약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9개의 직종이 감소되어 현행 145개에서 116개로 조사 직종이 축소된다. 내역을 살펴보면 45개의 직종이 삭제되고, 16개의 직종은 신설되며, 26개의 직종은 조정이 필요하다.

〈표 4-12〉 직종 삭제·신설·조정 결과 요약

구분	사유	정의 및 해당 직종명				비고
삭제	품셈직종 부재	건축공, 노즐공, 동발공(터널), 보안공,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용접공(철도), 측부, 판넬조립공, 플랜트특수용접공				-10
	활용 미흡	현도사, 벽돌(블럭)제작공, 원자력제관공				-3
	직종 통합	광통신설치사, 기계설치공, 준설선기관장, 줄눈공, 치장벽돌공, 포설공, 특수비계공, H/W설치사, CPU 시험사				-9
	직종 재분류	고압케이블전공, 저압케이블전공, 특고압케이블전공				-3
	숙련지수 도입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조장, 고급선원, 도편수, 상급원자력기술자, 선부,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기사, 중급원자력기술자, 작업반장, 전기공사기사, 조력공, 조림인부,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사,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20
	소 계					-45
신설	직무 신설	바닥미장공, 시스템비계공, 콘크리트컷팅공				+3
	명칭 신설	원자력중기운전원				+1
	직무 세분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용접공(상수도), 용접공(특수), 철골공(경량)				+5
	공종별 구분	목조각공(문화재),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한식석공				+5
	직종 재분류	배전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2
	소 계					+16
조정	명칭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13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수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원자력비파괴시험공	
		도장공	도장공(일반)	목조각공	목조각공(일반)	
		목도	인력운반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술자	보통선원	선원	
		창호목공	창호공	시험관련산업기사	품질관리사	
		통신관련산업기사	정보통신기술자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술자	
	철골공	철골공(중량)				
정의 변경	광케이블설치사, 기계공, 용접공(일반), 원자력기술자, 원자력배관공, 잠수부, 절단공, 제도사, 조적공, 준설선기관사, 포장공, H/W시험사, S/W시험사				13	
소 계					26	
직종 수 증감					-29	

2) 시중 노임단가 평균임금 단위 공사종류별 요약

<표 4-13>에서 보듯이 현행 총 145개 직종(일반공사 104개, 광전자 6개, 문화재 11개, 원자력 16개, 기타 8개)이 총 116개 직종으로 변동되었다. 공사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공사 86개(104-29+13=88), 광전자 3개(6-3=3), 문화재 10개(11-3+2=10), 원자력 13개(16-4+1=14), 기타 4개(8-4=4) 등이다.

〈표 4-13〉 시중 노임단가 발표 단위 공사종류별 직종 수 변동 내역

구 분	현 행	변 동		
		삭 제	신 설	결 과
일반공사	104개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조장, 견출공, 고급선원, 고압케이블전공, 기계설치공, 동발공(터널), 보안공, 벽돌(블럭)제작공, 선부,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시험관련기능사, 시험관련기사, 용접공(철도), 작업반장, 저압케이블전공, 준설선기관장, 줄눈공, 조력공, 조림인부, 지적기능사, 지적기사, 측부, 치장벽돌공, 특고압케이블전공, 특수비계공, 판넬조립공, 포설공, 플랜트특수용접공, 현도사 31개	도장공(고소외벽), 도장공(철탑), 바닥미장공,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배전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시스템비계공, 용접공(상수도), 용접공(특수), 콘크리트커팅공, 철골공(경량) 등 13개	86개
광전자	6개	광통신설치사, H/W 설치사, CPU 시험사 등 3개	-	3개
문화재	11개	도편수, 한식목공조공, 한식와공조공 등 3개	목조각공(문화재), 한식석공 등 2개	10개
원자력	16개	상급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제관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등 4개	원자력중기운전원 1개	13개
기 타	8개	노즐공,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4개	-	4개
전 체	145개	45개	16개	116개

(3) 시중 노임단가 적용 방법 : 보정 지수 적용

개선 방안에 의하면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보정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 방식에서는 단순히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에 의하던 것을 개선 방안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기준단가 × (1 ± 숙련도별 보정 지수/100 ± 지역별 보정 지수/100)’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4) 단계별 접근 방안

1) 1단계 : 품셈의 변경 없이 조사방법의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

1단계는 품셈의 변경이 필요 없이 조사방법의 변경만으로도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들이다.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단계이다. 직종을 숙련도별로 세분—상급, 중급, 하급 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보정 지수 산정 단계이다. 숙련도별 보정 지수와 지역별 보정 지수를 산정한다. 셋째, 발표 단계이다. 직종별 기준임금(중급 기준)과 함께 보정 지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한다. 넷째, 활용 단계이다. 품셈 직종에 적용하는 활용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계상한다.

① 숙련도별 임금 조사 방법 예시

<표 4-14>와 같이 현재 숙련도별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활용하고 없는 경우에는 반장급과 조공급의 명칭을 세분하여 제시한다.

〈표 4-14〉 숙련도별 임금 조사 방법 예시

직종	숙련도별 세분	임금	근로시간	...
○○공	○○작업반장(팀장/도-기량 등)			
	○○공			
	○○조력공(조공)			
건설기계운전수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조수			
선원	고급선원			
	보통선원			
	선부			
한식목공	도편수			
	한식목공			
	한식목공조공			
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시공측량사	시공측량팀장(신설)			
	시공측량사			
	시공측량사조수			
품질관리사	시험관련기사			
	시험관련산업기사			
	시험관련기능사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조공(신설)			
조경공	조경작업반장(신설)			
	조경공			
	조립인부			
지적기술자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지적기능사			
통신관련기술자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능사			
원자력비파괴시험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중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신설)			
한식외공	한식외공팀장(신설)			
	한식외공			
	한식외공조공			

② 품셈 적용 시 활용 방법 안내

품셈의 직종명과 발표 직종명(중급 기준), 준용해야 할 다른 발표 직종명, 그리고 숙련별 보정 지수 적용 예 등을 수록하여 안내문을 작성한다. 물론, 지역별로는 당해 지역의 보정 지수를 활용하도록 한다.

〈표 4-15〉 품셈 적용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직종 활용 방법 예시 : 품셈 조정 불필요

품셈 직종	발표 직종 (중급 기준)	다른 발표 직종 준용	다른 발표 직종 × 숙련별 보정 지수
건설기계운전기사	건설기계운전수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운전수 × 상급숙련지수
건설기계운전조수			건설기계운전수 × 하급숙련지수
보통선원	선원		
고급선원			선원 × 상급숙련지수
선부			선원 × 하급숙련지수
고급원자력비파괴 시험공	원자력비파괴시험공		
특급원자력비파괴 시험공			원자력비파괴시험공 × 상급숙련지수
기계설치공	기계공		
도편수			한식목공 × 상급숙련지수
한식목공조공			한식목공 × 하급숙련지수
목도	인력운반공		
벽돌(블럭)제작공		조적공	
배전활선전공	무정전전공		
특수비계공	비계공		
중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상급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원자력기술자			원자력기술자 × 하급숙련지수
시공측량사조수			시공측량사 × 하급숙련지수
시험관련산업기사	품질관리사		
시험관련기사			품질관리사 × 상급숙련지수
시험관련기능사			품질관리사 × 하급숙련지수
원자력제관공		원자력배관공	
작업반장			각 발표 직종 × 상급숙련지수
조력공			각 발표 직종 × 하급숙련지수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공사기술자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조립인부			조경공 × 하급숙련지수
준설전기관장		준설전기관사	
줄눈공		조적공	

지적산업기사	지적기술자		
지적기사			지적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지적기능사			지적기술자 × 하급숙련지수
창호목공	창호공		
치장벽돌공		조적공	
통신관련산업기사	통신관련기술자		
통신관련기사			통신관련기술자 × 상급숙련지수
통신관련기능사			통신관련기술자 × 하급숙련지수
특수비계공		비계공	
포설공		포장공	
한식와공조공			한식와공 × 하급숙련지수
현도사		제도사	
H/W설치사		H/W시험사	
CPU시험사		S/W시험사	

2) 2단계 : 품셈의 변경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사항

2단계는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실태 조사에서 신설된 직종이 품셈에서도 신설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표 4-16〉 품셈에서 신설되어야 활용이 가능한 직종

현행 발표 직종	향후 발표 직종(중급 기준)	품셈에 신설해야 할 직종
도장공	도장공(일반)	좌동(숙련별 보정 지수 적용)
	도장공(고소외벽)	"
	도장공(철탑)	"
목조각공	목조각공(일반)	"
	목조각공(문화재)	"
〈신설〉	바닥미장공	"
〈신설〉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
저압케이블공	배전케이블공	"
고압케이블공		
특고압케이블공	송전케이블공	"
〈신설〉	시스템비계공	"
용접공(일반)	용접공(상수도)	"
	용접공(일반)	"
	용접공(특수)	"
〈신설〉	원자력중기운전원	"
철골공	철골공(중량)	"
	철골공(경량)	"
〈신설〉	콘크리트컷팅공	"
〈신설〉	한식석공	"
〈신설〉	현장시공기술자	"

(5) 기타 개선 방안

조사하기 어려운 직종에 대해서는 조사 시기를 특정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있다. 즉, 당해 직종이 포함되는 공사가 드물어 시기를 특정할 경우 조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임금 실태 조사의 목적은 당해 직종의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의 목표이므로 해당 조사 시점이 포함된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조사 대상 기간을 넓혀 줄 필요가 있다.

한편, 정보통신 현장의 경우 야간작업과 단시간에 종료되는 작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노임적용요령’에 명시해 달라는 요구도 있으므로 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4.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부수 조정 검토

조사기관별 공사금액 규모에 따른 공사 건수를 참조하여 설문지 배포 부수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1) 2007년 기준 조사기관별 공사 건수

<표 4-17>은 공사 건수가 많은 6개 기관의 자료를 종합하여 각 조사기관별로 공사금액 규모별 공사 건수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공사의 경우에는 타 조사기관의 원도급 공사와 중복될 수 있다.

<표 4-17>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조사기관의 공사금액 규모별 공사 건수

구 분		계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총계		1,647,966	1,462,829	124,937	50,230	4,424	3,119	2,129
종합공사	원도급	77,737	35,310	21,469	15,978	1,854	1,507	1,619
	계	545,602	457,998	63,961	20,628	1,551	1,101	363
전문공사	원도급	386,266	356,860	24,124	4,827	265	147	43
	하도급	159,336	101,138	39,837	15,801	1,286	954	320
설비공사	계	93,830	76,940	10,787	4,979	538	232	56
	원도급	66,287	59,827	4,829	1,477	90	49	15
전기공사	하도급	27,543	17,413	5,956	3,502	448	183	41
	계	661,102	638,028	17,310	5,240	293	173	58
정보통신공사	원도급	644,261	626,301	13,758	3,760	234	153	55
	하도급	16,841	11,727	3,552	1,480	59	20	3
정보통신공사	계	269,110	254,199	11,289	3,346	170	87	19
	원도급	253,632	241,870	8,849	2,706	131	61	15
	하도급	11,623	8,555	2,395	606	38	25	4
원자력	자기수요	3,855	3,774	45	34	1	1	-
원자력	원도급	585	354	121	59	18	19	14

자료 : 각 조사기관의 2007년도 신고실적 자료.

(2) 조사기관별 설문지 배포 조정 검토(안) : '원도급' 공사 기준

<표 4-18>은 타 조사기관의 공사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도급' 공사만을 별도로 정리하여 6개 조사기관의 '원도급' 공사 건수를 보여 주고 있다. 현행 설문지 배포 구성비는 30억원 이상 공사 건수의 구성비와 유사하다. 과거에는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큰 규모의 공사를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제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적 관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5억원 이상의 공사 건수를 기준으로 배포 구성비를 조정해 볼 수 있다.

<표 4-18> 조사기관의 공사금액 규모별 공사 건수 및 구성비 : '원도급' 공사 대상

공사 건수	계(건)	1억원 미만	1억~5억원 미만	5억~30억원 미만	30억~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100억원 이상
계(건)	1,428,768	1,320,522	73,150	28,807	2,592	1,936	1,761
종합공사	77,737	35,310	21,469	15,978	1,854	1,507	1,619
전문공사	386,266	356,860	24,124	4,827	265	147	43
설비공사	66,287	59,827	4,829	1,477	90	49	15
전기공사	644,261	626,301	13,758	3,760	234	153	55
정보통신공사	253,632	241,870	8,849	2,706	131	61	15
원자력	585	354	121	59	18	19	14
구성비(%)	전체(%)	모든 공사	1억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합공사	5.4	5.4	39.2	59.7	79.2	84.6	91.9
전문공사	27.0	27.0	27.2	15.1	7.2	5.1	2.4
설비공사	4.6	4.6	6.0	4.6	2.4	1.7	0.9
전기공사	45.1	45.1	16.6	12.0	7.0	5.6	3.1
정보통신공사	17.8	17.8	10.9	8.3	3.3	2.1	0.9
원자력	0.0	0.0	0.2	0.3	0.8	0.9	0.8

자료 : 각 조사기관의 2007년도 신고실적 자료.

한편, 5억원 이상의 원도급 공사건수를 기준으로 배포부수를 결정할 경우 갑작스러운 변화가 예상되므로 <표 4-19>에서 보듯이 2006년과 2007년 2년간 구성비의 평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산정된 주요 5개 공종의 구성비를 기준으로 최종적인 조사기관별 배포부수를 결정하고자 한다.

<표 4-19> 최근 2년간 5억원 이상 원도급 공사의 공사종류별 평균 구성비 산정

구분	2006년		2007년		평균 비율 (A+B)/2
	5억원 이상 건수	구성비(%)A	5억원 이상 건수	구성비(%)B	
계	43,174	100.0	34,986	100.0	100.0
종합공사	30,686	71.1	20,958	59.9	65.5
전문공사	5,275	12.2	5,282	15.1	13.7
설비공사	1,496	3.5	1,631	4.7	4.1
전기공사	3,795	8.8	4,202	12.0	10.4
정보통신공사	1,922	4.5	2,913	8.3	6.4

<표 4-20>은 임금 실태 조사를 수행하는 모든 협조기관별로 배분되는 설문조사 부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지적공사, 한전KPS(주), (주)포스텍 등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주요 5개 공종의 구성비는 약간씩 하락하게 된다. 그 외에 한 가지 더 고려된 사항은 전체 설문조사 부수를 1,700부에서 2,000부로 늘린 것이다. 현행 방식에 비해 중소규모 현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4-20> 조사기관별 설문조사표 배포 현황 및 조정(안)

기관명	현행(≒30억원 이상 건수 기준 배분)		5억원 이상 원도급 건수 기준 배분	
	배포 부수(부)	구성비(%)	배포 부수(부)	구성비(%)
합계	1,700	100.0	2,000	100.0
대한건설협회	1,280	75.3	1,250	62.5
대한전문건설협회	165	9.7	260	13.0
대한설비건설협회	40	2.4	100	5.0
한국전기공사협회	100	5.9	200	10.0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80	4.7	120	6.0
대한지적공사	20	1.2	30	1.5
한전KPS(주)	10	0.6	30	1.5
(주)포스텍	5	0.3	10	0.5

본 연구 결과 중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이 갖는 정책적 시사점을 언급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정리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1. 결론

본 연구는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을 위한 2차 연구로서 현장에서부터 떨어진 직종 및 임금 격차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즉, 건설현장에서 실제 투입되는 직종을 기준으로 본 조사에 포함된 직종과 품셈의 직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실제 지불임금과 조사 및 발표되는 임금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종에 대한 삭제 및 신설, 그리고 조정을 거친 결과 29개의 직종 수가 감소되어 현행 145개에서 116개로 조사 직종이 축소된다. 내역을 살펴보면 45개의 직종이 삭제되고, 16개의 직종은 신설되며, 26개의 직종은 정의 및 명칭 조정이 필요하다. 시중 노임단가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단위가 되는 공사종류별로는 현행 총 145개 직종(일반공사 104개, 광전자 6개, 문화재 11개, 원자력 16개, 기타 8개)이 총 116개 직종으로 변동되었다. 공사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사 86개($104-29+13=88$), 광전자 3개($6-3=3$), 문화재 10개($11-3+2=10$), 원자력 13개($16-4+1=14$), 기타 4개($8-4=4$) 등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숙련도와 지역에 따른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보정 지수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숙련도 보정 지수란 각 직종별로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숙련도간 임금 격차를 표준화한 지수를 의미한다. 예컨대, 각 직종의 기능공 임금을 기준으로 놓고 현행 작업반장 또는 조공의 임금은 기능공 임금에 해당 숙련도의 보정 지수를 적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지역별 보정 지수란 각 시기마다 조사된 자료를 활용하여 전국 평균임금을 100으로 하는 17개 지역의 보정 지수를 산정하여 시중 노임단가와 함께 공표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국

평균을 100으로 하므로 해당 지역의 보정 지수를 곱하여 당해 지역 해당 직종의 임금을 활용한다. 다만, 해당 지역에만 존재하는 특유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별 보정 지수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선 방안에 의하면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할 때 보정 지수를 활용해야 한다. 현행 방식에서는 단순히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 노임단가’에 의하던 것을 개선 방안에 의할 경우에는 ‘당해 직종의 노무량 × 당해 직종의 시중노임 기준단가 × (1 ± 숙련도별 보정 지수/100 ± 지역별 보정 지수/100)’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활용해야 한다.

임금 실태 조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품셈의 조정 필요 여하에 따라 단계적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먼저 1단계로서 품셈의 변경 없이 조사방법의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이다. 시행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단계이다. 직종을 숙련도별로 세분(상급, 중급, 하급 등)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둘째, 보정 지수 산정 단계이다. 숙련도별 보정 지수와 지역별 보정 지수를 산정한다. 셋째, 발표 단계이다. 직종별 기준임금(중급 기준)과 함께 보정 지수, 그리고 활용 방법에 대한 안내문을 발표한다. 넷째, 활용 단계이다. 품셈 직종에 적용하는 활용 방법에 따라 임금을 산정하여 계상한다. 다음으로는 2단계로서 품셈의 변경을 전제로 시행 가능한 사항이다. 2단계는 임금 실태 조사에서 신설된 직종이 품셈에서도 신설되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사항을 말한다.

끝으로 조사기관별로 설문지의 배포 부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현행 설문지 배포 구성비는 30억원 이상 공사 건수의 구성비와 유사한데 이는 과거에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감안해 큰 규모의 공사를 기준으로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제는 소규모 현장에 대한 기술적 관리 가능성이 높아졌으므로 5억원 이상의 공사 건수를 기준으로 배포 구성비를 조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부수를 현행 1,700부에서 2,000부로 늘리는 상황을 상정하여 각 조사기관별로 배포 부수를 조정하여 제안하였다. 제시되는 안에 의할 경우 현행 방식에 비해 중소규모 현장의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먼저 수주생산의 특성을 지니는 건설산업의 경우 발주금액의 기준이 되는 ‘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운다. 만일 구매자와

생산자가 신뢰할 만한 품셈과 시중 노임단가가 없다면 양자간의 ‘정보비대칭’(情報非對稱) 문제가 야기되고 이들의 생각이 크게 다를 경우에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시장실패’(市場失敗)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한편, ‘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가 현장에 비해 과다할 경우에는 공공공사에서 국민의 세금이 과다 지출될 수 있으며, 과소할 경우에는 생산요소에 지불할 비용이 부족해져 생산물의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주생산 방식 하에서는 비용에 대한 정보비대칭에 의한 시장실패를 막고 세금의 낭비와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양자 모두가 수공할 수 있을 만한 적절한 비용 산정의 기준이 필요하다. 면담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 중 특히, 임금 수준 격차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 요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중 노임단가가 지니는 중요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임금 실태 조사 직종 및 임금의 적정성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설현장의 공법과 자재, 그리고 공정관리 기법 등은 항상 변화하므로 과거에 현장과 부합하던 기준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현장으로부터 괴리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품셈 및 시중 노임단가의 조사에 관한 주기적인 경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포함된 직종 및 임금의 적정성에 대해 적어도 매 5년마다 신설 및 삭제하는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작업은 단지 임금 실태 조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수급 조사를 겸하여 전수조사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셋째, 현장에서 고의로 임금을 낮추어 적거나 또는 저가낙찰로 인해 불가피하게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임금 실태 조사에 낮은 임금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결국 발주금액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을 일깨운다. 예컨대,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근로자에 대해 갑근세 공제점인 8만원 미만으로 일일임금을 낮추어 적거나 최저가낙찰제 등의 시행으로 노무비 삭감이 과도해 저숙련인력에게 저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경우 이러한 저임금들이 임금 실태 조사에 기재되고 이것이 발주금액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주금액에 적정 노무비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3.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를 통해 공표되는 시중노임의 '객관성'과 '현실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실태분석을 통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장의 임금이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였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통해 현장의 임금을 발주금액에 반영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발주금액과 낙찰금액의 연쇄적 하락 현상(발주금액에 낙찰률 곱한 낙찰금액 하락 ⇒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실적공사비 확대 및 임금조사에 의한 시중 노임단가 하락 ⇒ 이를 기준한 발주금액 하락 ...)을 막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본 연구를 통해서 현장의 임금이 임금 실태 조사에 반영되도록 개선은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노무비가 하락을 근본적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무비는 본 연구의 대상인 시중 노임단가와 품셈에 의한 노무량이 곱해져 결정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노무량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은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신설 직종에 대해서도 품셈의 직종이 신설되지 않는 한 활용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가 내재된 한계를 넘어 실제로 현장에서 지불하는 임금을 반영하는 한편, 현장의 노무비 확보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품셈의 직종 신설 및 조정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품셈에서도 숙련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 전산망을 통한 조사의 활성화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해 깊이 다루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조사과일이 원수급자에게 전달되나 이를 실제 작성하는 당사자는 하수급자의 직원이다. 따라서 서면에 작성된 하수급자의 수기자료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인터넷 조사의 이용이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보다 편리한 전산조사방법을 강구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도 직종별 또는 숙련수준별로 전체 건설기능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기초 자료의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향후 정기적인 직종 조사 및 개선 작업을 정규 과제로 추진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매 5년마다의 대규모 조사를 통해 직종 및 임금의 대표성과 현장성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하겠다.

아무썸록 본 연구가 건설현장의 실제 투입 직종 및 임금 수준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데 기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참고 문헌

-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사표준품셈, 2008
- 대한건설협회,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보고서, 각 연도
- 대한건설협회, 시중 노임단가 원자료, 2007. 9
- 대한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표준품셈, 2008
- 문화재청, 문화재표준품셈, 2008
- 통계청, 건설업통계조사, 2006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현장 임금 반영)을 위한 설문조사, 2008. 7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공사표준품셈, 2008
- 면담조사 7곳 : 전문건설공사현장 2곳, 전기공사현장 2곳, 정보통신공사 1곳, 원자력공사 1곳, 문화재공사현장 1곳
- 심규범·김지혜(2003),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bstract

Some improvement schemes for 「An inquiry on construction workers' wages」 (II)

This study focused on the discordance of occupation and wage between the actual construction site and the inquiry. So, we compared the actual occupation on site with that on inquiry and tried to adjust the difference on the basis of site rationally. In addition, we tried to seek how to set the wage difference between the site and the inquiry. The main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we eliminated or established newly various occupations on the basis of the site. As the result, 29 occupations are decreased, so, total number of the inquiry occupations becomes 116 from 145. Details are that 45 are deleted, 16 are created, and 26 are changed their names or definitions.

Second, we suggested that a revision wage index be introduced as the method to minimize the wage difference according to a skill degree and a region. A skill wage index means the standard index in order to reflect different wages according to a skill degree on the orderer's prime cost. For example, setting up the skilled worker's wage of individual occupation as the basis, we can calculate the foreman's wage or the half-skilled worker's wage of the occupation by using the skill wage index. And, a regional wage index means the standard index in order to reflect different wages according to a region on the orderer's prime cost. Using the inquiry data, the inquiry agency make the regional wage index of 17 regions and report them. Then the orderer can calculate their own region's wage by using the regional wage index. But, if some occupations are unique to their region, they should be allowed not to be applicable to the index. Therefore, according to these indexes, the wage in the orderer's prime cost should be calculated as followed; reported wage \times (1 \pm the skill wage index/100 \pm the regional wage index/100).

In order to realize our improvement schemes, two steps are needed. The first step is possible through just improvement of this inquiry without other condition's changes. 1) At the survey stage, a occupation should be separate into three; high degree, middle degree, low degree. 2) After survey, the inquiry agency make the skill wage index and the regional wage index. 3) At the wage report stage, the inquiry agency report the individual wages with these indexes and the index manual. 4) At the use stage, the orderers apply wage to their prime production cost by calculating with these indexes.

The second step is possible with other condition's changes. That is, in other data newly created occupations in inquiry should be established newly also.

부 록

<부표 차례>

<부표 1>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105
<부표 2>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 지역별, 발주자별(2)	107
<부표 3>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108
<부표 4>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현장지역별, 발주자별(2)	110
<부표 5>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111
<부표 6 >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현장지역별, 발주자별(2)	113
<부표 7>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1)	114
<부표 8>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2)	116
<부표 9>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3)	118
<부표 10>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4)	120
<부표 11>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1)	122
<부표 12>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기능공)(2)	123
<부표 13>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조공)(3)	124
<부표 14>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4)	124
<부표 15>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기능공)(5)	125
<부표 16>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조공)(6)	126
<부표 17>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7)	126
<부표 18>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기능공)(8)	127
<부표 19>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조공)(9)	127
<부표 20>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10)	128
<부표 21>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기능공)(11)	129
<부표 22>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조공)(12)	129
<부표 23>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 공사종류별(1)	130
<부표 24>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1
<부표 25>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	131
<부표 26> 신설해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1)	132

<부표 27> 신설해야 할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3
<부표 28>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 : 공사종류별(1)	134
<부표 29>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5
<부표 30>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공사종류별(1)	135
<부표 31>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6
<부표 32>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공사종류별(1)	136
<부표 33>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7
<부표 34>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1)	137
<부표 35>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 총공사금액별(2)	138

〈부표 1〉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구 분	계 (%)	현장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횟수도 적당함	현장임금은 잘 반영하고 있으나, 발표횟수를 늘려야 함	발표횟수는 적정하나, 현장임금을 반영하는 데 미흡함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함
전체(%)	100.0	22.9	4.4	66.5	6.3
공장	100.0	100.0	-	-	-
관공서건물	100.0	-	-	100.0	-
교회, 사찰등 종교건물	100.0	50.0	-	50.0	-
기계기구설치	100.0	-	50.0	50.0	-
기타건축	100.0	56.3	-	43.8	-
기타설비공사	100.0	20.0	-	80.0	-
기타토목시설	100.0	28.6	-	71.4	-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100.0	33.3	33.3	33.3	-
농지정리	100.0	100.0	-	-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00.0	-	-	100.0	-
댐	100.0	-	-	100.0	-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100.0	21.4	7.1	57.1	14.3
문화재 및 유적건물	100.0	-	-	100.0	-
발전소시설	100.0	-	-	100.0	-
병원	100.0	-	-	100.0	-
사무실·상업용 건물	100.0	16.7	-	66.7	16.7
상하수도	100.0	18.8	12.5	62.5	6.3
아파트	100.0	22.9	-	68.6	8.6
전기공사	100.0	15.9	10.1	69.6	4.3
전문건설공사	100.0	15.6	-	66.7	17.8
정보통신공사	100.0	66.7	-	33.3	-
조경	100.0	-	11.1	88.9	-
창고 및 차고	100.0	100.0	-	-	-
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100.0	-	-	75.0	25.0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100.0	60.0	-	40.0	-
택지조성	100.0	100.0	-	-	-
포장	100.0	33.3	33.3	-	33.3
학교	100.0	63.6	-	36.4	-
항만	100.0	50.0	-	50.0	-
호텔·숙박시설	100.0	-	-	100.0	-

공사종류

총 공 사 금 액	전체(%)	100.0	23.5	4.6	65.4	6.5
	5억원 미만	100.0	21.1	1.8	66.7	10.5
	5억원 ~ 10억원 미만	100.0	23.5	2.9	64.7	8.8
	10억원 ~ 50억원 미만	100.0	21.2	7.1	67.3	4.4
	50억원 ~ 100억 원 미만	100.0	27.0	5.4	62.2	5.4
	100억원 ~ 300억 원 미만	100.0	19.2	1.9	73.1	5.8
	300억원 ~ 500억 원 미만	100.0	37.5	-	50.0	12.5
	500억원 ~ 1,000 억원 미만	100.0	46.7	6.7	46.7	-
	1,000억원 이상	100.0	25.0	12.5	50.0	1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한 생각 : 지역별, 발주자별(2)

구분	계 (%)	현장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횟수도 적당함	현장임금은 잘 반영하고 있으나, 발표횟수를 늘려야 함	발표횟수는 적정하나, 현장임금을 반영하는 데 미흡함	현장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횟수도 부족함	
현 장 지 역	전체(%)	100.0	23.3	4.6	65.3	6.7
	서울	100.0	12.0	4.0	76.0	8.0
	인천	100.0	25.0	-	65.0	10.0
	경기도	100.0	23.3	4.7	69.8	2.3
	강원도	100.0	12.5	12.5	66.7	8.3
	충청남도	100.0	25.0	-	65.0	10.0
	대전	100.0	25.0	12.5	62.5	-
	충청북도	100.0	33.3	11.1	50.0	5.6
	부산	100.0	41.7	-	58.3	-
	울산	100.0	14.3	-	78.6	7.1
	대구	100.0	9.1	-	63.6	27.3
	경상북도	100.0	23.8	4.8	71.4	-
	경상남도	100.0	26.9	3.8	61.5	7.7
	전라남도	100.0	22.2	-	61.1	16.7
	광주	100.0	28.6	7.1	57.1	7.1
	전라북도	100.0	15.4	15.4	69.2	-
	제주도	100.0	50.0	-	50.0	-
	전국	100.0	75.0	-	25.0	-
발 주 자	전체(%)	100.0	23.3	4.5	65.5	6.7
	정부	100.0	16.2	5.4	64.9	13.5
	지방자치단체	100.0	21.2	5.9	64.7	8.2
	국영기업체	100.0	18.1	3.6	73.5	4.8
	공공단체	100.0	5.9	17.6	76.5	-
	민간	100.0	33.0	2.1	58.8	6.2
기타	100.0	45.5	-	54.5	-	

주 : 지역 중 전국이란 전국에 현장이 산재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구분	계 (%)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임금 수준은 적정하나 직종 수는 차이가 있음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음
전체(%)	100.0	14.1	70.5	3.4	11.9
공장	100.0	100.0	-	-	-
관공서건물	100.0	-	100.0	-	-
교회, 사찰 등 종교건물	100.0	50.0	50.0	-	-
기계기구설치	100.0	-	100.0	-	-
기타건축	100.0	25.0	56.3	12.5	6.3
기타설비공사	100.0	20.0	60.0	-	20.0
기타토목시설	100.0	28.6	71.4	-	-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100.0	-	100.0	-	-
농지정리	100.0	50.0	50.0	-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00.0	-	100.0	-	-
댐	100.0	-	100.0	-	-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100.0	14.3	78.6	7.1	-
문화재 및 유적건물	100.0	-	100.0	-	-
발전소시설	100.0	-	100.0	-	-
병원	100.0	-	100.0	-	-
사무실·상업용 건물	100.0	-	83.3	-	16.7
상하수도	100.0	6.3	81.3	-	12.5
아파트	100.0	14.3	65.7	2.9	17.1
전기공사	100.0	8.7	73.9	5.8	11.6
전문건설공사	100.0	8.9	62.2	2.2	26.7
정보통신공사	100.0	75.0	16.7	-	8.3
조경	100.0	-	44.4	-	55.6
창고 및 차고	100.0	100.0	-	-	-
철도·철도터널 및 지하철	100.0	25.0	75.0	-	-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100.0	40.0	60.0	-	-
택지조성	100.0	-	-	100.0	-
포장	100.0	33.3	33.3	-	33.3
학교	100.0	18.2	81.8	-	-
항만	100.0	50.0	50.0	-	-
호텔·숙박시설	100.0	-	100.0	-	-

총공사금액	전체(%)	100.0	14.8	69.5	3.4	12.3
	5억원 미만	100.0	14.0	64.9	5.3	15.8
	5억원 ~ 10억원 미만	100.0	14.7	61.8	-	23.5
	10억원 ~ 50억원 미만	100.0	14.9	68.4	4.4	12.3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0.0	10.8	75.7	2.7	10.8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00.0	13.5	76.9	1.9	7.7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00.0	25.0	62.5	-	12.5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0	26.7	66.7	6.7	-
	1,000억원 이상	100.0	12.5	87.5	-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4〉 직종과 임금 수준 반영 여부 : 현장지역별, 발주자별(2)

구 분	계 (%)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음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음	임금 수준은 적정하나 직종 수는 차이가 있음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음	
현 장 지 역	전체(%)	100.0	14.7	70.3	3.1	11.9
	서울	100.0	7.8	72.5	3.9	15.7
	인천	100.0	25.0	60.0	-	15.0
	경기	100.0	16.3	58.1	4.7	20.9
	강원	100.0	4.2	91.7	4.2	-
	충남	100.0	10.0	85.0	-	5.0
	대전	100.0	12.5	75.0	-	12.5
	충북	100.0	16.7	66.7	11.1	5.6
	부산	100.0	16.7	58.3	8.3	16.7
	울산	100.0	14.3	85.7	-	-
	대구	100.0	9.1	54.5	-	36.4
	경북	100.0	19.0	66.7	4.8	9.5
	경남	100.0	11.5	88.5	-	-
	전남	100.0	16.7	77.8	-	5.6
	광주	100.0	-	78.6	-	21.4
	전북	100.0	15.4	46.2	7.7	30.8
	제주	100.0	50.0	50.0	-	-
	전국	100.0	62.5	37.5	-	-
	발 주 자	전체(%)	100.0	14.5	69.8	3.3
정부		100.0	16.2	67.6	-	16.2
지방자치단체		100.0	12.9	71.8	3.5	11.8
국영기업체		100.0	10.8	78.3	2.4	8.4
공공단체		100.0	-	70.6	5.9	23.5
민간		100.0	18.4	62.2	5.1	14.3
기타	100.0	36.4	63.6	-	-	

주 : 지역 중 전국이란 전국에 현장이 산재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5〉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1)

구분	계 (%)	숙련도 별 임금차 이 미반영	공종별 임금차 이 미반영	지역별 임금차 이 미반영	공사규모 별 임금차 이 미반영	계절적, 공사시기 별 임금차 이 미반영	소득공제 선인 8만원 이하로 낮추기 때문	외국인 력 임금이 포함되 었기 때문	기 타
전체(%)	100.0	33.8	18.0	18.2	3.9	1.7	16.0	1.2	7.2
공장	100.0	50.0	50.0	-	-	-	-	-	-
관공서건물	100.0	16.7	-	33.3	16.7	-	33.3	-	-
교회, 사찰 등 종교건물	100.0	50.0	-	25.0	-	-	25.0	-	-
기계기구설치	100.0	50.0	-	50.0	-	-	-	-	-
기타건축	100.0	35.5	19.4	22.6	3.2	-	12.9	3.2	3.2
기타설비공사	100.0	50.0	10.0	40.0	-	-	-	-	-
기타토목시설	100.0	38.5	7.7	23.1	-	7.7	23.1	-	-
농림·수산 및 관개수로	100.0	60.0	-	40.0	-	-	-	-	-
농지정리	100.0	50.0	25.0	-	-	-	25.0	-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	100.0	33.3	-	-	-	-	50.0	16.7	-
댐	100.0	50.0	-	-	50.0	-	-	-	-
도로·교량 및 도로터널	100.0	40.7	11.1	29.6	-	-	18.5	-	-
문화재 및 유적건물	100.0	25.0	-	50.0	-	-	25.0	-	-
발전소시설	100.0	-	50.0	-	-	-	-	-	50.0
병원	100.0	100.0	-	-	-	-	-	-	-
사무실·상업 용건물	100.0	41.7	-	33.3	8.3	-	16.7	-	-
상하수도	100.0	39.3	3.6	17.9	3.6	7.1	28.6	-	-
아파트	100.0	34.3	10.4	19.4	9.0	-	20.9	1.5	4.5
전기공사	100.0	35.0	24.4	13.0	3.3	3.3	20.3	0.8	-
전문건설공사	100.0	40.2	15.9	20.7	2.4	1.2	14.6	2.4	2.4
정보통신공사	100.0	50.0	18.2	13.6	4.5	-	9.1	-	4.5
조경	100.0	33.3	5.6	16.7	5.6	11.1	22.2	5.6	-
창고 및 차고	100.0	50.0	-	50.0	-	-	-	-	-
철도·철도터 널 및 지하철	100.0	50.0	12.5	37.5	-	-	-	-	-
치산·치수 및 사방하천	100.0	55.6	-	33.3	-	-	11.1	-	-
택지조성	100.0	-	-	50.0	50.0	-	-	-	-
포장	100.0	60.0	-	40.0	-	-	-	-	-
학교	100.0	33.3	5.6	22.2	11.1	-	27.8	-	-

공사
종류

	항만	100.0	33.3	-	33.3	-	-	33.3	-	-
	호텔·숙박시설	100.0	50.0	-	-	-	-	50.0	-	-
총 공사 금액	전체(%)	100.0	33.8	18.3	18.3	4.0	1.7	15.8	1.2	6.9
	5억원 미만	100.0	34.6	15.9	16.8	6.5	0.9	24.3	0.9	-
	5억원 ~ 10억원 미만	100.0	35.5	16.1	12.9	3.2	3.2	21.0	4.8	3.2
	10억원 ~ 50억원 미만	100.0	34.4	19.6	17.2	3.8	1.9	15.3	0.5	7.2
	50억원 ~ 100억원 미만	100.0	33.8	16.2	20.6	2.9	2.9	11.8	-	11.8
	100억원 ~ 300억원 미만	100.0	26.0	25.0	16.0	2.0	1.0	13.0	-	17.0
	300억원 ~ 500억원 미만	100.0	46.7	13.3	33.3	-	-	6.7	-	-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100.0	37.9	17.2	27.6	10.3	-	6.9	-	-
	1,000억원 이상	100.0	43.8	-	37.5	-	-	6.3	12.5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6〉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 차이 발생 원인 :
현장지역별, 발주자별(2)

구분	계 (%)	숙련도 별 임금차 미반영	공종별 임금차 미반영	지역별 임금차 미반영	공사규모 별 임금차 미반영	계절적, 공사시기 별 임금차 미반영	소득공제 선인 8만원 이하로 낮추기 때문	외국인 력 임금이 포함되 었기 때문	기 타	
현 장 지 역	전체(%)	100.0	34.4	18.3	17.9	3.9	1.5	15.6	1.2	7.2
	서울	100.0	36.2	11.7	20.2	4.3	-	22.3	1.1	4.3
	인천	100.0	41.7	13.9	19.4	-	-	13.9	2.8	8.3
	경기도	100.0	39.5	12.3	16.0	4.9	-	17.3	3.7	6.2
	강원도	100.0	23.8	26.2	14.3	-	2.4	21.4	-	11.9
	충청남도	100.0	28.9	21.1	18.4	5.3	-	15.8	-	10.5
	대전	100.0	37.5	6.3	25.0	12.5	-	18.8	-	-
	충청북도	100.0	34.3	11.4	34.3	5.7	2.9	11.4	-	-
	부산	100.0	33.3	25.0	16.7	8.3	-	4.2	-	12.5
	울산	100.0	32.0	20.0	16.0	-	4.0	16.0	-	12.0
	대구	100.0	35.0	35.0	10.0	-	-	20.0	-	-
	경상북도	100.0	27.0	24.3	10.8	5.4	5.4	13.5	-	13.5
	경상남도	100.0	32.7	22.4	8.2	4.1	4.1	20.4	2.0	6.1
	전라남도	100.0	35.3	29.4	8.8	-	-	8.8	-	17.6
	광주	100.0	36.0	16.0	20.0	8.0	-	20.0	-	-
	전라북도	100.0	25.0	16.7	25.0	8.3	8.3	4.2	4.2	8.3
	제주도	100.0	41.7	16.7	33.3	-	-	-	-	8.3
전국	100.0	50.0	18.8	31.3	-	-	-	-	-	
발 주 자	전체(%)	100.0	34.3	17.9	18.2	3.9	1.6	15.9	1.1	7.1
	정부	100.0	34.8	9.1	22.7	6.1	3.0	21.2	1.5	1.5
	지방자치단체	100.0	37.5	8.8	24.4	5.6	2.5	20.6	-	0.6
	국영기업체	100.0	22.4	32.7	10.9	-	1.9	8.3	-	23.7
	공공단체	100.0	34.4	18.8	18.8	6.3	3.1	15.6	3.1	-
	민간	100.0	41.4	15.5	16.0	5.0	-	17.7	2.2	2.2
기타	100.0	33.3	23.8	28.6	-	-	4.8	4.8	4.8	

주 : 지역 중 전국이란 전국에 현장이 산재함을 의미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7〉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1)

직종	숙련수준	시중 노임단가 (만원)	일급 (만원)	근로시간 (시간)	투입인원 수 (명)	응답수	구성비 (%)
계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0 (단순평균)	15.0	8.8	5	343	100.0
	기능공(준기량/직원)		12.8	8.8	31	393	100.0
	조공		9.6	8.7	10	180	100.0
깁부	팀장(반장/기량/간부/도~)	6.4	11.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8.0	9.0	-	1	0.3
	조공		-	-	-	-	-
건설기계 운전기사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0	10.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7.0	9.0	-	1	0.3
	조공		-	-	-	-	-
건축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4	14.0	9.0	1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1.5	9.0	5	2	0.5
	조공		9.5	9.0	-	2	1.1
건축목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2	14.1	9.0	-	13	3.8
	기능공(준기량/직원)		11.8	9.0	24	14	3.69
	조공		9.0	9.1	8	9	5.0
고급원자 력비파괴 시험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5.1	16.6	8.0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4.4	8.0	6	10	2.5
	조공		-	-	-	-	-
기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7.9	13.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	-	-	-	-
	조공		9.0	9.0	-	1	0.6
기계설치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5	15.0	8.0	2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1.0	8.0	6	1	0.3
	조공		-	-	-	-	-
계장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7	12.0	8.0	2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1.0	-	4	1	0.3
	조공		10.0	8.0	8	1	0.6
내선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1	12.4	8.3	5	31	9.0
	기능공(준기량/직원)		10.7	8.4	7	30	7.6
	조공		8.9	8.2	6	19	10.6
내장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6	16.3	8.6	7	9	2.6
	기능공(준기량/직원)		12.1	8.6	18	8	2.0
	조공		8.4	8.6	25	7	3.9
닥트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7	11.7	9.0	1	3	0.9
	기능공(준기량/직원)		9.8	9.0	11	3	0.8
	조공		8.3	9.0	-	3	1.7
도배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7.9	-	-	-	-	-
	기능공(준기량/직원)		13.0	8.0	-	1	0.3
	조공		10.0	8.0	-	1	0.6
도장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1	17.0	8.3	2	10	2.9

	기능공(준기량/직원)		16.6	8.3	8	8	2.0
	조 공		10.9	8.4	9	7	3.9
목조각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8	20.0	9.0	1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2.5	9.0	3	2	0.5
	조 공		-	-	-	-	-
무선안테 나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3	15.0	8.0	4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3.0	8.0	4	1	0.3
	조 공		10.0	8.0	3	1	0.6
미장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3	13.8	9.3	6	13	3.8
	기능공(준기량/직원)		11.9	9.1	7	13	3.3
	조 공		8.8	9.0	1	10	5.6
방수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7.7	13.3	8.8	18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11.0	8.8	15	7	1.8
	조 공		8.8	8.8	-	4	2.2

주 : 시중 노임단가는 2008. 9. 1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만원단위로 환산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8〉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2)

직종	숙련수준	시중 노임단가 (만원)	일급 (만원)	근로시간 (시간)	투입인원 수 (명)	응답수	구성비 (%)
배관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7	12.0	9.1	4	11	3.2
	기능공(준기량/직원)		10.0	9.1	22	11	2.8
	조공		8.4	9.1	14	9	5.0
배관공 (수도)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7	15.8	9.3	12	6	1.7
	기능공(준기량/직원)		13.1	9.0	26	10	2.5
	조공		10.8	9.0	11	5	2.8
배전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8.4	27.0	8.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21.8	8.0	5	5	1.3
	조공		11.0	8.0	-	2	1.1
배전활선 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28.1	-	-	-	-	-
	기능공(준기량/직원)		26.5	8	4	2	0.5
	조공		-	-	-	-	-
변전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2.9	20.0	9.0	4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3.0	9.0	2	1	0.3
	조공		9.0	9.0	4	1	0.6
보온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5	11.0	-	-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0.0	9.0	-	4	1.0
	조공		9.0	-	-	1	0.6
보통인부	팀장(반장/기량/간부/도~)	6.4	8.7	8.3	1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8.3	8.3	6	6	1.5
	조공		7.6	8.7	42	8	4.4
비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5	17.2	8.3	2	10	2.9
	기능공(준기량/직원)		14.1	9.0	8	14	3.6
	조공		12.3	9.0	5	3	1.7
벌목부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8	-	-	-	-	-
	기능공(준기량/직원)		15.0	8.0	5	1	0.3
	조공		-	-	-	-	-
샷시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0	12.5	9.0	22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0.5	9.0	9	2	0.5
	조공		9.0	9.0	-	1	0.6
석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7	20.3	8.7	10	11	3.2
	기능공(준기량/직원)		14.0	8.9	43	11	2.8
	조공		10.3	8.6	3	8	4.4
용접공 (일반)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2	15.1	8.8	10	8	2.3
	기능공(준기량/직원)		14.6	8.9	54	8	2.0
	조공		11.6	9.0	4	5	2.8
송전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28.4	30.0	8.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27.5	8.0	10	2	0.5
	조공		19.0	8.0	-	1	0.6

시험관련 기사	팀장(반장/기량/간부/도~)	6.9	-	-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4.6	8.0	2	1	0.3
	조공		-	-	-	-	-
원자력플 랜트전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4.0	17.2	8.0	3	10	2.9
	기능공(준기량/직원)		13.6	8.0	26	10	2.5
	조공		-	-	-	-	-
원자력기 계설치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4.3	17.5	8.0	7	10	2.9
	기능공(준기량/직원)		13.9	8.0	66	10	2.5
	조공		-	-	-	-	-
위생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3	12.0	8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0.8	8.5	-	2	0.5
	조공		-	-	-	-	-

주 : 시중 노임단가는 2008. 9. 1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만원단위로 환산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9〉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3)

직종	숙련수준	시중 노임단가 (만원)	일급 (만원)	근로시간 (시간)	투입인원수 (명)	응답수	구성비 (%)
작업반장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5	14.0	8.0	2	3	0.9
	기능공(준기량/직원)		13.5	9.0	2	2	0.5
	조 공		8.0	8.0	6	1	0.6
잠수부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3.0	32.5	5.8	2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25.0	8.7	12	4	1.0
	조 공		15.0	3.5	1	1	0.6
전기공사 기사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5.5	21.3	8.3	4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15.3	8.3	7	3	0.8
	조 공		9.5	8.5	9	2	1.1
전기공사 산업기사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4.2	12.0	8.0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0.0	8.0	1	1	0.3
	조 공		-	-	-	-	-
조경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1	13.3	8.8	11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9.6	8.8	46	5	1.3
	조 공		7.8	8.8	4	4	2.2
조적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2	16.3	8.3	7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13.1	8.4	22	5	1.3
	조 공		9.7	8.7	16	3	1.7
절단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0	-	-	-	-	-
	기능공(준기량/직원)		18.0	8.0	2	2	0.5
	조 공		-	-	-	-	-
지붕잇기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8	20.0	8.0	-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4.0	8.0	-	2	0.5
	조 공		-	-	-	-	-
창호목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2	21.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8.0	9.0	-	1	0.3
	조 공		13.0	9.0	-	1	0.6
철골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5	15.0	8.7	1	3	0.9
	기능공(준기량/직원)		13.3	8.7	7	4	1.0
	조 공		9.9	8.7	3	3	1.7
철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8	-	-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2.0	9.0	-	1	0.3
	조 공		8.0	9.0	-	1	0.6
철근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6	15.0	9.0	4	31	9.0
	기능공(준기량/직원)		12.7	9.0	74	33	8.4
	조 공		10.2	8.9	5	15	8.3
철도신호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3.0	16.0	8.0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4.0	8.0	4	1	0.3
	조 공		12.5	8.0	12	1	0.6
코킹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7	20.0	8.0	3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5.0	8.0	3	1	0.3
	조 공		9.0	8.0	7	1	0.6
콘크리트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0	13.3	9.1	6	10	2.9
	기능공(준기량/직원)		11.6	9.1	18	12	3.1
	조 공		9.5	8.7	1	4	2.2
타일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8	15.0	8.8	1	4	1.2
	기능공(준기량/직원)		13.0	8.5	5	4	1.0
	조 공		8.2	8.6	3	5	2.8
통신내선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1	11.7	8.0	2	3	0.9
	기능공(준기량/직원)		10.0	8.0	2	3	0.8
	조 공		-	-	-	-	-

주 : 시중 노임단가는 2008. 9. 1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만원단위로 환산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0>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4)

직종	숙련수준	시중 노임단가 (만원)	일급 (만원)	근로시간 (시간)	투입인원 수 (명)	응답수	구성비 (%)
통신외선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3.1	15.0	8.0	3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2.5	8.0	14	2	0.5
	조 공		9.0	8.0	2	1	0.6
통신케이 블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4.7	16.0	8.0	2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4.0	8.0	2	2	0.5
	조 공		-	-	-	-	-
특별인부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2	8.0	9.0	42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7.5	9.0	40	1	0.3
	조 공		-	-	-	-	-
화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9	20.0	10.0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3.0	10.0	7	1	0.3
	조 공		7.0	10.0	3	1	0.6
포장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6	14.5	8.5	59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9.5	8.5	26	2	0.5
	조 공		-	-	-	-	-
플랜트기 계설치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5	16.1	8.0	4	24	7.0
	기능공(준기량/직원)		13.1	8.0	27	26	6.6
	조 공		-	-	-	-	-
플랜트배 관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2.5	18.0	8.0	8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5.0	8.5	7	2	0.5
	조 공		12.0	8.0	10	1	0.6
플랜트용 접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3.1	18.0	8.0	8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6.5	8.5	7	2	0.5
	조 공		12.0	8.0	10	1	0.6
플랜트전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0.2	15.3	8.0	3	24	7.0
	기능공(준기량/직원)		12.7	8.0	16	26	6.6
	조 공		-	-	-	-	-
플랜트체 관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2	18.0	8.0	4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5.0	8.0	2	1	0.3
	조 공		12.0	8.0	2	1	0.6
한식목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2.0	21.5	8.5	1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6.5	8.5	6	2	0.5
	조 공		12.0	8.5	2	2	1.1
한식미장 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1.7	17.0	9.0	1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5.0	9.0	1	1	0.3
	조 공		10.0	9.0	1	1	0.6
한식와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16.3	30.0	9.0	2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25.0	9.0	6	2	0.5
	조 공		13.5	9.0	5	2	1.1
할석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4	10.5	9.0	-	2	0.6
	기능공(준기량/직원)		10.5	9.5	10	3	0.8
	조 공		8.0	9.0	-	1	0.6

함석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1	10.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9.3	9.0	-	1	0.3
	조공		-	-	-	-	-
형틀목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9.8	15.1	9.1	4	28	8.2
	기능공(준기량/직원)		12.0	9.1	113	31	7.9
	조공		9.1	9.2	14	18	10.0
화약취급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8.9	18.0	9.0	-	1	0.3
	기능공(준기량/직원)		10.0	9.0	-	1	0.3
	조공		-	-	-	-	-

주 : 시중 노임단가는 2008. 9. 1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만원단위로 환산함.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1〉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1)

구 분	계 (%)	기계 기구설치	기타 건축	기타 토목 시설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발전소 시설	상 하수도	아파트	전기 공사	전문 건설 공사	기타
전체(%)	100.0	2.7	6.3	2.7	3.6	20.8	3.3	17.2	13.3	13.3	16.6
건축목공	100.0		7.7	23.1	15.4			30.8		15.4	7.7
내선전공	100.0							3.2	96.8		
도장공	100.0	10.0						40.0	20.0	20.0	10.0
미장공	100.0	7.7	15.4					30.8		23.1	23.1
배관공	100.0		10.0				10.0	30.0			50.0
비계공	100.0	10.0			10.0			20.0		60.0	
원자력기계 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100.0					
철근공	100.0	3.3	6.7	6.7	10.0		3.3	33.3		13.3	23.3
콘크리트공	100.0	10.0	10.0					30.0		30.0	20.0
플랜트기계 설치공	100.0					100.0					
플랜트전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3.7	14.8		11.1		7.4	37.0		14.8	11.1
기타	100.0	2.8	9.2	3.7	2.8	0.9	6.4	14.7	11.0	18.3	30.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2〉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기능공)(2)

구분	계 (%)	기타건축	도로, 교량, 도로터널	발전소 시설	상하수도	아파트	전기공사	전문건설 공사	기타
전체(%)	100.0	5.1	5.3	22.1	3.5	14.9	12.8	14.7	21.6
건축목공	100.0	7.1	14.3			28.6		14.3	35.7
고급원자력비 파괴시험공	100.0			100.0					
내선전공	100.0					3.3	96.7		
미장공	100.0	8.3	8.3			33.3		33.3	16.7
배관공	100.0	10.0			10.0	30.0			50.0
배관공(수도)	100.0				70.0			30.0	
비계공	100.0		14.3			28.6		50.0	7.1
석공	100.0	10.0	10.0					20.0	60.0
원자력기계 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100.0					
철근공	100.0	6.3	12.5		3.1	31.3		12.5	34.4
콘크리트공	100.0	8.3	16.7			25.0		25.0	25.0
플랜트기계 설치공	100.0			100.0					
플랜트전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10.0	16.7		10.0	33.3		13.3	16.7
기타	100.0	7.6	2.5	0.8	0.8	14.3	16.0	21.8	36.1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3〉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공사종류별, 숙련도(조공)(3)

구 분	계 (%)	기계 기구 설치	기타건축	기타 토목 시설	사무실, 상업용 건물	상하수도	아파트	전기 공사	전문건설공사	기타
전체(%)	100.0	4.7	5.8	4.1	4.1	5.8	19.9	17.0	16.4	22.2
건축목공	100.0		11.1	33.3			33.3		22.2	
내선전공	100.0							100.0		
내장공	100.0	14.3		14.3			14.3		42.9	14.3
미장공	100.0	11.1	11.1				44.4		11.1	22.2
배관공	100.0		12.5		25.0	12.5	25.0			25.0
보통인부	100.0	12.5					12.5	12.5	12.5	50.0
석공	100.0								14.3	85.7
철근공	100.0	6.7		6.7	6.7	6.7	33.3		13.3	26.7
형틀목공	100.0	5.6	16.7		5.6	11.1	38.9		11.1	11.1
기타	100.0	3.1	6.3	3.1	4.7	9.4	15.6	12.5	20.3	25.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4〉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4)

구 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전체(%)	100.0	8.9	5.2	37.4	13.2	21.8	2.5	8.6	2.5
건축목공	100.0			38.5	7.7	38.5		15.4	
내선전공	100.0	12.9	9.7	64.5	9.7	3.2			
도장공	100.0	30.0	30.0	30.0	10.0				
미장공	100.0	8.3	8.3	25.0	33.3	8.3		16.7	
배관공	100.0			20.0	10.0	20.0	30.0	20.0	
석공	100.0	30.0	10.0	20.0	20.0	10.0		10.0	
원자력기계 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100.0			
철근공	100.0	3.6		32.1	7.1	25.0	3.6	21.4	7.1
플랜트기계 설치공	100.0			45.8	29.2	25.0			
플랜트전공	100.0			45.8	29.2	25.0			
형틀목공	100.0	8.3	8.3	29.2	12.5	12.5		16.7	12.5
기타	100.0	12.5	5.8	40.8	10.0	15.8	3.3	9.2	2.5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5〉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기능공)(5)

구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0억 원이상
전체(%)	100.0	11.0	5.1	35.5	12.4	22.8	2.7	7.5	3.0
건축목공	100.0			42.9	7.1	35.7		14.3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00.0					100.0			
내선전공	100.0	16.7	13.3	56.7	10.0	3.3			
미장공	100.0	16.7		25.0	33.3			16.7	8.3
배관공	100.0			20.0	10.0	20.0	30.0	20.0	
배관공(수도)	100.0	20.0	10.0	30.0	30.0	10.0			
비계공	100.0		8.3	33.3		41.7		8.3	8.3
석공	100.0	30.0		30.0	20.0	10.0		10.0	
원자력기계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100.0			
철근공	100.0	3.3		33.3	6.7	26.7	3.3	20.0	6.7
콘크리트공	100.0			45.5		27.3		18.2	9.1
플랜트기계설치공	100.0			50.0	26.9	23.1			
플랜트전공	100.0			50.0	26.9	23.1			
형틀목공	100.0	14.8	7.4	25.9	11.1	14.8		14.8	11.1
기타	100.0	19.4	8.9	37.1	10.5	10.5	4.8	6.5	2.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6〉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총공사금액별, 숙련도(조공)(6)

구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 원미만	1,000억 원이상
전체(%)	100.0	12.1	8.5	38.8	12.7	13.9	1.8	10.3	1.8
건축목공	100.0			22.2		55.6		22.2	
내선전공	100.0	5.3	15.8	63.2	15.8				
내장공	100.0	14.3		57.1		14.3	14.3		
도장공	100.0	14.3	14.3	42.9	28.6				
미장공	100.0	11.1		33.3	33.3			22.2	
배관공	100.0			25.0	12.5	25.0	12.5	25.0	
보통인부	100.0	14.3		57.1		28.6			
석공	100.0	28.6	14.3	28.6	28.6				
철근공	100.0	7.7		30.8		46.2		7.7	7.7
형틀목공	100.0	14.3	14.3	21.4	14.3	14.3		7.1	14.3
기타	100.0	15.4	10.8	38.5	12.3	7.7	1.5	13.8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7〉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7)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충남	충북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기타
전체(%)	100.0	14.5	8.3	10.4	6.5	6.2	6.8	4.7	5.3	6.8	7.1	5.3	18.0
건축목공	100.0			15.4	23.1	7.7	7.7		7.7	15.4	15.4		7.7
내선전공	100.0	10.0	10.0	13.3	13.3	6.7	3.3		6.7	6.7	10.0		20.0
도장공	100.0	30.0	10.0		10.0	10.0	10.0					10.0	20.0
미장공	100.0	23.1	7.7	7.7		7.7	7.7	7.7				7.7	30.8
배관공	100.0	30.0	10.0	10.0			10.0				20.0		20.0
비계공	100.0	50.0	10.0				20.0			10.0			10.0
석공	100.0	9.1	9.1	9.1		9.1	18.2	9.1	9.1	9.1		9.1	9.1
원자력기계 설치공	100.0									50.0		30.0	2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50.0		30.0	20.0
철근공	100.0	16.1	9.7	9.7	6.5	6.5	12.9	3.2	9.7	6.5	3.2		16.1
콘크리트공	100.0	30.0	10.0	10.0			10.0				20.0		20.0
플랜트기계 설치공	100.0	4.2	12.5	16.7	12.5	16.7		8.3			12.5	8.3	8.3
플랜트전공	100.0	4.2	12.5	12.5	16.7	16.7		8.3			8.3	8.3	12.5
형틀목공	100.0	10.7	7.1	7.1			10.7	7.1	10.7	7.1	10.7	3.6	25.0
기타	100.0	17.3	7.7	12.5	4.8	4.8	5.8	6.7	7.7	2.9	5.8	3.8	20.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8〉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기능공)(8)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충북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전북	기타
전체(%)	100.0	14.8	7.5	10.6	6.7	6.0	6.0	3.6	5.2	4.9	8.0	7.5	5.7	3.6	9.8
건축목공	100.0			14.3	21.4	7.1	7.1			7.1	14.3	21.4			7.1
고급원자력비파 괴시험공	100.0							20.0			50.0		30.0		
내선전공	100.0	10.0	6.7	13.3	16.7	6.7	6.7	3.3		3.3	3.3	13.3			16.7
미장공	100.0	23.1	7.7		7.7	7.7	7.7		15.4				7.7	7.7	15.4
배관공	100.0	30.0	10.0	10.0			10.0	10.0				20.0			10.0
배관공(수도)	100.0	40.0		10.0		10.0	20.0				20.0				
비계공	100.0	42.9	7.1	7.1			14.3			14.3	7.1				7.1
석공	100.0	9.1	9.1			9.1	18.2		9.1	9.1	9.1	9.1	9.1		9.1
원자력기계설치공	100.0							20.0			50.0		3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20.0			50.0		30.0		
철근공	100.0	15.2	9.1	9.1	6.1	9.1	12.1		3.0	9.1	6.1	6.1			15.2
콘크리트공	100.0	25.0	8.3	8.3			8.3			8.3	8.3	16.7			16.7
플랜트기계설치공	100.0	3.8	11.5	15.4	15.4	15.4		3.8	7.7			11.5	7.7	3.8	3.8
플랜트전공	100.0	3.8	11.5	15.4	15.4	15.4		3.8	7.7			11.5	7.7	3.8	3.8
형틀목공	100.0	9.7	6.5	9.7		3.2	9.7		9.7	6.5	6.5	12.9	3.2		22.6
기타	100.0	19.0	8.7	13.5	5.6	4.0	3.2	3.2	7.1	6.3	3.2	4.0	4.8	8.7	8.7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19〉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현장지역별, 숙련도(조공)(9)

구분	계(%)	서울	인천	경기도	강원도	대전	충북	울산	경남	기타
전체(%)	100.0	18.1	7.3	11.3	6.2	5.6	7.9	7.3	7.9	28.2
건축목공	100.0			22.2	11.1	11.1			11.1	44.4
건축공	100.0									100.0
내선전공	100.0	10.5	5.3	10.5	21.1	21.1	10.5		10.5	10.5
내장공	100.0	28.6				28.6			14.3	28.6
도장공	100.0	14.3	14.3		14.3		14.3			42.9
미장공	100.0	30.0	10.0			10.0	10.0	10.0		30.0
배관공	100.0	25.0	12.5	12.5			12.5		25.0	12.5
보통인부	100.0	12.5		25.0			12.5		12.5	37.5
석공	100.0	12.5		12.5			12.5	12.5		50.0
철근공	100.0	13.3	6.7	20.0			20.0			40.0
형틀목공	100.0	11.1	5.6	11.1			11.1	11.1	16.7	33.3
기타	100.0	24.2	10.6	10.6	7.6	3.0	3.0	13.6	6.1	21.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0〉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팀장 및 반장)(10)

구 분	계(%)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민간	기타
전체(%)	100.0	10.1	21.0	33.7	3.8	28.1	3.3
건축목공	100.0	23.1	46.2	7.7	7.7	15.4	
내선전공	100.0	19.4	16.1	29.0	6.5	25.8	3.2
도장공	100.0		10.0	20.0	20.0	50.0	
미장공	100.0	7.7	30.8	7.7	7.7	46.2	
배관공	100.0		20.0	40.0		40.0	
비계공	100.0	10.0	20.0			30.0	40.0
석공	100.0	9.1	63.6			27.3	
원자력기계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00.0			100.0			
철근공	100.0	16.1	38.7	6.5		32.3	6.5
콘크리트공	100.0	10.0	10.0	20.0	10.0	30.0	20.0
플랜트기계설치공	100.0			100.0			
플랜트전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7.1	25.0	17.9	7.1	39.3	3.6
기타	100.0	13.6	23.3	19.4	3.9	38.8	1.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1〉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기능공)(11)

구 분	계(%)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민간	기타
전체(%)	100.0	10.6	22.6	33.5	3.4	26.0	3.9
건축목공	100.0	21.4	50.0	7.1	7.1	14.3	
고급원자력비파괴 시험공	100.0			100.0			
내선전공	100.0	23.3	16.7	20.0	6.7	30.0	3.3
미장공	100.0	7.7	38.5	7.7		38.5	7.7
배관공	100.0		20.0	40.0		40.0	
배관공(수도)	100.0		70.0		10.0	20.0	
비계공	100.0	14.3	21.4			35.7	28.6
석공	100.0	9.1	63.6			27.3	
원자력기계설치공	100.0			100.0			
원자력플랜트전 공	100.0			100.0			
철근공	100.0	15.2	42.4	6.1		30.3	6.1
콘크리트공	100.0	16.7	16.7	16.7	8.3	25.0	16.7
플랜트기계설치공	100.0			100.0			
플랜트전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6.5	32.3	16.1	6.5	35.5	3.2
기타	100.0	14.4	20.0	20.8	4.8	36.8	3.2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2〉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 발주자별, 숙련도(조공)(12)

구 분	계(%)	정부	지방자치 단체	국영기업체	공공단체	민간	기타
전체(%)	100.0	6.2	33.3	16.9	4.5	35.6	3.4
건축목공	100.0	33.3	33.3	11.1		22.2	
내선전공	100.0	15.8	21.1	31.6	5.3	21.1	5.3
내장공	100.0		14.3	28.6	14.3	42.9	
도장공	100.0		14.3	28.6	14.3	42.9	
미장공	100.0		40.0	10.0	10.0	40.0	
배관공	100.0		25.0	25.0		50.0	
보통인부	100.0		50.0	25.0		25.0	
석공	100.0		75.0			25.0	
철근공	100.0	13.3	46.7			33.3	6.7
형틀목공	100.0		33.3	22.2	5.6	33.3	5.6
기타	100.0	4.4	30.9	14.7	4.4	41.2	4.4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3〉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 공사종류별(1)

구 분	계 (%)	기타 건축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발전소 시설	상하 수도	전문건 설공사	조경	철도, 철도 터널, 지하철	치산, 치수, 사방 하천	기타
전체(%)	100.0	15.4	7.7	25.6	5.1	10.3	5.1	5.1	12.8	12.8
건설기계운전기사	100.0						33.3			66.7
건축목공	100.0									100.0
미장공	100.0	40.0				20.0	20.0			20.0
배관공	100.0	100.0								
보일러공	100.0							100.0		
비계공	100.0	33.3				66.7				
샷시공	100.0									100.0
시험관련기사	100.0		100.0							
원자력기술자	100.0			100.0						
조경공	100.0		100.0							
조적공	100.0		33.3						66.7	
철골공	100.0							50.0	50.0	
포장공	100.0	66.7			33.3					
형틀목공	100.0				100.0					
CPU시험사	100.0								100.0	
철근콘크리트공	100.0								100.0	
면처리공	100.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4〉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 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전체(%)	100.0	10.3	-	28.2	5.1	41.0	2.6	2.6	10.3
건설기계운전기사	100.0	33.3		33.3		33.3			
건축목공	100.0	100.0							
미장공	100.0	20.0		60.0		20.0			
배관공	100.0					100.0			
보일러공	100.0								100.0
비계공	100.0	33.3						33.3	33.3
샷시공	100.0			100.0					
시험관련기사	100.0					100.0			
원자력기술자	100.0					100.0			
조경공	100.0								100.0
조적공	100.0			66.7		33.3			
철골공	100.0				50.0		50.0		
포장공	100.0			66.7		33.3			
형틀목공	100.0				100.0				
CPU시험사	100.0			100.0					
철근콘크리트공	100.0			100.0					
면처리공	100.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5〉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 총공사금액별

구 분	전체 (%)	고압케이블전공	내선전공	석공	저압케이블전공	지적기사	지적산업기사	특고압케이블전공	형틀목공
공사종류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관공서건물	5.0			100.0				
	농지정리	10.0				100.0	100.0		
	아파트	5.0							100.0
	전기공사	80.0	100.0	100.0		100.0		100.0	
총공사금액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5억원 미만	15.0	20.0			20.0		20.0	
	5억 ~ 10억원 미만	20.0	20.0	100.0		20.0		20.0	
	10억 ~ 50억원 미만	50.0	60.0		100.0	60.0		60.0	
	50억 ~ 500억원 미만	-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					100.0	100.0	
1,000억원 이상	5.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6〉 신설해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1)

구 분	계 (%)	기타설비 공사	도로, 교량, 도로터널	발전소 시설	상하수도	전기공사	전문건설 공사	조경	기타
전체(%)	100.0	1.8	1.8	70.9	1.8	12.7	2.7	3.6	4.5
도급공	100.0								100.0
철거공	100.0								100.0
자연석공	100.0							100.0	
한식석공	100.0								100.0
쇄석공	100.0							100.0	
기계기사	100.0	100.0							
기계산업기사	100.0	100.0							
벽체경량철골공	100.0							100.0	
바닥컷팅미장공	100.0							100.0	
발전플랜트기계정 비원	100.0			100.0					
발전플랜트전기정 비원	100.0			100.0					
발전플랜트비파괴 검사원	100.0			100.0					
용접공(상수도)	100.0				100.0				
시스템설치공	100.0						100.0		
형틀해체공	100.0						100.0		
토목공	100.0						100.0		
시스템동발이공	100.0		50.0						50.0
배전전공(지중)	100.0					100.0			
전기공사기술자(숙 련별)	100.0					100.0			
도장공(철탑)	100.0					100.0			
무정전전공	100.0					100.0			
태양광설치공	100.0					100.0			
배전전공(외선/저압)	100.0					100.0			
배전전공(외선/고압)	100.0					100.0			
철도전공	100.0					100.0			
형틀폼조립공	100.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7〉 신설해야 할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전체(%)	100.0	9.9	1.8	49.5	19.8	17.1	-	0.9	0.9
도금공	100.0	100.0							
철거공	100.0	50.0		50.0					
자연석공	100.0	100.0							
한식석공	100.0			100.0					
쇄석공	100.0	100.0							
기계기사	100.0			100.0					
기계산업기사	100.0			100.0					
벽체경량철골공	100.0	100.0							
바닥커팅미장공	100.0	100.0							
발전플랜트기계정비원	100.0			50.0	26.9	23.1			
발전플랜트전기정비원	100.0			50.0	26.9	23.1			
발전플랜트비파괴검사원	100.0			50.0	26.9	23.1			
용접공(상수도)	100.0		50.0	50.0					
시스템설치공	100.0			100.0					
형틀해체공	100.0							100.0	
인력자재운반공	100.0	100.0							
토목공	100.0			100.0					
시스템동발이공	100.0	50.0							50.0
배전전공(지중)	100.0			83.3	16.7				
도장공(철탑)	100.0		100.0						
무정전전공	100.0			100.0					
태양광설치공	100.0	100.0							
배전전공(외선/저압)	100.0	100.0							
배전전공(외선/고압)	100.0	100.0							
철도전공	100.0			100.0					
형틀폼조립공	100.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8〉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 : 공사종류별(1)

구분	계 (%)	기타 건축	기타 설비 공사	기타 토목 시설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상하수도	아파트	전기 공사	전문 건설 공사	기타
전체(%)	100.0	9.8	4.9	7.3	7.3	4.9	19.5	17.1	22.0	7.3
내선전공	100.0							100.0		
내장공	100.0	33.3			33.3				33.3	
도장공	100.0				16.7		16.7	33.3	33.3	
미장공	100.0	30.0	10.0	10.0			40.0			10.0
배관공	100.0			100.0						
배전전공	100.0							100.0		
배전활선전공	100.0							100.0		
비계공	100.0			100.0						
샷시공	100.0									100.0
석공	100.0				50.0		50.0			
용접공(일반)	100.0		20.0			40.0	20.0		20.0	
절단공	100.0								100.0	
철골공	100.0								100.0	
철근공	100.0						100.0			
철도신호공	100.0							100.0		
화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10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29〉 세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분	계 (%)	5억원 미만	5억~10억원 미만	10억~50억원 미만	50억~100억원 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300억~500억원 미만	500억~1,000억원 미만	1,000억원 이상
전체(%)	100.0	7.5	10.0	40.0	12.5	15.0	2.5	5.0	7.5
내선전공	100.0	100.0							
내장공	100.0			66.7		33.3			
도장공	100.0	16.7	16.7	50.0	16.7				
미장공	100.0		10.0	30.0	20.0	10.0		10.0	20.0
배관공	100.0				100.0				
배전전공	100.0		50.0	50.0					
배전활선전공	100.0			100.0					
비계공	100.0					100.0			
샷시공	100.0			100.0					
석공	100.0			50.0		50.0			
용접공(일반)	100.0		20.0	20.0	20.0		20.0	20.0	
절단공	100.0					100.0			
철골공	100.0			100.0					
철도신호공	100.0			100.0					
화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50.0					5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0〉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공사종류별(1)

구분	계 (%)	단독주택, 연립주택	도로, 교량, 도로터널	아파트	전기공사	전문건설공사	치산, 치수, 사방하천	기타
전체(%)	100.0	6.3	6.3	15.6	43.8	9.4	6.3	12.5
내선전공	100.0				100.0			
미장공	100.0	50.0				50.0		
방수공	100.0		50.0					50.0
배관공(수도)	100.0							100.0
변전전공	100.0				100.0			
전기공사기사	100.0				100.0			
지붕잇기공	100.0			100.0				
지적기능사	100.0							100.0
철근공	100.0						100.0	
타일공	100.0			100.0				
화공	100.0							100.0
한식미장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20.0	20.0		40.0	2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1〉 숙련도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 분	계 (%)	5억원 미만	5억 ~ 10억원 미만	10억 ~ 50억원 미만	50억 ~ 100억원 미만	100억 ~ 300억원 미만	300억 ~ 500억원 미만	500억 ~ 1,000억원 미만	1,000억 원이상
전체(%)	100.0	32.4	2.9	32.4	11.8	8.8	-	5.9	5.9
내선전공	100.0	9.1	9.1	63.6	18.2				
미장공	100.0	66.7							33.3
방수공	100.0			50.0		50.0			
배관공(수도)	100.0			100.0					
변전전공	100.0			100.0					
전기공사기사	100.0	50.0			50.0				
조적공	100.0	100.0							
지붕잇기공	100.0	100.0							
지적기능사	100.0							100.0	
철근공	100.0					100.0			
타일공	100.0	33.3		33.3				33.3	
화공	100.0	100.0							
한식미장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25.0			25.0	25.0			25.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2〉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공사종류별(1)

구 분	계 (%)	사무실, 상업용건물	상하수도	아파트	전기공사	전문건설공사	기타
전체(%)	100.0	5.6	5.6	19.4	50.0	5.6	13.9
내선전공	100.0				100.0		
도장공	100.0			100.0			
배관공	100.0			33.3		33.3	33.3
배전전공	100.0				100.0		
보온공	100.0	100.0					
샷시공	100.0			100.0			
석공	100.0			50.0			50.0
용접공(일반)	100.0	33.3	66.7				
코킹공	100.0			100.0			
콘크리트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20.0		20.0	6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3〉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 분	계 (%)	5억원 미만	5억~10억원미만	10억~50억원미만	50억~100억원미만	100억~300억원 미만	300억~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전체(%)	100.0	15.8	7.9	52.6	7.9	5.3	5.3	5.3
내선전공	100.0	23.5	5.9	58.8	11.8			
도장공	100.0	100.0						
배관공	100.0	25.0		25.0			25.0	25.0
배전전공	100.0			100.0				
보온공	100.0			100.0				
샷시공	100.0			100.0				
석공	100.0			50.0		50.0		
용접공(일반)	100.0		50.0	50.0				
코킹공	100.0			100.0				
콘크리트공	100.0						100.0	
형틀목공	100.0			40.0	20.0	20.0		2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4〉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 공사종류별(1)

구 분	계 (%)	기타 건축	기타 설비 공사	사무실, 상업용 건물	상하수도	아파트	전기 공사	철도, 철도터널, 지하철	항만
전체(%)	100.0	7.7	7.7	7.7	7.7	23.1	30.8	7.7	7.7
건축공	100.0				100.0				
배전전공	100.0						100.0		
배전활선전공	100.0						100.0		
샷시공	100.0					100.0			
시험관련기사	100.0							100.0	
운전사(운반차)	100.0						100.0		
제도사	100.0		33.3	33.3		33.3			
창호목공	100.0					100.0			
철공	100.0	50.0							5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부표 35〉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 총공사금액별(2)

구 분	계 (%)	5억원 미만	5억~10억원미만	10억~50억원미만	50억~100억원미만	100억~300억원미만	300억~500억원미만	500억원 이상
전체(%)	100.0	14.3		50.0	7.1	7.1	7.1	14.3
건축공	100.0				100.0			
배전전공	100.0			100.0				
배전활선전공	100.0	50.0		50.0				
샷시공	100.0			100.0				
시험관련기사	100.0						100.0	
운전사(운반차)	100.0	100.0						
제도사	100.0			75.0				25.0
창호목공	100.0			100.0				
철공	100.0					50.0		50.0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008. 9.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의 개선(현장 임금 반영)을 위한 설문서

현재 전국 1,700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직종별 임금을 조사하여 '시중 노동단가'를 발표하고 이를 품셈에 의한 공공공사 원가의 작성기준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기준으로 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투입직종 및 지급임금과 조사에서 발표하는 직종 및 임금 간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그 격차가 크다면 사업주는 적정 노무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공사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자 역시 저임금으로 사기가 떨어져 품질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현장의 임금을 정확히 반영시키는 것은 적정 공사비의 확보를 통한 원활한 공사의 수행과 품질제고를 위한 첫 단추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직종의 정의 및 임금 수준은 앞부분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귀하의 진솔한 응답은 조사의 신뢰도 제고와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쓰일 것입니다. 설문에 대한 응답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늘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02) 3441 - 0656 심 규 범 연구위원
02) 3441 - 0661 허 민 선 연구원

2008.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참고 1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의한 '08년 상반기 시중 노임단가'(가나다 순)

직종	임금(원)	직종	임금(원)	직종	임금(원)
갱부	66,063	송전전공	274,720	지적산업기사	135,359
건설기계운전기사	86,771	송전활선전공	303,505	착암공	71,432
건설기계운전조수	52,471	시공측량사	69,562	창호목공	88,407
건설기계조장	85,854	시공측량사조수	53,912	철골공	100,401
건축목공	102,164	시험관련기능사	54,318	철공	103,303
건출공	89,647	시험관련기사	64,129	철근공	100,835
계장공	100,234	시험관련산업기사	54,730	철도신호공	126,300
고급선원	91,731	연마공	82,822	철판공	95,595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44,506	용접공(일반)	97,714	측부	43,396
고압케이블전공	136,931	용접공(철도)	86,478	치장벽돌공	85,979
광케이블설치사	145,826	운전사(기계)	65,671	코킹공	89,735
광통신설치사	145,803	운전사(운반차)	70,950	콘크리트공	97,531
궤도공	86,117	원자력계장공	130,325	타일공	98,698
기계공	74,069	원자력기계설치공	141,189	통신관련기능사	105,478
기계설치공	81,846	원자력기술자	103,883	통신관련기사	115,879
내선전공	88,317	원자력덕트공	-	통신관련산업기사	109,769
내장공	94,793	원자력배관공	141,582	통신내선공	87,990
노즐공	83,000	원자력보온공	142,956	통신설비공	104,351
닥트공	82,269	원자력용접공	150,698	통신외선공	122,341
도배공	77,185	원자력제관공	-	통신케이블공	139,735
도장공	91,764	원자력케이블전공	131,198	특고압케이블전공	167,973
도편수	152,031	원자력특별인부	84,345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54,786
동발공(터널)	77,671	원자력품질관리사	159,042	특별인부	80,531
드잡이공	130,000	원자력플랜트전공	138,128	특수비계공	117,101
목도	86,378	위생공	78,195	특수화공	-
목조각공	113,333	유리공	84,379	판넬조립공	90,139
무선안테나공	109,876	작업반장	80,830	포설공	85,175
미장공	89,567	잠수부	125,171	포장공	88,878
방수공	76,130	저압케이블전공	114,656	플랜트기계설치공	106,830
배관공	83,392	전기공사기사	99,222	플랜트배관공	117,001
배관공(수도)	98,857	전기공사산업기사	92,611	플랜트용접공	121,942
배전전공	180,878	절단공	88,232	플랜트전공	94,145
배전활선전공	273,360	제도사	70,783	플랜트제관공	102,841
벌목부	81,108	제철축로공	183,691	플랜트특수용접공	140,351
벽돌(블럭)제작공	85,103	조경공	79,562	한식목공	115,056
변전전공	123,390	조력공	70,889	한식목공조공	91,000
보링공(지질조사)	83,739	조립인부	71,000	한식미장공	108,834
보안공	62,439	조적공	86,508	한식외공	164,370
보온공	81,730	준설선기관사	76,691	한식외공조공	112,149

보일러공	81,886	준설선기관장	85,489	할석공	91,324
보통선원	68,343	준설선선장	98,120	함석공	87,658
보통인부	60,547	준설선운전자	81,916	현도사	-
비계공	107,592	준설선전기사	77,939	형틀목공	96,690
상급원자력기술자	168,147	줄눈공	87,793	화공	-
샷시공	84,868	중급원자력기술자	132,981	화약취급공	88,932
석공	97,834	지붕잇기공	92,296	CPU시험사	128,406
석조각공	133,053	지적기능사	92,543	H/W설치사	123,422
선부	51,861	지적기사	156,425	H/W시험사	140,644
				S/W시험사	142,435

주 : 임금은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환산한 평균임금임. 또한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표준편차의 3배를, 조사현장이 5개 ~ 20개 미만인 경우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단순평균 산술함.

자료 : 대한건설협회, 2008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시중 노임단가), 2007년 9월 기준 조사

< 참고 2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포함된 ‘직종의 정의’(가나다 순)

1. 갱 부 :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6. 건설기계운전기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자(12t이상 트럭 포함)
80. 건설기계운전조수 :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77.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2.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3. 견출공 :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65.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랜트 프로세스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81. 고급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136.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II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62.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 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110. 광케이블설치사 :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광통신설치사 : 광통신시설 중 광전송장치(단말장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 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40. 궤도공 : 철도의 궤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궤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90. 기계공 :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89. 기계설치공 :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60.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30.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 141. 노즐공 :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 99. 닥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31.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 29.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 111.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을 총괄, 지휘하며 여러 전문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 14. 동발공(터널) :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 115.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 72. 목 도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12.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재, 화반, 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을 하는 사람
- 70. 무선안테나공 :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18. 미장공 :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름작업을 하는 사람
- 19.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 25. 배관공 : 설계압력 5kg/cm²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 26.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 57.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 58.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45.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 17. 벽돌(블럭)제작공 :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 145.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48. 보링공(지질조사)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37. 보안공 :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신호를 하는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28.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 24.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 82. 보통선원 :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 75.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 13. 비계공 :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131. 상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 9. 샷시공 :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셋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 11. 석 공 :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 118.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 83. 선 부 :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 55.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56.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 52. 시공측량사 :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 53. 시공측량사조수 :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 95. 시험관련기능사 : 시험관련기사시험관련산업기사를 보조하거나, 각종 건설자재

의 품질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93.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4.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22. 연마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98. 용접공(일반) :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41. 용접공(철도) :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79. 운전사(기계) : 발전기, 양수기, 원치 등 경기계 조종원

78. 운전사(운반차)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

128. 원자력계장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9. 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25. 원자력덕트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2. 원자력배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34. 원자력보온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23.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6. 원자력제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케이블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3. 원자력특별인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2.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 후 관리사자격을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5.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27.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96.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71.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42.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63.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143.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0. 절단공 :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92.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는 기능인
101.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4.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73.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46. 조립인부 :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5. 조적공 :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86.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5. 준설선기관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4.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7. 준설선운전자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자
88. 준설선전기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21.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130. 중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인 사람
32. 지붕잇기공 :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 작업을 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의 보조 또는 도면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에 종사하는 사람
102. 지적기사 : 지적산업기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 지적기능사가 하는 업무와 지적측량에 종사하는 사람
36.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4. 창호목공 :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 :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 64.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 8.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 54. 측 부 :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 16. 치장벽돌공 :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 142. 코킹공 :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 23.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 사람
- 20.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 140.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 138.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139.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 68. 통신내선공 :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 67. 통신설비공 :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66.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 69. 통신케이블공 :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 61.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 초과)
- 137.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III 면허소지자(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 74.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 12. 특수비계공 :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19.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34. 패널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 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9.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38. 포장공 :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47.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0.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²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49.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²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59.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1. 플랜트제관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8. 플랜트특수용접공 : 사용압력 100kg/cm²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 MIG 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13.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21.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등)를 사용하여 한식벽체·양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16.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00. 할석공 :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 97. 함석공 : 함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 91. 현도사 :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 3. 형틀목공 :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 120.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먹긋기·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35.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108. CPU시험사 :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로그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5. H/W설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6.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107.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의한 ‘시중 노임단가’란?

·145개 직종 발표 : 일반공사, 광전자, 문화재, 원자력, 기타 직종 등

·폼셈의 직종별 노무량 × ‘시중 노임단가’ = 공공공사 월가 작성 기준

·E/S 계약가격 조정의 기준

·1일 ‘8시간 기준’ 일급의 기본급여액

☞ 따라서 현장에서 지급하는 실제임금과 어느 정도는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임을 감안하여 주십시오.

※ 직접 작성하시거나, 해당하는 번호에 ○ 또는 √ 하십시오.

가. 응답업체 및 현장의 일반 사항

1	등록업종 (대표적인 업종 2개)	① _____ ② _____
2	공사명	_____공사
3	총공사금액 규모	① 5억원 미만 ② 5억 ~ 10억원 미만 ③ 10억 ~ 50억원 미만 ④ 50억 ~ 100억원 미만 ⑤ 100억 ~ 300억원 미만 ⑥ 300억 ~ 500억원 미만 ⑦ 500억 ~ 1,000억원 미만 ⑧ 1,000억원 이상
4	공사현장 소재지	_____시 또는 도
5	발주자 구분	① 정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국영기업체 ④ 공공단체 ⑤ 민간 ⑥ 기타
6	현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	① 대체로 순수월급제(근로일수와 무관하게 동일 월 급) ② 대체로 일당제 월급제(근로일수에 따라 지급) ③ 대체로 성과급제(작업량에 따라 지급) ④ 기타(_____)

나. 현장 임금의 반영 정도

1. 귀하께서는 현행 '시중 노임단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현장의 임금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발표 횟수(현재 1년 2회)도 적정하다.
- 2) 현장의 임금은 잘 반영하고 있으나, 발표 횟수(현재 1년 2회)를 늘려야 한다.
- 3) 발표 횟수(현재 1년 2회)는 적정하나, 현장의 임금을 반영하는 데는 미흡하다.
- 4) 현장의 임금 반영이 미흡하고, 발표 횟수(현재 1년 2회)도 부족하다.

2. 발표되는 시중 노임단가가 현장의 직종과 임금 수준을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 2) 직종 수는 적정하나 임금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 3) 임금 수준은 적정하나 직종 수는 차이가 있다.
- 4) 직종 수와 임금 수준 모두 차이가 있다.

3. 귀하께서는 실제 지급임금과 임금 실태 조사의 임금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된 원인 2개를 골라 주십시오.

- 1) 동일 직종의 숙련도별 임금 차이 미반영 (예; 기능공과 조공)
- 2) 동일 직종의 공종별 임금 차이 미반영 (예; APT현장과 전기공사현장)
- 3) 동일 직종의 지역별 임금 차이 미반영 (예; 서울과 강원도)
- 4) 동일 직종의 공사규모별 임금 차이 미반영 (예; 5억미만 공사와 10억이상 공사)
- 5) 동일 직종의 계절적 또는 공사시기별 임금 차이 미반영 (예; 여름철과 가을철)
- 7) '임금대장'의 임금을 일용근로자 소득공제선인 8만원 이하로 낮추기 때문
- 8)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었기 때문
- 9) 기타(_____)

다. 현장 임금과 차이가 많은 직종

1. 실제 지급임금과 발표되는 시중 노임단가 간에 차이가 많은 직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련도별 임금(기타 수당 제외)과 인원수를 적어 주십시오(2008년 5월 기준).

직 종	숙련수준	2008년 5월 실제 지급 임금 (하나만 선택)				실제 투입 인원수
		일급	근로시간	월급	월근로일 수	
(예시) 문화재현장 석공	팀장(반장/기량/간부/도~)	25 만원	9 시간	만원	일	2 명
	기능공(준기량/직원)	18 만원	9 시간	만원	일	8 명
	조 공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팀장(반장/기량/간부/도~)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기능공(준기량/직원)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조 공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팀장(반장/기량/간부/도~)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기능공(준기량/직원)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조 공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팀장(반장/기량/간부/도~)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기능공(준기량/직원)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조 공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팀장(반장/기량/간부/도~)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기능공(준기량/직원)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조 공	만원	시간	만원	일	명

주) 조공 : 보통인부 및 특별인부와 달리 특정직종의 팀에 소속되어 작업을 돕는 근로자

라. 삭제 또는 명칭 변경이 필요한 직종

1. 기술변화 등으로 더 이상 현장에서 쓰이지 않는 직종 또는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제도사 ⇒ 캐드사 등)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직종 : (예시) 선부,

현행의 유사 직종		명칭이 달라져야 할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명칭	일당
(예시) 제도사	5 만원	캐드사	7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마. 분류 방식의 변경이 필요한 직종

1. 작업 내용 및 임금이 달라 분류 방식을 달리해야 할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저압/고압/특고압케이블공 ⇒ 송전/배전케이블 등)

현행 직종		다시 분류할 경우의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명칭	일급 또는 월급
(예시) 저압케이블공	12 만원	송전케이블공	만원
(예시) 고압케이블공	14 만원	배전케이블공	만원
(예시)특고압케이블공	16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바. 세분 또는 통합이 필요한 직종

1. 작업 내용 및 임금이 달라 직종을 세분하거나 신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직종을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시스템동발이공, 기계미장공, 수화력직종 등)
 신설해야 할 직종 : (예시) 시스템동발이공,

현행 직종		세분될 경우의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명칭	일급 또는 월급
(예시) 미장공	10 만원	미장공	10 만원
		기계 또는 바닥미장공	22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작업 내용 및 임금이 유사해 하나의 직종으로 통합할 수 있는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기계설치공 + 기계공 ⇒ 기계공)

현행 직종		통합될 경우의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명칭	일급 또는 월급
(예시) 기계설치공	9 만원	기계공	9 만원
(예시) 기계공	9 만원		
	만원		만원

사. 숙련도별 또는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

1. 귀하께서는 숙련도별로 구분이 필요한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원자력기계설치공, 원자력플랜트전공, 한식석공 등)

현행 직종		숙련도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명칭	일급 또는 월급
(예시) 석공 (문화재 현장)	10 만원	도석수	19 만원
		한식석공	16 만원
		한식석공조공	10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2. 공종별 구분이 필요한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전기공사와 아파트현장의 내선전공)

현행 직종		공종별로 구분될 경우의 직종	
명칭	일급 또는 월급	공종	일급 또는 월급
(예시) 내선전공	10 만원	아파트현장	9 만원
		전기공사현장	13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아. 직종 정의의 변경이 필요한 직종

1. 현행의 직종 정의에 관련 직종의 내용을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직종과 정의 내용을 직접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 드잡이공 ⇒ 석공사 추가 등)

현행의 직종	추가해야 할 직종 정의의 내용
(예시) 드잡이공	석공사 명시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이 설문지는 건설현장의 실제 임금 반영과 적정
 공사비 확보를 위해 귀중하게 활용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저자 소개

심 규 범(gbshim@cerik.re.kr)

명지대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학사)

고려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및 박사)

전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주요 연구 실적 및 논문>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8

건설현장의 근로조건 개선 및 효율적인 외국인력 관리 방안, 건설교통부, 2007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타당성 분석, 노동부, 2007

건설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7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개선방안, 노동부, 2007

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실태 및 정책 방안, 노동부, 2007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방안 연구, 노동부, 2006

건설인력 직종별 훈련프로그램 개발사업, 노동부, 2006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구조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도입 제도 활용 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6

전자카드사업 추진과제별 타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노동부, 2005

4대 사회보험의 건설업 적용 방법 개선 및 적정 사회보험료 확보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건설현장에 대한 일요일무제 시범실시의 영향 분석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PQ의 재해율 반영제도 개선방안, 건설교통부, 2005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촉진 방안, 건설교통부, 2004

주40시간제 도입에 따른 건설현장의 변화 및 합리적 시행 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시공참여자 관리 및 제도 개선 방안, 건설교통부, 2003

건설기능인력 수급 안정화 대책 연구, 대한건설협회, 2003

건설산업 교육훈련의 노사정 참여 확대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2003

한국 건설노동시장의 비공식성과 숙련형성의 한계, 2000,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허 민 선(minerva@cerik.re.kr)

명지대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학사)

명지대 일반대학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 석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초빙연구원